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2010. 10

연구책임자 : 김진수

연구진 : 구자은 · 김태훈 · 송은주 · 정희선 · 기은선



# 목 차

I. 서 론 .....	7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	10
1. 구조조정세제의 범위 .....	10
2. 조직변경 관련 세제 .....	14
3.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제 .....	70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	87
1. 미국 .....	87
2. 영국 .....	131
3. 일본 .....	171
4. 호주 .....	203
IV.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	232
1. 구조조정세제의 국제비교 .....	232
2. 시사점 .....	268
참고문헌 .....	280

## 표 목 차

<표 II-1> 기업의 구조조정세제 및 근거법 .....	12
<표 III-1> 미국의 구조조정세제 .....	88
<표 III-2> 비과세 조직재편의 세무상 효과(미국) .....	118
<표 III-3> 합병과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	132
<표 III-4> 토지에 대한 인지세율 .....	148
<표 III-5> 분할과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	152
<표 III-6> 기업분리의 과세특례요건 .....	160
<표 III-7> 현물출자와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	165
<표 III-8> 주식교환 또는 주식인수와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	169
<표 III-9> 사업인수와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	170
<표 III-10> 적격조직재편의 과세구조(일본) .....	173
<표 III-11> 조직재편성 유형별 적격요건 .....	174
<표 III-12> 조직재편 유형별/당사자별 과세효과 .....	188
<표 III-13> 분할의 형태에 따른 주체별 행위 .....	189
<표 III-14> 사업재생 및 기업재생 관련법의 연혁 .....	198
<표 IV-1> 구조조정세제의 유형별 근거법 .....	235
<표 IV-2> 조직변경 유형별 과세특례 .....	238
<표 IV-3> 합병·분할의 과세특례요건 .....	245
<표 IV-4> 주식교환·자산인수 과세특례요건 .....	252
<표 IV-5> 우리나라의 주식교환·자산인수 과세특례요건 .....	254
<표 IV-6> 합병·분할의 당사자별 과세특례범위 .....	260
<표 IV-7> 우리나라의 채권채무조정 세무처리 .....	262

<표 IV-8> 채무면제익과 관련된 과세특례(주요국 비교) ..... 267

<표 IV-9> 조특법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감면규모 ..... 271

## 그림목차

[그림 II - 1] 분할의 유형 .....	37
[그림 III - 1] 흡수합병(Merger) .....	92
[그림 III - 2] 신설합병(Consolidation) .....	92
[그림 III - 3]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s) .....	95
[그림 III - 4]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s) .....	96
[그림 III - 5] B형 조직재편 .....	98
[그림 III - 6] C형 조직재편 .....	100
[그림 III - 7] 취득형 D형 조직재편 .....	103
[그림 III - 8] 분할형 D형 조직재편: Split-off .....	106
[그림 III - 9] 분할형 D형 조직재편: Spin-off .....	107
[그림 III-10] 분할형 D형 조직재편: Split-up .....	107
[그림 III-11] 기업분리 .....	212

# I. 서론

-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경제위기 이전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있었으나 주로 개별 기업 및 개별 업종에 한정된 것이었음.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이 시기에 도입되었음.
    - 그러나 구조조정세제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음.
    -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지원세제는 실제로 일몰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되기도 하였음.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부터는 한시적 구조조정체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이러한 요구에 의해 2001년도 이후에는 기업의 조직변경과 관련된 합병·분할에 관한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세제의 일부는 영구법인 법인세법으로 이관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구조조정 관련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

을 주었고 경제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금융부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체제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의 경제 여건은 외환위기와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구조조정 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
  - 외환위기 당시에는 고금리 및 긴축정책하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대규모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이후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기업의 재무상황 및 금융기관 건전성은 외환위기 시기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2009년 세법 개정에서 합병·분할시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였음.

- 합병 및 분할에 있어서 적격요건을 두어 적절한 합병 및 분할의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합병·분할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을 양도손익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손익이 적정히 과세되도록 하였음.
- 또한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 합병과 유사한 과세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신설하였음.
- 새로운 과세제도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 이러한 세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기침체가 세계적인 경기하강과 함께 장기화된다면, 조세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

## I. 서론 9

의 구조조정방식 및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와 비교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를 조직변경과 재무구조개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III장에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구조조정세제를 살펴본 후 제IV장에서는 각 나라의 구조조정세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조정세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 1. 구조조정세제의 범위

-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혁 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 함.
  - 이러한 구조조정의 범위에는 부실기업 또는 비효율적인 조직을 경쟁력이 있는 능률적 기업 및 조직으로 개편하는 모든 개혁 작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기업이나 기업집단 또는 소유주가 경제 및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과 같은 조직변경으로 한정하기도 함.
  
- 구조조정지원세제는 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에 대해서 세부담 시기를 추후로 연기하거나 세부담을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이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즉, 과세문제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11

-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1997년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개별기업이나 개별업종의 지원에 관한 것이었음.
- 그러나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마련되었음.
- 구조조정지원세제의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인 조치로 시작되었으나 2001년부터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구조조정체계로의 변환을 위하여 합병 및 분할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상시조치로 전환되었음.
  
- 현재의 구조조정지원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음.
-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1절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제44조부터 제50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로서 제30조의5부터 제47조의3에 걸쳐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제47조의4에서 제57조에 걸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위에 제시한 구조조정 지원세제 중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과 물류산업과 같이 특정 업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창업, 가업승계,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제외하고 있음<sup>1)</sup>.

---

1) 제외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전체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 또한 추가적으로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채무의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액의 익금불산입 등은 세법상 구조조정세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보고서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구조조정세제를 모두 열거하면 <표 II-1>과 같음.

- 구조조정세제를 기업의 조직을 변경하는 형태와 단순히 재무구조만을 개선하는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조직변경에서는 대표적인 조직변경인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외에 현물출자, 자산의 교환 및 양도, 주식의 교환 및 이전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제도로는 채권·채무조정과 관련된 것과 기타 재무구조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구성하였음.

<표 II-1> 기업의 구조조정세제 및 근거법

유형	조세지원 내용	근거법		
조직 변경	합병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44조	상시규정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44조의2	상시규정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44조의3	상시규정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법 제45조	상시규정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7조의3	한시규정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제31조	한시규정

세 과세특례,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임.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13

<표 II-1>의 계속

유형	조세지원 내용	근거법		
조직 변경	분할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46조	상시규정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46조의2	상시규정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6조의3	상시규정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법 제46조의4	상시규정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6조의5	상시규정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법 제47조	상시규정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5조의2	한시규정
	현물 출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47조의2	상시규정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한시규정
	자산의 교환· 양도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50조	상시규정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7조	한시규정
	주식의 교환·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	한시규정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한시규정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한시규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2	한시규정	

&lt;표 II-1&gt;의 계속

유형	조세지원 내용	근거법		
채무구조개선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상시규정	
	채무의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8호	상시규정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4조	한시규정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9조 ①	한시규정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17조 ①	상시규정	
	기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제40조	한시규정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4조	한시규정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법 제43조	한시규정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	한시규정
		감자에 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5조	한시규정

## 2. 조직변경 관련 세제

-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하여 2009. 12. 31 법인세법 개정 및 2010. 6.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었음.
- 개정 이전에는 합병 및 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합병법인은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사업연도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였음.
-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양도손익으로 과세하고 사업연도 소득과 통합하여 과세함.

### 가. 합병

#### 1)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구분

- 합병의 경우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적격 합병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처리를 달리하고 있음.
  - 적격과 비적격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이유는 적격 요건인 사업의 계속성 및 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합병의 경우에는 단순한 조 직변경으로 보아 합병 시점에서의 과세를 최대한 이연하고자 하는 것임.
  -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분 또는 사업의 매각으로 보 아 평가차익 및 양도차익을 합병 시점에 과세하는 것임.
  - 따라서 합병 시점에 적격합병인 경우 양도손익은 0이 되고 비적 격합병인 경우에만 양도손익이 발생함.
  
-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업목적성, ②지분의 연속성, ③사업 의 계속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sup>2)</sup>.

#### 가) 사업목적성

- 적격합병이 되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 국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함.
  - 법인 설립 후 개업 준비기간은 사업계속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 기간 중 휴업 및 폐업의 상태에 있었다면 해당기간은 제외함.

#### 나) 지분의 연속성

- 지분의 연속성이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

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sup>3)</sup>.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임<sup>4)</sup>.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에 포함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 포함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말함.
  -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각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가산함.
    - 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주식 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
    - ②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합병교부주식가액 및 합병교부금은 합병대가에 산입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대납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4)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17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할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함<sup>5)</sup>.

$\frac{\text{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text{특정 지배주주의피합병법인에 대한지분비율}}$
--

- 특정 지배주주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함<sup>6)</sup>.
  -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자<sup>7)</sup>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의 각목의 요건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특정 지배주주의 범위는 친족 중 3촌 이내로 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가 10억원 미만인 주식보유자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됨.

#### 다) 사업의 계속성

-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임.
  - 만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sup>8)</sup>.
  - 다만,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sup>9)</sup>.

---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8) 2010. 6. 8. 시행령 개정 전에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시 사업의 계속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개정된 바에 의하면,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자산' 전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함.

9)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

2)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

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봄으로써 양도손익이 0이 됨.
- 적격합병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함<sup>10)</sup>.

나)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의 결정

-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함<sup>11)</sup>.
  - 즉,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sup>12)</sup>.
  - 자산조정계정은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가산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은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11)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함.

-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sup>13)</sup>.
  -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함.
  - 이때 자산별이란 개개 자산별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자산을 한단위로 묶어서 계상할 수 없음.

## (2) 100% 자회사 합병에 대한 특례

-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sup>14)</sup>.
  -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와 합병할 때에는 적격요건 모두를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합병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없는 것으로 봄.

## 다) 적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

### (1) 합병승계차익 등의 익금산입

- 적격합병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

13)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21

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적격요건에서 이탈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함),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함.

- 이 외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공제세액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적격요건에서 이탈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사업의 계속성 위배)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지분의 연속성 위배)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sup>15)</sup>.
- 적격요건에서 이탈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6항

-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②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완전자회사의 합병,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③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④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주주 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1/2 미만을 처분한 경우
  - ②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③ 주주 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④ 주주 등이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함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⑤ 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적격요건 이탈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때,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함<sup>16)</sup>.
- 이는 자산조정계정잔액의 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

---

16) 법인세법 시행령 80조의4 제3항

(2) 합병매수차손·익의 처리

-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와의 차액을 적격요건의 이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즉, 적격요건을 이탈한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잔액뿐만 아니라 당초 비적격합병으로 처리할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합병매수차손의 상당액도 이탈연도부터 합병 후 5년이 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sup>17)</sup>.
  
-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라 처리함<sup>18)</sup>.
  
-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
  -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폐지 및 주식처분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
    - ① 사업의 폐지 및 주식의 처분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합병등기일로부터 해당 사

17) 이연호 외, 『법인세법 2010』, p. 1103.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

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 ② ①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

-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폐지 및 주식 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영업권이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함.

- ① 사업의 폐지 및 주식의 처분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② ①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 3) 비적격합병시 과세처리

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합병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봄<sup>19)20)</sup>.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25

○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양도손익이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순자산장부가액이란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뺀 가액임.

$$\text{양도손익} = \text{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text{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말함<sup>21)</sup>.
- 비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양도차손익은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여 계상하여야 함.

### (2) 양도가액의 계산

- 비적격합병의 경우 양도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함<sup>22)</sup>.
-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②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

19)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0) 양도손익은 2009. 12. 31. 개정 전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2010. 7.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통합하여 과세함.

21) 이연호 외, 『법인세법 2010』, p. 1086.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되는 국세와 지방세법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포탈된 지방세의 합계액

양도가액 = 합병신주가액(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교부한 것으로 본 금액 포함) + 합병교부금 +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대납액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함.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는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함.
- 이는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 즉,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그 포합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동일한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 합병신주를 교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은 동일하게 됨<sup>23)</sup>.

23) 이연호 외, 『법인세법 2010』, p. 1089.

구분	적격합병 판단기준 중 주식교부비율 산정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할 포합주식가액	비적격합병시 양도가액에 가산할 포합주식가액
취득시기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주식에 한정	취득시기에 불문
가산할 금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차등계산	지배주주 등 여부에 불문
대가형태	합병교부금으로 간주(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액면으로 평가)	합병신주로 간주(주식을 시가로 평가)

- 양도가액에 가산한 합병신주가액은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이 아닌 합병 당시 시가로 함.

나)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합병매수차익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sup>24)</sup>.

- 즉,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상대적으로 저가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며, 그 합병매수차익을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sup>25)</sup>로 양도받은 것으로 봄<sup>26)</sup>.

□ 합병매수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익(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sup>27)</sup>.

---

24)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25)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26)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함.

$$\text{익금산입액} = \text{합병매수차익}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

## (2) 합병매수 차손의 손금산입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함<sup>28)</sup>.
- 즉, 합병매수 차손은 영업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의미함<sup>29)</sup>.
-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text{손금산입액} = \text{합병매수차손}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

## (3) 세무조정 사항 미승계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28)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

29) 개정 전에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여 감가상각비로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음(이연호 외, 『법인세 2010』, p. 1095)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29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봄.

○ 이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음<sup>30)</sup>.

- 개정 전에는 적격 여부와 상관 없이 세무조정항목별로 강제승계, 강제미승계, 선택승계로 구분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적격합병은 모두승계, 비적격합병은 모두 미승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4)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 원칙적으로 비적격합병의 경우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결손금을 승계함<sup>31)</sup>.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sup>32)</sup>.
  - 합병 후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함<sup>33)</sup>.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31)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32)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 다만 중소기업 간의 합병 또는 동일 사업을 하는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음<sup>34)</sup>.
  -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 나)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음<sup>35)</sup>.

#### 다)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함.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봄<sup>36)</sup>.

### 5)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 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다음의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개인주주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sup>37)</sup>.

---

33)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34)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35)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36)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37) 법인세법 제16조의 제1항

$$\text{의제배당액} = \text{합병대가} - \text{구 주식의 취득가액}$$

- 합병대가란 합병교부주식가액에 합병교부금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은 시가로 평가함.
  - 적격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처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
  - 그러나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종전의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함.
    - 여기에서 적격합병이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목적성과 지분의 연속성 중 합병대가 중 주식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합병대가 중 특정지배주주의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을 배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말함.
    - 지분의 연속성 중 지분의 보유와 관련된 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임.
  
-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특례규정의 적용시에는 적격합병의 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함.
  
- 구 주식의 취득가액이란 세법상 취득가액을 의미함.
  - 나)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여한 이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sup>38)</sup>.

- 이익을 분여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법인주주이면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주주이면 증여세가 과세됨.

□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sup>39)</sup>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일 것
-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할 것

다)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

- 법인세법상 ①특수관계자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②대주주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불공정 합병으로 보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sup>40)</sup>.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을 말함<sup>41)</sup>.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sup>42)</sup>

3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함.

4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4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함<sup>43)</sup>.
  -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기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등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익이란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평가차액이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임<sup>44)</sup>.

#### 6)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함<sup>45)46)</sup>.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

4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4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4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

46) 세법개정 이전에는 합병·분할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시 합병당사법인 간의 임의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여지가 없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9. 12. 31 개정에 따라 합병·분할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분할 합병 포함)·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함.

## 7) 합병 관련 특례제도

### 가)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 감면내용

-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sup>47)</sup>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sup>48)</sup>.

#### □ 적용요건<sup>49)</sup>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봄.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에 따른 청산소득과세가 폐지되고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차손익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통합과세함에 따라 합병·분할 비율에 따라 그 양도차손익이 변형될 수 있어 2010. 6 개정시 이를 부당행위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47)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48)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49)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다고 하는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상의 주식을 배정한다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란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자임.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감면내용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sup>50)</sup>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신설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허용함<sup>51)</sup>.
-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 통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 면제함<sup>52)</sup>.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일정기간 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50)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5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1항 제2호

계속 감면 적용함.

#### □ 적용요건

- 동 규정이 적용되는 통합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 때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sup>53)</sup>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통합으로 보지 않음<sup>54)</sup>.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어야 함.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 나. 분할

-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나누어 수 개의 법인격으로 만드는 상법상의 절차를 말함.
- 하나의 회사가 분할에 의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분할된 회사가 기존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

53)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함

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할된 회사와 기존의 회사가 합병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음.

1) 분할의 유형

가) 분할 및 분할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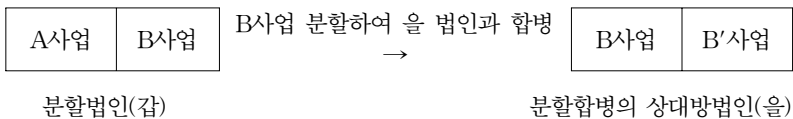
- 분할은 그 형태에 따라 분할, 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분할은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분할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임.
  - 분할합병은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흡수분할합병은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1개 또는 수개의 기존 법인에 출자하는 형태이고 신설분할합병은 다른 법인의 전체 또는 분할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임.

[그림 II-1] 분할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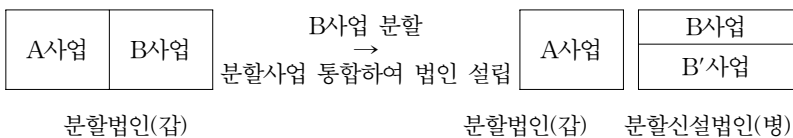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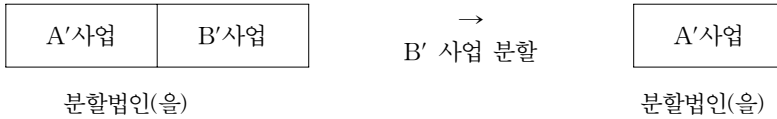


<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자료: 이연호 외, 『법인세법 2010』

## 나)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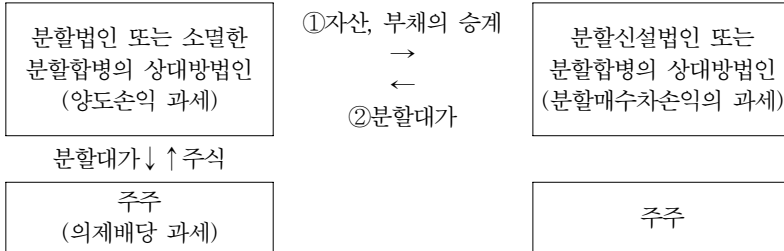
- 분할의 유형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을 누가 취득하는가에 따라 그 유형을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도 있음.
- 인적분할이란 그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형태임.
- 물적분할이란 그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분할법인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임.
  - 이와 같은 물적분할은 분할법인 자신의 재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취득한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성격이 유사함.

## 2) 인적분할

### 가) 과세체계

- 인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합병과 과세체계가 유사함.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 등에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대가를 받음.
  - 이 때 분할법인에 발생하는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분할신설법인 등에는 분할매수차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짐.

- 소멸하는 분할법인과 분할법인의 주주와의 관계에서는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받게 됨.
  - 이때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나) 적격분할

(1) 적격분할의 요건

- 2009. 12. 31. 세법개정으로, 분할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적격분할로 구분하여 과세를 달리하고 있음.
  -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은 사업의 계속성 및 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됨에 따라 단순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분할시점에서의 과세를 최대한 이연하는 것임.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분할은 실질적인 사업 및 자산의 매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시점에 시가로 평가한 평가차익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 적격분할의 요건이라 함은 ①사업목적성, ②지분의 연속성, ③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임<sup>55)</sup>.

55)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 사업목적성이라 함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sup>56)</sup>.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어야 함.
  
- 일정 요건이라 함은 다음과 같음<sup>57)</sup>.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함<sup>58)</sup>.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지분의 연속성을 만족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sup>59)</sup>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주식일 것.
  -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

5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58)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산 중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와 부채 중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임.

59) 분할대가 중 포함주식이 있는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방법은 적격합병에서의 규정을 준용함.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41

특정지배주주에게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지배주주의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함.

- 분할법인 등의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임.
  - 특정지배주주라 함은 지배주주 중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의 아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 미만인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를 제외한 주주임.

- 사업의 계속성이라 함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임.

### (2)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함<sup>60)</sup>.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3)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sup>61)</sup>.
  - 이 때,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함.

60)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61)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

-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 자산조정계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는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함.

#### (4)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 (가) 분할승계차익 등의 익금산입

-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sup>62)</sup>.

62)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 제5항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43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사업폐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규정<sup>63)</sup>을 준용함.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와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는 적격합병의 이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동일함<sup>64)</sup>.

### (나) 분할매수차손·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 분할신설법인 등은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sup>65)</sup>.

### 다) 비적격분할

#### (1)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

63) 법인세법 시행령 80조의4 제6항

64)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

65)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봄<sup>66)</sup>.

-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 등(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begin{aligned} \text{양도손익} &= \text{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quad - \text{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end{aligned}$$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에는 다음과 같이 양도손익을 계산함<sup>67)</sup>.

$$\begin{aligned} \text{양도손익} &= \text{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quad - \text{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 \end{aligned}$$

□ 양도가액은 다음의 각각을 더한 금액으로 함<sup>68)</sup>.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sup>69)</sup>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

66)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67)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

68)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69)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나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포함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45

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함.

-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 포함)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중 법인세분의 합계분

### (2)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가) 분할매수차익의 익금산입

-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sup>70)</sup>.

####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봄<sup>72)</sup>.
- 따라서 순자산의 시가와 양수가액을 비교하여 분할매수차손익을 산정하게 됨<sup>73)</sup>.

---

70)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2항, 양도가액의 산출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에서의 양도가액 산출 참조

71) 2001. 6. 30. 개정 이전의 분할에 대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차익의 범위 내에서 분할평가차익이 있을 경우 그 평가차익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했으나(특례 대상분할의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과세이연 가능) 2010. 7. 1. 이후 분할부터는 분할대가가 분할로 인하여 승계하는 순자산 시가에 미달하는 분할매수차익에 대하여 5년간 균등과세하는 것임.

72)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1항

73) 2009. 12. 31. 개정 전에는 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법인 등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시가초과액은 제외)을 분할승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동 개정 후에는 비적격분할의 경우 모두 시가를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봄.

□ 비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음.

#### (나)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함<sup>74)</sup>.
- 이는 분할매수차익의 경우 전액 분할신설법인 등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달리 분할매수차손의 경우에는 영업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의미함.

### 3) 물적분할

#### 가) 적격 물적분할시 분할양도차익의 과세이연

-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자회사 설립과 유사함.
  -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시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분할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임.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적격분할<sup>75)</su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

74)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75) ①사업목적성, ②지분의 연속성(전액이 주식이어야 함), ③사업의 계속성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47

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sup>76)</sup>.

- 손금산입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text{손금산입한도액} = \text{물적분할에 따른 교부주식가액(시가)} - (\text{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 \text{승계한 부채가액})$$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적격합병의 이탈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경우와 동일함<sup>77)</sup>.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sup>78)</sup>.
  -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함.
  -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 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sup>79)</sup>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

76)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7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

78)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3항

79)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함.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양도받은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함<sup>80)</sup>.

#### 나)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사후관리

- 분할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만족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sup>81)</sup>.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이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 적격요건을 위배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80)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는 적격합병의 규정을 준용함.

81)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 4)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등의 처리

#####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결손금 공제

-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sup>82)</sup>.
- 즉,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함.
-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함<sup>83)</sup>.
-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sup>84)</sup> ·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름.

##### 나) 분할신설법인 등의 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

82) 법인세법 제46조의4 제1항

83)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84) 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경우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결손금을 승계함<sup>85)</sup>.

- 이월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sup>86)</sup>.
-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은 적격분할을 한 후 분할법인 등이 해산하는 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비적격분할이거나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 그리고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승계하지 못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의 최종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분할양도차손익에 가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의해서도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하게 됨.

□ 적격분할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sup>87)</sup>.

-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함<sup>88)</sup>.

-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인분계산한 금액으로 함<sup>89)</sup>.

---

85)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86) 이연호 외, 『법인세 2010』, p. 1162.

87) 법인세법 제46조의4 제2항

88)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89)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51

-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함<sup>90)</sup>.
- 이때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처분손실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 다)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sup>91)</sup>.
-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하고 비적격분할인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 등에 미승계함.

### 라)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승계

-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sup>92)</sup>.
- 감면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함.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로서

90) 법인세법 제46조의4 제3항

91)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92)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만 해당함)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함.

-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함.
-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며, 이 때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공제받지 못한 세액으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함.

□ 이월 세액공제의 승계는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및 100% 자회사합병의 경우에만 적용함<sup>93)</sup>.

-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의 요건을 이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 등은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sup>94)</sup>.

-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공제함.
- 그 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93)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

94)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 분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공제함.

5) 주주에 대한 과세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 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함<sup>95)</sup>.

의제배당액 =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6) 분할 관련 특례제도

가) 공공기관의 과세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2010년 1월 1일 세법 개정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산업은행 민영화 등 구조개편 목적의 공공기관 분할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 특례내용

-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 2부터 제530조의 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

95)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제 지원을 적용함<sup>96)</sup>.

#### □ 적용대상

-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함.
  -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 □ 적용요건

- 법인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할일 것<sup>97)</sup>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sup>98)</sup>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96)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97) 구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98)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다. 현물출자

##### 1)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 감면내용

- 법인이 다른 법인에 현물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격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그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함<sup>99)</sup>.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의 연속성 또는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 □ 적격현물출자 요건

- 사업목적성: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사업의 계속성: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할 것
- 지분의 연속성: 출자법인(공동으로 출자한 자 포함)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99) 법인세법 제47조의2

□ 출자법인의 과세처리<sup>100)</sup>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함.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함.
  - 해당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피출자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이 때, 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text{익금산입액} = \text{압축기장충당금} \times \frac{\text{처분한 주식수}}{\text{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수}}$$

□ 피출자법인의 과세처리<sup>101)</sup>

- 출자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피출자법인은 양도받은 출자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 자산조정계정은 자산의 처분·감가상각 또는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과세이연함<sup>102)</sup>.

---

100)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10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102)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는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의 사후관리 규정을 준용함.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sup>103)</sup>.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까지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함<sup>104)</sup>.
- 외국자회사란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

□ 감면내용

-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 거치 후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함.
-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text{양도차익 중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 \times \frac{\text{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수}}{\text{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수}}$$

□ 사후관리

-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10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제120조 제1항 제6호

104)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 라. 자산의 교환·양도

### 1)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 적용대상

-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sup>105)</sup>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수관계자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교환취득자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sup>106)</sup>.

#### □ 감면내용

-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①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②현

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인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함.

106) 법인세법 제50조

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제외)으로 함.

- 이는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2) 자산의 포괄적 양도

□ 자산의 포괄적 양도란 일방기업(인수기업)이 다른 기업(피인수기업)의 자산 대부분을 취득하고 피인수기업은 청산하는 형태의 조직재편임.

-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 합병과 유사한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여 2010.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적용요건<sup>107)</sup>

- 실질적으로 피인수기업의 모든 자산을 취득하여야 함.
  - 모든 자산이라 함은 총자산의 70% 또는 순자산의 90% 이상을 의미함.
- 인수대가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 피인수기업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함.
- 합병시 특례요건인 ①사업목적, ②사업계속성, ③지분연속성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107)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 과세특례 내용

- 자산을 장부가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모두에게 있어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
  - 인수법인은 합병과 동일하게 자산조정계정을 설정함.
- 피인수법인 이월결손금, 포괄적 양도된 자산·부채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등을 인수법인이 승계함.
  - 인수법인에 승계된 이월결손금 등을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없는 것으로 봄.
- 인수법인 주식을 피인수법인 주식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인수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과세이연함.
  - 합병시 의제배당과 동일하게 처리함.  
 의제배당액 = Min(실현된 이익, 금전 등 수취액)

□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방법<sup>108)</sup>

- 양도차익 중 주식교부부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총당금 대상 양도차익 =  $\frac{(\text{인수대가} - \text{포괄적으로 양도한 자산의 순자산 장부가액}) \times \text{인수대가 중 인수법인주식}}{\text{인수대가}}$

□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해산하는 시점에서 청산소득금액으로 과세함.

- 청산소득금액 = [잔여 인수대가(인수법인주식 + 금전 등) + 기타 잔여재산]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은 합병과 동일함.

- 즉, 인수 후 인수법인이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피인수법인 지배주주 등이 주식을 보유하여야 함.

---

108)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마. 주식의 교환·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하여 합병과 유사한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여, 2010. 7. 1. 이후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함.
- 이는 완전자회사(목표기업) 주주가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인수기업)에 이전하고 인수기업의 주식을 받는 형태의 조직재편에 대한 과세특례임.
  
- 적용요건<sup>109)</sup>
  - 상법<sup>110)</sup>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으로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완전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어야 함.
  - 합병과 동일하게 ①사업목적, ②사업계속성, ③지분연속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사업목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동일 것
    - 사업계속성: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지분연속성: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10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110)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 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sup>111)</sup>.
  -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 과세특례 내용

-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함<sup>112)</sup>.
  - 완전모회사의 완전자회사주식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지배주주 등(주식보유 의무대상자에 한함) 및 지분 1% 이상 주주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
    - 기타 소액주주로서 주식보유 의무대상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식은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

#### □ 과세이연대상 주식양도차익<sup>113)</sup>

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

11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63

- 주식양도차익 중 모회사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과세이연 대상임.
- 과세이연 대상 소득 = 주식양도차익 - 과세소득
  - 주식양도차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 금전 등 수취액) -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과세소득 = Min(주식양도차익, 금전 등 수취액)

### □ 과세이연 방식

- 법인의 경우, 과세이연 대상 소득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개인<sup>114)</sup>은 주식양도차익과 금전 등 수취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 처분시 익금에 산입함.

- 법인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중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에 산입함.

$$\text{익금산입액} = \text{압축기장충당금} \times \frac{\text{처분한 주식수}}{\text{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 개인의 경우에는 (완전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 과세소득 - 금전 등 수취액)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 과세함.

1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114) 거주자, 비거주자 및 종합과세대상 외 외국법인

$$\text{양도소득} = \frac{\begin{array}{l} \text{[완전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 \text{+ 과세소득} \\ \text{- 금전 등 수취액} \end{array}}{\text{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times \frac{\text{처분한 주식수}}{\text{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관한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경우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 완전모회사는 과세표준 신고시 자산조정계정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sup>115)</sup>

□ 적용대상

- 내국법인의 주주<sup>116)</sup>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 등<sup>117)</sup>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sup>118)</sup>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

115)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116)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함

117) 현물출자 등이라 함은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상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함.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65

하는 경우<sup>119)</sup>에 대한 과세특례임.

- 그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임<sup>120)</sup>.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sup>121)</sup>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sup>122)</sup>에 적용요건을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도 특례 대상임.
  - 특례 내용은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sup>123)</sup>.

□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분비율<sup>124)</sup>에 미달하는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

118)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함

1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함

12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12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

122) 현물출자 등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함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1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이란 자회사 주식의 40%임. 다만,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국외상장법인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20%임.

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 □ 감면내용

-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 □ 자법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감면내용과 감면 방법<sup>125)</sup>

- 현물출자시 자법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자법인 주주가 거주자 등<sup>126)</sup>인 경우에는 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의 경우에는 법인과 거주자 동일하게 다음의 가액을 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함.
  - 지배주주 등(주식보유의무대상자에 한함) 및 지분 1% 이상인 주주는 실제 취득가액
  - 기타 소액주주로서 주식보유의무대상이 아닌 자의 소유분은 교환 및 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지분비율에

1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35조의4

126) 거주자 등이라 함은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의미함.

의한 가액

□ 자법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감면내용 및 감면방법

○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sup>127)</sup>

-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그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의 시가평가액에서 그 현물출자 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text{압축기장충당금} \times \frac{\text{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text{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 사후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sup>128)</sup>.

-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 제2항

128)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 거주자가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법인은 30%) 미만 소유하는 경우
-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는 경우

### 3)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감면내용

- 제휴법인(주식회사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주권상장법인 제외)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sup>129)</sup>.

#### □ 감면요건

- ①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
  - 전략적 제휴계획이란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 간에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129)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

계획임

- 이때, 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②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③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 교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한 것
-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상기 감면요건 중 ③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 주식의 양도시 과세

-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취득 주식 중 양도 주식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sup>130)</sup>.

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및 제7항

### 3.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제

- 재무구조개선이란 부채비율의 감소를 의미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이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데 대한 조세지원을 의미함.

#### 가. 채권·채무 조정

##### 1) 채권 재조정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sup>131)</sup>.
-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sup>132)</sup>.

##### 2) 채무의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 감소액의 익금불산입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다음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sup>133)</sup>.
-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

131) 법인세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 2009. 2. 4. 신설

132)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9, 2003. 5. 10

133)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71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결손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이러한 채무면제익(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sup>134)</sup>.

#### □ 적용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내국법인이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134)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2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함.

□ 감면내용

- 대상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익금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함.

4)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주주 등(주주 또는 출자자)이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적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 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도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sup>135)</sup>.
  -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적용요건

- ① ‘채무구조개선계획<sup>136)</sup>’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

135)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73

법인의 지배주주 등<sup>137)</sup>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 대상이 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을 명시한 것을 말함<sup>138)</sup>.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sup>139)</sup>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채권은행자율협의회<sup>140)</sup>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②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 ①, ②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는 ①, ②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

---

136)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이 승인한 것에 한정

137)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를 말함.

1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동시행령 제34조 제6항

13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주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협의회

140)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

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함

□ 채무의 범위 및 손금한도<sup>141)</sup>

- 채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 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sup>142)</sup>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부채
  - 채권금융기관<sup>143)</sup>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그 이자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 손금액 한도는 다음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함.

$$\text{양도 등 대상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월결손금<sup>144)</sup>} \times \frac{\text{해당주주 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text{채무인수·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 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 합계}}$$

- 상기 규정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를 “양도 등 대상법인”이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sup>145)</sup>.

1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1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44) 양도 등 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함

145)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2항.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75

- 다만, 적용요건 ②에 해당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함.
  
-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 등 대상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sup>146)</sup>.
  - 적용요건 ①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해,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익금산입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봄)
  - 적용요건 ①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해,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익금산입액: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적용요건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익금산입액: 채무감소액 전액
  
- 적용요건 ①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또한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않음.

146)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3항.

### 5) 채무의 출자전환

- 출자전환이란 채권·채무재조정 방법의 하나로, 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함.
  - 출자전환의 방식으로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출자전환방식과 투자자가 매출채권 등을 할인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출자전환방식이 있음.
  
- 채무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발행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하며 채무면제익으로 봄.
  - 이때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함<sup>147)</sup>.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생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sup>148)</sup>.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147)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148)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나. 기타

1)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이연

-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해당 자산가액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 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sup>149)</sup>.
- 해당 자산가액이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봄.
- 자산을 증여한 주주 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 적용 요건<sup>150)</sup>
  - 재무구조개선계획<sup>151)</sup>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것
  -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일정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일정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sup>152)</sup>에 대한 부채의

149)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15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시행령 제37조 제5항

15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

1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다음을 말함.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일정 기한이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 또는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임.

#### □ 감면내용

- 자산을 증여한 주주 등(법인에 한함)의 경우,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sup>153)</sup>.

①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②  $\frac{\text{채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월결손금*}}{\text{해당주주 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times \frac{\text{자산증여에 참여한 모든 주주 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text{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

\* 채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임.

-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sup>154)</sup>.

-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함.
- 거주자인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

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임.

15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1항

154)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79

세액감면함.

-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양도차익상당액<sup>155)</sup>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text{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times \frac{\text{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 증여한 금액}}{(\text{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text{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 □ 사후관리

○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산출식에 의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sup>156)</sup>.

-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③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않음.

○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text{자산수증익} \times \frac{[\text{양수자산가액} - \text{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text{양수자산가액}}$$

1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2항

156)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4항

- ②의 사유 해당하는 경우: 다음 식의 적용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봄

$$\text{자산수증익} \times \frac{\text{부채비율} - \text{기준부채비율}}{\text{기준부채비율}}$$

- ③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 2)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 특례내용

-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일정 기한<sup>157)</sup> 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상환액(이를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sup>158)</sup>.

###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

-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함.

157)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과 자산양도일 중 늦은 날 또는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58)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81

-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

### □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sup>159)</sup>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 □ 대상이 되는 채무구조개선계획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을 명시한 것이어야 함.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것
-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채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채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으로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승인한 것
-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것

---

1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으로서 관할법원이 승인한 것

#### □ 사후관리

- 동 규정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때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① ‘채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③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다만, 파산선고,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음.

#### □ 거주자의 경우 다음에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①의 사유: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에 포함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소득세액
 
$$\text{양도차익상당액} \times [\text{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text{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text{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②의 사유: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

## II.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 83

소득세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  
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함)

③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전액

□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①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  
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②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  
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비율이 1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로 봄)

③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 ②번 사유의 적용시 기준부채비율이란 다음의 ①의 비율에서 ②  
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함.

① 채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의 부채를  
동일한 날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채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  
으로 채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채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  
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② 채무상환액을 ①에 의한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3)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sup>160</sup>).

-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란 1998년 9월 16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차후 매각하는 다음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및 거주자·비거주자 등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가능함.

- 중소기업자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매각부동산
-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매각부동산
- 개인주주 등이 법인에 증여하기 위한 매각부동산
- 합병·사업양수도시 매각부동산

#### 4)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특례내용

- 교환대상법인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적격한 양수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소비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sup>161</sup>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

160)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1항

여는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sup>162</sup>).

□ 적격한 양수방법

-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 등을 양수하는 방법
-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sup>163</sup>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이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sup>164</sup>).

□ 사후관리

- 주식 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 등이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sup>165</sup>).
- 주식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 주식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지배주주 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

161) 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  
16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163) 서로 다른 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함  
164)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2항  
165)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

## 5)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 특례내용

-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의 가액(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sup>166)</sup>.
- 이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한 주주 등(법인인 경우에 한정)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 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함.
-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주식 등을 증여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166)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2009. 5. 21.에 신설

### Ⅲ.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 1. 미국

##### 가. 개요

- 미국에서는 다른 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이를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실현된 전체 손익금액을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법인의 구조조정 관련 법적 요건(statutory requirements) 및 사법상 요건(judicial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실현된 손익 중 일부 혹은 전체를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비과세 특례<sup>167)</sup>를 적용받는 기업 조직재편을 ‘비과세 조직재편(tax-free reorganization)’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음.
  - 비과세 조직재편 유형
    - A형 조직재편(회사법상 합병)
    - B형 조직재편(주식교환)
    - C형 조직재편(자산인수)
    - D형 조직재편(분할)

---

167) 비과세라 함은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 자산의 장부가액(basis)을 승계하여 관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것을 의미함

- E형 조직재편(자본재구성)
  - F형 조직재편(조직변경)
  - G형 조직재편(도산기업 조직재편)
- 그리고 위의 7가지 유형의 조직재편은 다음과 같이 조직변경, 사업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Ⅲ-1> 미국의 구조조정세제

구분	지원 대상 조직재편
조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법상 합병(A형 조직재편)</li> <li>· 주식교환(B형 조직재편)</li> <li>· 자산인수(C형 조직재편)</li> <li>· 분할(D형 조직재편)</li> <li>· 조직변경(F형 조직재편)</li> </ul>
사업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개선작업(G형 조직재편)</li> </ul>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재구성(E형 조직재편)</li> </ul>

- A형의 합병, B형의 주식교환, C형의 자산인수는 모두 하나의 회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기업이나 법인격이 없는 기업과 합하여 하나의 회계실체가 되는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에 해당함.
- 이 중 A형의 합병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법상의 절차나 방법에 따른 협의의 합병으로 회사법상의 합병을 의미함.
  - 그리고 B형 및 C형과 같이 주식취득, 영업양수를 통한 종속관계의 수립은 광의의 합병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즉, 미국에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기업결합 외에도 미국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조직재편으로 D형에서부터 G형에서 주로 회사분할이나 자본구성의 변경, 법인의 명칭, 형태, 설립지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즉, 연방소득세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직재편은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기업이 변경된 회사 형태로 계속된다는 본질을 전제로 그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임.
  
- 7가지 유형의 조직재편은 크게 취득형과 분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
  - 취득형 조직재편은 양수법인이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의 자산 또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형태로, A형, B형, C형, 취득형 D형 및 G형 조직재편이 취득형 조직재편에 해당함.
  - 분할형 조직재편은 양도법인의 자산 중 일부가 양도법인(또는 그 주주)이 지배하는 자회사에 이전되는 형태이며, 이 때 동 자산과 교환하여 수취한 자회사의 주식 및 증권은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양도법인의 주주에게 분배됨.
    - 그리고 양도법인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청산하는 것도 가능한데, 양도법인이 남아 있는 경우 양도법인의 자산이 결국 두 법인 간에 배분되는 결과가 됨.
    - D형 및 G형 조직재편의 경우 취득형으로도, 분할형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 한편, E형 및 F형 조직재편의 경우 조직재편 당사법인은 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으며, 그 자산의 일부를 양수법인에 이전하지도 않으므로 취득형에도, 분할형에도 속하지 않음.
    - E형 조직재편은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으로 법인의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 F형 조직재편은 조직변경으로 기존법인의 자산을 신규법인에 이전하나 양도법인의 주주가 일반적으로 양수법인에서도 동일

한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함.

- 특정 조직재편 거래가 모두 위의 일곱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정확히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분류상 두 개 이상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연방소득세법 및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함.
  
- 한편, 조직재편이 법상 비과세 조직재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나 국세청 또는 법원이 해당 조직재편을 과세거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조직재편이 사업목적(business purpose)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과세거래로 처리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 비과세 조직재편의 사법상 요건”에서 다루기로 함.

## 나. 비과세 조직재편

- 이하부터는 연방소득세법상 비과세 조직재편의 유형과 각 유형별 비과세 요건 및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7가지 비과세 조직재편을 <표 III-1>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크게 조직변경, 사업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1) 조직변경

#### 가) 합병 관련 과세제도(A형 조직재편)

- 회사법상 합병에 해당하는 A형 조직재편은 세법상 1918년 규정되었으며, IRC에서는 A형 조직재편으로 흡수합병(mergers), 신설합병(consolidations),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s) 및 후방삼각합병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91

(reverse triangular mergers) 등 네 가지 종류를 허용하고 있음.

- A형 조직재편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미합중국, 주, 콜롬비아 특별구의 회사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따라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거부권이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합병이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①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

##### □ 흡수합병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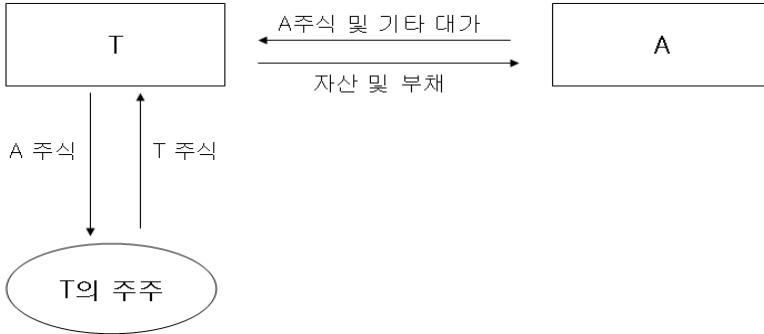
- 흡수합병(merger)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병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그 첫 번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교환대가로 주식(stock), 유가증권(securities) 및 기타 대가(boot)를 지급하고 해당 피합병법인을 인수하는 것
    - 이 때 피합병법인은 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에 대한 교환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 대가를 배분하고 소멸
  - 두 번째 형태는 합병법인이 직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하여 합병 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것
    - 그 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청산시키고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게 됨.

##### □ 신설합병의 형태

- 신설합병(consolidation)은 신설법인이 두 개 이상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음.
  -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에 이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합병법인

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 대가를 수취하게 되며 청산절차에 따라 이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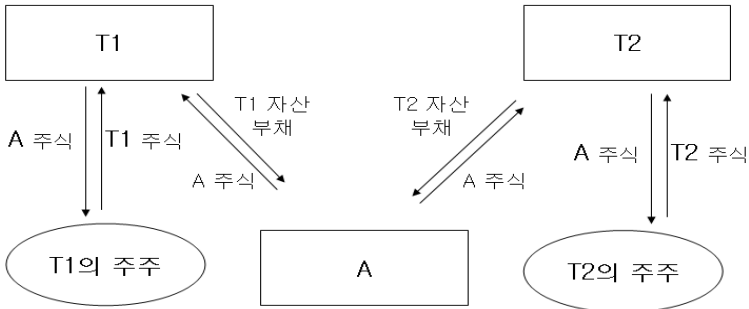
[그림 III-1] 흡수합병(Merger)



A: 합병법인, T: 피합법법인

- 신설합병은 흡수합병과 같이 신설된 합병법인이 그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 대가를 직접 피합법법인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고 해당 피합법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고 신설법인이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림 III-2] 신설합병(Consolidation)



A: 합병법인(신설법인), T1, T2: 피합법법인(기존법인)

□ 비과세 요건

- 합병거래는 주(state)의 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분의 계속성 요건
  - Section 368에 의하면, 합병대가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음.
  - 하지만 비과세 조직재편 관련 예규에 적용되는 사법상 원칙은 지분의 연속성으로, 관련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전체 합병대가 중 50% 이상이 합병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 때 주식에는 의결권 주식, 비의결권 주식 또는 이의 결합뿐만 아니라 보통주 및 우선주가 모두 포함됨.
  - 50% 요건은 납세자가 조직재편 관련 유리한 사전예규(advance ruling)를 받길 원한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피합병법인의 청산 요건
  - 국세청은 Rev. Rul. 2000-5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주법상 추가요건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은 연방 회사법뿐만 아니라 주의 회사법 역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합병 및 관련 절차는 양수법인 및 목표법인이 설립된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주법에서는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다수가 합병에 참여하여 유리한 의결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주식이 공개 거래되고 있다면 주주총회 개최, 대리인 요청 및 관련 승인획득 등의 절차가 필요해 합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 또한 주법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권리 역시 규정하고 있음. 주주는 주법상 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당 주식을 별도로 평가하여 현금을 받고 매각할 수도 있음. 이 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을수록 해당 지분을 제거하기 위한 현금지출 발생액이 증가할 것이고 지분의

## 연속성 원칙 역시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임.

※ 사례: 합병거래의 세무상 효과

### i) 상황

A형 조직재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거래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함.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에 공정시장가치 및 장부가액이 각각 \$2,000,000, \$1,300,000인 자산과 \$400,000의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의 보통주 \$1,000,000과 현금 \$600,000를 수취함. 자산 이전시점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E&P는 각각 \$1,000,000, \$750,000임. 피합병법인은 수취한 합병법인의 주식과 현금을 1인 주주인 Millie의 장부가액 \$175,000인 피합병주식과 교환하여 분배함. 만약 Millie가 합병시 합병법인의 주식만을 수취했다면 합병 직후 그녀는 합병법인 주식의 6.25%(전체 1,600,000주 중 100,000주)를 보유하게 됨.

### ii) 당사자별 과세효과

- 피합병법인 : 피합병법인은 자산 이전시 \$700,000[(\$1,000,000 + \$600,000) - (\$1,300,000 - \$400,000)]의 이득을 실현(realization)함. 하지만 동 합병은 비과세인 A형 조직재편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은 동 이득을 인식(recognition)하지 않음. 피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수취한 주식과 현금을 그 주주인 Millie에게 분배하는 경우 역시 이득을 인식하지 않음.
- 합병법인 : 합병법인은 수취한 자산에 대해 \$1,300,000의 장부가액을 승계함.
- 피합병법인의 주주 : Millie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시 \$1,425,000 ((\$1,000,000 + \$600,000) - \$175,000)의 이득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 중 이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실현된 이득(\$1,425,000)과 수취한 현금(\$600,000) 중 적은 금액인 \$600,000임. Millie의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175,000(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장부가 \$175,000 + 인식한 이득 \$600,000 - 합병대가 중 현금 수취액 \$600,000)임.

### iii) 간주상환(hypothetical rede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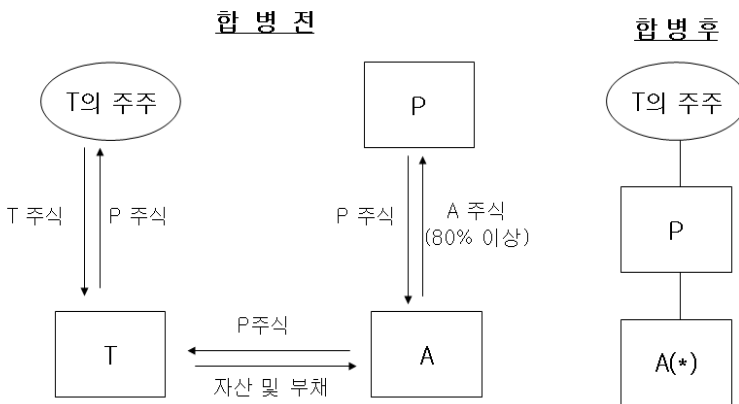
만약 Millie가 합병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만을 수취했다면 합병 직후 합병법인 주주지분 중 6.25%(전체 1,600,000주 중 100,000주)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합병법인의 한 주당 주식가치는 \$16(\$1,600,000(합병대가)÷100,000(주식 수))임. 그리고 합병대가 중 현금으로 수취한 \$600,000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함. 즉, 합병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 100,000주 중 37,500(\$600,000÷\$16)주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합병법인에 대한 Millie의 지분율은 6.25%(100,000주÷1,600,000주)에서 4%(62,500주÷1,562,500주)로 하락함.

- 자산인계를 수반한 A형 조직재편(Drop-down Type A reorganization)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역시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봄.
  - 따라서 합병법인이나 그 자회사 모두 자산 이전시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자회사는 합병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음.

② 삼각합병

- Sec. 368(a)(2)(D)에 의하면 삼각합병 역시 비과세 조직재편에 해당하며, 이는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A형 합병과 유사함.
- 즉, 삼각합병이라 함은 두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모두’ 승계받고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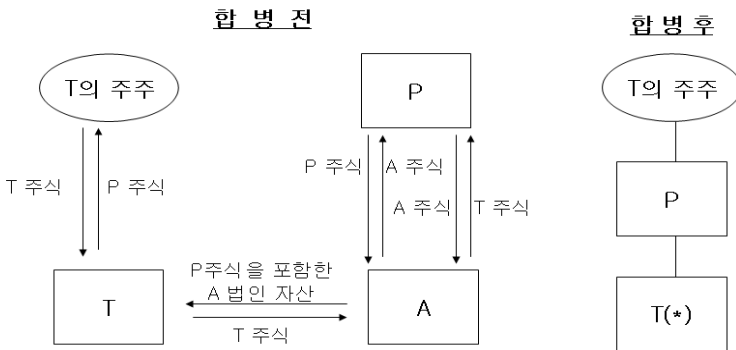
[그림 III-3]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s)



T: 피합병법인, A: 합병법인, P: 합병법인의 모회사  
 (\*) T의 자산·부채 소유

- 한편,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과 유사하며 단, 자회사가 목표법인에 흡수되어 목표법인은 모법인의 자회사로 남게 됨.
  - 따라서 역삼각합병의 경우 목표법인이 법인 실체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함.
    - 목표법인의 법인 실체가 유지되는 경우 목표법인이 보유한 특별 권한이나 특별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상 더 유리할 수 있음.

[그림 III-4]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s)



T: 피합병법인, A: 합병법인, P: 합병법인의 모회사  
 (\*) T, A의 자산·부채 소유

□ 비과세 요건

-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자산 취득요건
  - 삼각합병에서 합병법인은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모두 취득해야 함.
    - 국세청은 사전예규 목적상 '실질적으로 모든'을 피합병법인 전체 자산 공정시장가치의 70% 이상 그리고 순자산 공정시장가치의 90%라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삼각합병은 기본적인 합병 거래와 같이 주법상 요건을 충족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97

해야 하며, 조직재편시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은 모법인의 주식에 한함.

- 만약,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과 합병법인의 주식을 혼합하여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합병으로 인정되지 않음<sup>168)</sup>.
- 단, 합병회사의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합병대가로 이용 가능함.

#### 나) 주식교환 관련 과세제도(B형 조직재편)

□ B형 조직재편은 취득형 조직재편 중 가장 간단한 형태임.

- B형 조직재편에서 i) 목표법인의 주주는 그 주식을 양수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교환하고, ii) 목표법인은 양수법인의 자회사로 남게 됨.
- 따라서 B형 조직재편은 사실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조직재편으로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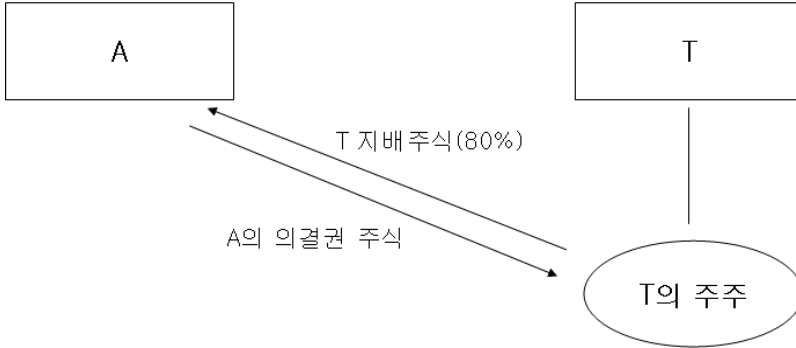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B형 조직재편으로 목표법인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조정사항에는 변동이 없으며, 조직재편 후 목표법인과 그 모법인은 결합세무신고서(consolidated tax return)를 작성하는 것이 선택 가능함.

- 목표법인이 주식교환 이후 즉시 청산하면, 국세청은 위 두 가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C형 조직재편인 자산인수 조직재편(asset-for-stock reorganization)으로 간주함.

---

168) 김진수 · 이준규, 위의 책, p. 87

[그림 III-5] B형 조직재편(\*)



T: 목표법인, A: 양수법인

(\*) 조직재편 결과 A법인은 모회사가 되고 T법인은 자회사가 됨

#### □ 비과세 요건

- 의결권 주식과의 교환 요건(solely-for-voting-stock requirement)
  - 양수법인은 목표법인의 주식을 양수법인의 의결권 주식(voting stock)과의 교환을 통해서만 취득해야 함<sup>169)</sup>.
    - 단, 단주를 취득할 권리 및 조직재편 비용(e.g. 법률비용, 회계 수수료 및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교환대가로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 지배력(control) 요건
  - 조직재편 결과 목표법인은 양수법인의 자회사가 되어야 함.
    - 이 때 지배력은 의결권 주식의 80% 및 비의결권 주식의 80%로 정의됨<sup>170)</sup>.
    - 따라서 양수법인은 목표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할 필요는 없으며, 소액지분의 존재가 20%까지 허용됨<sup>171)</sup>.

169) Section 368(a)(1)(B)

170) Sec. 368(c)

171) 소액주주는 그 소유 주식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법에 따라 거래의 비과세 속성을 침해하지 않고 현금을 수취하고 양도하는 것이 가능함. 예를

※사례

i) 상황

Mark는 목표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 주식의 장부 가액은 \$400,000임. Mark는 동 주식을 \$700,000의 양수법인의 의결권 주식과 교환함.

ii) 당사자별 과세효과

- 목표법인의 주주 : 동 거래로 Mark는 \$300,000의 이득을 실현하게 되나, 동 이득은 인식되지 않음. 따라서 Mark가 수취한 양수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400,000임.
- 양수법인 : 양수법인의 경우 역시 Mark에게 주식을 발행하며 수취한 양도법인의 주식을 \$400,000으로 계상하며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자산인계를 수반한 B형 조직재편 및 B형 삼각조직재편(drop-down and triangular type B reorganizations)

○ A형 조직재편과 같이 B형 조직재편에서도 관련 거래를 종결하기 전에 목표법인의 주식을 자회사에 이전하면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 삼각조직재편에서 양수법인의 모법인의 주식은 목표법인의 지배력 있는 주주지분과 교환됨.
- 그리고 기본적인 B형 조직재편에서와 같이 목표법인은 양수법인(또는 그 자회사)의 자회사로서 존재하게 됨.

다) 자산인수 관련 과세제도(C형 조직재편)

□ C형 조직재편은 자산인수(asset-for-stock acquisition)를 의미함.

○ C형 조직재편에서 양수법인은 그 의결권 주식 및 일정 한도 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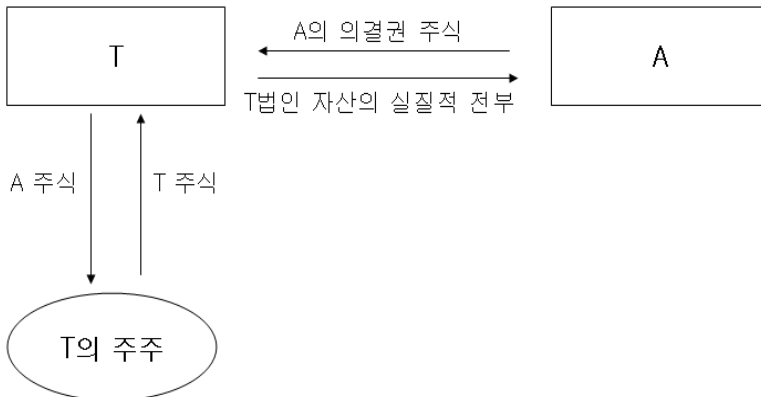
---

들어, 목표법인은 소액주주의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조직재편 전후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 그룹의 주주 지분에 대해 양수법인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비과세될 수 없음.

기타 대가와 교환하여 실질적으로 목표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해야 함<sup>172)</sup>.

- C형 조직재편에서 목표법인은 조직재편시 취득한 양수법인의 주식,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을 보유중인 다른 자산과 함께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함.
- 그리고 목표법인은 공식적으로 해산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상 보통 청산함.
  - 목표법인은 그 실체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음.
    - 또한 주법에 따르면 법인 실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산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함.
  - 이와 같이 C형 조직재편은 주법상 목표법인의 해산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결과가 발생하므로(예를 들어, 목표법인 자산의 취득), 실질적인 합병 거래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III-6] C형 조직재편(\*)



T: 목표법인, A: 양수법인

(\*) 조직재편 결과 T법인은 A법인 주식을 전부 T의 주주에게 분배하고 소멸함.

172) Sec. 368(a)(1)(C)

□ 비과세요건

-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자산의 취득 요건
  -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취득요건은 연방소득세법(IRC) 및 재무부 규정(Treasury Regulation)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 하지만 사전예규 목적상 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A형 조직재편의 삼각합병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목표법인의 자산 중 적어도 총자산 공정시장가치의 70% 그리고 순자산 공정시장가치의 90%를 취득해야 함.
- 의결권 주식과의 교환 요건(solely-for-voting-stock requirement)
  - C형 조직재편시 양수법인(또는 그 모법인)은 양수대가로 의결권 주식만을 사용해야 함<sup>173)</sup>.
  - 한편, 조직재편시 양수법인이 목표법인의 자산 중 의결권 주식을 80% 이상 취득했다면, 주식 외에 다른 양수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sup>174)</sup>.
    - 즉, 양수법인은 목표법인 자산 중 20%에 대해서는 양수대가로 현금, 유가증권, 비의결권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을 지급할 수 있음.
  -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직재편시 양수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범위가 그 금액만큼 줄어들게 됨.
    - 예를 들어, 인수한 부채가 목표법인 자산 공정시장가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조직재편은 양수법인이 양수대가로 현금, 유가증권, 비의결권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C형 조직재편으로 분류될 수 있음.

---

173) section 368(a)(1)(C)

174) section 368(a)(2)(B)

## ※사례

## i) 상황

양수법인은 의결권 주식 \$1,200,000와 교환하여 목표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함. 목표법인은 취득한 양수법인의 주식을 1인 주주인 Andrew에게 그의 목표법인 주식과 교환하여 배분함. 목표법인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는 \$1,400,000이고 장부가액은 \$600,000임. 또한 양수법인이 인수한 부채는 \$200,000이고, 목표법인의 E&P는 \$500,000임. 목표법인 주식에 대한 Andrew의 장부가액은 \$400,000임.

## ii) 당사자별 과세효과

- 목표법인 : 목표법인은  $\$800,000 (\$1,200,000 - (\$600,000 - \$200,000))$ 의 이득을 실현하였으나, 이는 인식되지 않음
- 양수법인 : 양수법인 역시 의결권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목표법인의 자산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600,000으로 계상함. 양수법인은 목표법인의 E&P(\$500,000)를 비롯하여 목표법인의 모든 조세속성(tax attributes)을 승계받음.
- 목표법인의 주주 : Andrew 역시 목표법인이 청산하면서 그의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800,000 ( $\$1,200,000 - \$400,000$ )의 이득을 실현하게 되나, 이는 인식되지 않음. 그리고 Andrew는 취득한 양수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400,000으로 계상함. 양수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목표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이 합산됨.

□ 자산인계를 수반한 C형 조직재편 및 C형 삼각조직재편(drop-down and triangular type C reorganizations)

- C형 조직재편에서 양수법인은 조직재편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회사에 이전하면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sup>175)</sup>.
- 또한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목표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모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C형 삼각조직재편(triangular Type C reorganization)도 가능함.
- C형 삼각조직재편의 요건은 일반적인 C형 조직재편의 요건과

---

175) section 368(a)(2)(C)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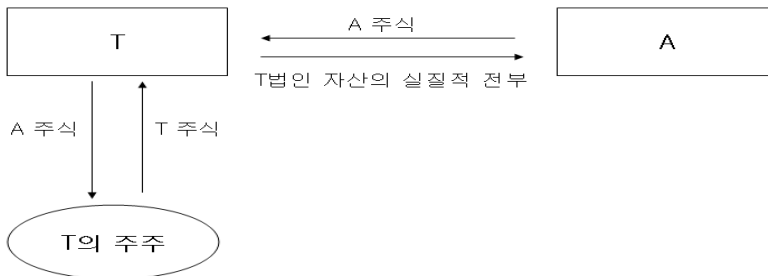
같으며, 이에 목표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가 양수법인의 모법인의 의결권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됨.

- 이 때 자회사인 양수법인은 모법인의 의결권 주식 외에 추가적인 양수대가로 유가증권, 현금 및 기타 자산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 라) 취득형 D형 조직재편

- A형, B형 및 C형 조직재편이 기업합병에 관한 비과세 특례라면 D형 조직재편은 기업분할에 관한 비과세 특례이나, D형 조직재편의 경우 취득형으로도 또는 분할형으로도 분류가 가능함.
- 취득형 D형 조직재편은 목표법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양수법인의 주식, 증권 및 기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 동 교환이 있는 후 목표법인은 청산절차에 따라 양수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증권 및 기타 대가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기타 자산을 그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함.

[그림III-7] 취득형 D형 조직재편(\*)



T: 목표법인, A: 양수법인

(\*) 조직재편 결과 T법인은 A법인에 자산을 양도하고 A주식을 T주주에게 분배함.

## □ 비과세 요건

-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자산 취득 요건
  - 양수법인이 실질적으로 목표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및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situation)에 따라 판단함.
  - 단, 사전예규 목적상 A형 및 C형 삼각조직재편에서 적용한 적어도 총자산 공정시장가치의 70% 그리고 순자산 공정시장가치의 90% 기준을 D형 조직재편에서도 적용함.
- 지배력 요건(control requirements)
  - 목표법인 또는 그 주주는 자산이전 후 즉시 양수법인을 지배해야 함.
    - 이 때 지배력은 전체 의결권의 50% 이상 또는 주식가치의 50% 이상으로 정의됨<sup>176)</sup>.
  - 취득형 D형 조직재편의 한 사례로 양수법인이 목표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하고 목표법인의 주주가 조직재편 후 결국 양수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취득형 D형 조직재편보다는 C형 조직재편(목표법인이 양수법인을 지배하지 않음) 및 A형 조직재편(거래가 주법상 합병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더 일반적임.

## □ 세무상 효과

- C형 조직재편 및 취득형 D형 조직재편은 비과세 요건과 세무상 효과가 거의 유사함
  - 조직재편이 C형 조직재편 및 D형 조직재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D형 조직재편으로 간주됨<sup>177)</sup>.

---

176) Sec. 368(a)(2)(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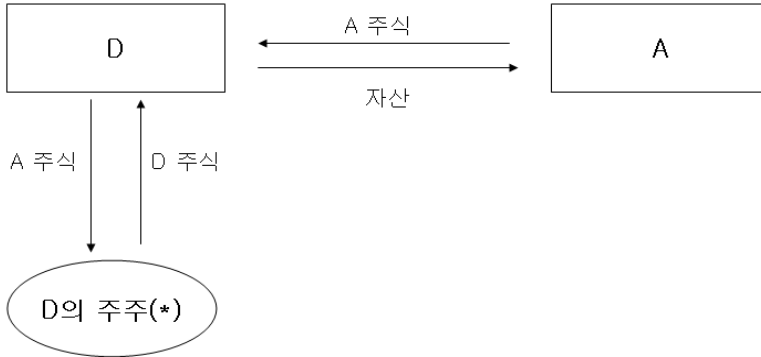
177) Sec. 368(a)(2)(A)

마) 분할 관련 과세제도(D형 조직재편)

- 분할형 D형 조직재편이라 함은 법인이 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법인에 이전하고 동 분할법인 및 그 주주가 즉시 자산을 인수한 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 분할형 D형 조직재편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이전과 더불어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또는 유가증권이 section 354(주식 및 증권의 교환), section 355(자회사 주식 및 증권의 배분) 또는 section 356(기타 매수대가의 수취)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함.
    - 즉, i)자산의 이전과 ii)주식 및 유가증권의 배분이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단일거래(single transaction)로 발생해야 D형 조직재편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될 수 있음.
  - 분할형 D형 조직재편은 다음과 같이 주로 사업상의 조정(business adjustments)을 목적으로 이용됨.
    - 한 법인 내의 위험이 높은 사업을 위험이 낮은 사업에서 분리하여 두 개의 법인으로 분할
    - 의견이 불일치하는 두 주주 간에 사업을 분할
    - 법인의 사업 활동을 그 기능 또는 사업이 수행되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분할
    - 사업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분할
- 분할형 D형 조직재편의 형태
  - Split-off
    - 분할법인(distributing corporation)이 자산의 일부를 자회사(controlled corporation)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가증권, 현금 및 기타 대가(boot property)를 수취하는 경우임.

- 분할법인은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배하고 그 대가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

[그림 III-8] 분할형 D형 조직재편: Split-off



D: 분할법인, A: 분할신설법인

(\*) D의 주주는 A 주식을 교부받되, D 주식을 반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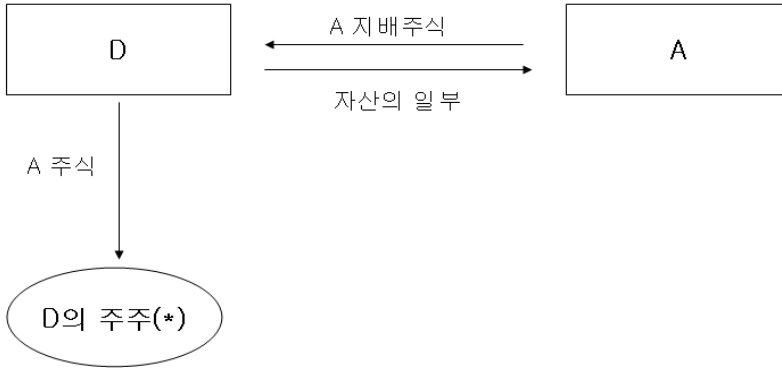
#### ○ Spin-off

- 분할법인이 그 자산의 일부를 자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가증권, 현금 및 기타 대가(boot property)를 수취하는 경우임.
- 분할법인은 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나,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반환하지 않음.
- Spin-off는 하나의 회사 내에서 운영되는 두 개의 사업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짐.

#### ○ 소멸분할(Split-up)

- 분할법인이 모든 자산을 두 개의 자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가증권, 현금 또는 기타 대가 자산을 수취하는 경우임.

[그림 III-9] 분할형 D형 조직재편: Spi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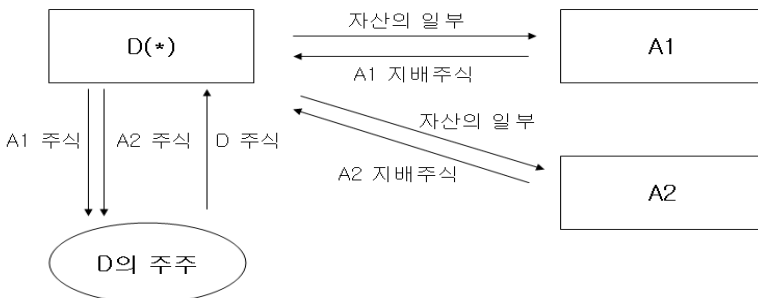


D: 분할법인, A: 분할신설법인

(\*) D의 주주는 D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A 주식을 교부받음.

- 분할법인은 두 개 자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모두 배분하고 그 대가로 발행주식을 모두 회수함.
- 이와 같은 거래는 두 개의 사업부문을 새로운 법인에 이전하고 기존법인은 청산하는 반면, 새로운 법인 간에는 자매회사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이루어짐.

[그림 III-10] 분할형 D형 조직재편: Split-up



D: 분할법인, A1, A2: 양수법인

(\*) D법인 자산의 일부가 각각 A1 및 A2 법인에 양도되고, D법인은 분할대가로 수취한 A1 및 A2 주식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함.

□ 비과세 요건: IRC 제355조 요건

- D형 조직재편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며, 이 때 다음의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주에게 배분되는 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함.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전체 의결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 및 의결권이 없는 전체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분배해야 함.
  - 분할을 하는 주된 이유가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양 회사의 E&P를 배분할 목적이어서는 안 됨.
    - 분할의 주된 목적은 각 건별로 상황 및 정황에 따라 판단하며, 분할 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그 양도가 미리 계획된 것이라면 당초 분할은 E&P를 배분할 목적인 것으로 봄.
  - 분할 직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은 각각 분할 전 최소 5년 동안 활발하게 수행했던 거래 및 사업을 유지해야 함.
    - 동 요건의 주된 목적은 법인이 불필요한 현금 및 기타 청산 자산으로 구성된 분할신설법인으로 spin-off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분할법인은 분할 직전 소유하고 있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과 유가증권 또는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가액을 모두 그 주주에게 배분해야 함.
    - 단, 보유 목적이 조세회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님을 국세청에 확인시킬 수 있다면 보유가 허용됨.
  - 분할은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적격분할에는 독점금지 소송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주주의 의견불일치로 사업이 분리된 경우 역시 포함됨.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09

- 분할 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는 분할 후의 법인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분할 전에 분할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는 분할 후 분할법인 및 (또는) 그 분할신설법인에서도 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주식 및 유가증권의 배분은 일정한 비율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집단의 주권을 제거하기 위해 불균형한 분배가 있을 수 있음.
  - split-off 거래에서 몇몇 주주는 분할법인의 주식 전체를 분할신설법인 주식과 교환할 수도 있음.
- Sec. 355 요건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plit-off는 주식상환으로, spin-off는 배당으로, split-up은 모법인의 청산으로 주주에게 과세됨.

#### □ 세무상 효과

- 자산이전(Asset transfer)
  - 분할법인은 자산이전시 i)주식 이외의 대가 자산(boot property)을 수취한 경우나 ii)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채를 인수하였는데 인수한 부채총액이 이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그리고 분할신설법인 역시 그 주식을 분할법인의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이전시 분할법인이 인식한 이득만큼을 인상 조정하여 분할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함.
    - 그리고 승계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 역시 포함됨.
- 주식 및 유가증권의 배분
  - 분할법인이 분할로 수취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Sec. 355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단, 분할법인이 분할시 주식 이외에 비현금성 대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중 첫 번째인 주주에게 배분되는 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분할법인은 이득(손실은 제외)을 인식해야 함.
- 분할 후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분할 전 보유하고 있던 분할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분할시 인식한 이득을 가산하고 분할시 수취한 현금 및 주식 이외의 대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를 차감한 금액임.
- 분할 전후로 수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은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할당됨.
- 그리고 주식 및 현금을 제외한 대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시장가치로 함.
- 주식 및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은 이전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 한편, 주식 이외의 대가 자산의 보유기간은 분할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 이 때 주식 이외의 대가(boot)라 함은 현금, 단기차입금,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기타 자산, 과거 2년 내에 과세거래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포괄함.

□ 주주가 주식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인식해야 할 소득금액의 크기 및 성격은 분할법인의 주식 및 증권을 이전했는지(split-off 및 split-up의 경우) 또는 이전하지 않았는지(spin-off의 경우)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주주가 spin-off에서 주식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공정시장

가치는 분할법인의 E&P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범위 내의 금액까지 배당에 해당함.

- Split-off 또는 split-up에서 주식 이외의 대가 자산을 수취하여 이득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수취한 주식 이외 대가의 공정시장가치 범위 내에서 이득을 인식함.
  - 그리고 주주가 교환으로 손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주식 이외의 대가성 자산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 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바) 조직변경 관련 과세제도(F형 조직재편)

- F형 조직재편은 동일성(identity), 형태(form), 사업장소의 단순하지만 영향력 있는 변경 즉, 조직변경을 의미함<sup>178)</sup>.
  - 전통적으로 F형 조직재편은 기존 법인이나 주주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사업형태나 법인명을 변경하는 데 이용되었음.
  - F형 조직재편에서 기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는 신규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됨.
    - 그리고 기존 법인의 주주나 채권자는 신규법인에서도 동일한 지분의 주식 및 채권을 가짐.

※사례

- 법인 라이더는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설립됨. 경영진은 델라웨어 주가 증권법 및 회사법상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설립 주를 바꾸기로 결정함. 기존 법인 라이더는 해당 자산을 모두 신설 법인 라이더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 법인의 모든 주식을 수취함. 그리고 기존 라이더 법인의 주주는 보유 주식을 신설 법인 라이더 주식과 교환하고 기존 라이더 법인은 청산함.
- 동 조직재편으로 대상 법인 및 그 주주는 거래과정에서 이득을 인식하지 않음. 주주의 경우 기존 법인 라이더 주식의 장부가액을 신설 법인 라이

178) Sec. 368(a)(1)(F)

- 더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대체함. 또한 신설 법인 라이더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기존 법인 라이더 주식의 보유기간 역시 포함됨. 신설 법인 라이더의 자산은 기존 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것임. 또한 신설 법인은 기존법인의 조세속성을 그대로 승계함.
- 동 사례는 두 개의 법인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 두 법인은 법인의 법적 실체만을 달리한 동일한 법인임

## 2) 사업조정

### 가) 기업개선작업(G형 조직재편)

- 분할형 G형 조직재편은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동의를 거쳐 법인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법인에 이전하는 것임
- 그리고 양도법인인 부채기업은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수취한 양수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을 양도법인의 주주, 유가증권소유자 및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함
- 양도법인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파산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해 파산될 수도 있음

## 3)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 가) 자본재구성(E형 조직재편)

- E형 조직재편은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으로 정의됨<sup>179)</sup>.
- 자본재구성이라 함은 1942년 대법원 결정에 의하면 기존 법인의 틀 안에서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즉, 기업의 외부주주, 유가증권, 납입자본금 등의 성격과 금액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주주에게만 거래효과가 있고 자본재구성 과정에서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 배분된 경우

---

179) Sec. 368(a)(1)(E)

가 아니면 법인자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자본재구성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자비용 및 부채자본 비율 (debt to equity ratio)을 낮추기 위해서임.
- 법인은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기존에 발행한 부채와 교환하는 자본재구성을 통해 이자비용 및 부채자본 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함.
- 또한 자본재구성은 재산계획(estate planning device)에도 이용됨.
  -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지분이 보통주 및 우선주와 교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동 자본재구성 후 보통주는 자녀에게 증여되고 해당 자녀는 보통주 지분에서 지배력을 갖게 되어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획득함. 한편, 부모는 우선주 현금 배당으로부터 매년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됨. 그런데 우선주의 경우 그 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재산 가치는 동결되어 관련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자본 가치의 증가는 보통주를 소유한 자녀에게 발생하게 됨.
  - 이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재구성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및 증여세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회는 자본재구성의 남용을 막기 위해 Secs. 2701-2704에서 정확한 가치평가, 이전 과세 목적, 법인 및 파트너십이 이전하는 지분과 보유하는 지분에 대한 상세 절차를 제공하고 있음.
- 자본재구성의 형태
  - 주식교환(stock-for-stock exchange)
    - 한 법인 내에서 보통주 간의 주식교환, 우선주 간의 주식교환이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 이는 E형 조직재편에 해당함.
    - 주식교환으로 주주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이전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새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사용함.

- 한편, 한 개 법인 내에서 보통주를 우선주와 교환하거나 우선주를 보통주와 교환하는 경우 또는 두 개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이는 E형 조직재편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종류의 주식 간의 교환(예를 들어, 보통주를 우선주와 교환)인 경우에도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E형 조직재편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주식교환시 주주가 주식 이외의 대가 자산(boot property)을 수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Sec. 354(a)의 미인식 규칙(nonrecognition rule)에 따라 비과세함.
  - 한편, 주식교환시 수취한 주식의 공정시장가치가 이전한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 및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situation)에 따라 그 차액을 증여, 자본 불입, 보수, 배당 또는 채무변제액으로 보아 과세함.
- 채권과 주식교환(bond-for-stock exchange)
  - 채권과 주식교환은 법인이 채권이자에 대한 변제대가로 지급한 주식을 제외하고 비과세
    - 법인이 채권이자에 대한 변제대가로 지급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의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보아 과세함.
- 채권교환(bond-for-bond exchange)
  - 채권교환의 경우 수취한 채권의 원리금이 이전한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 수취한 채권의 원리금이 이전한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원리금의 공정시장가치는 주식 이외의 대가(boot)로 보아 채권자에게 과세됨.

다. 비과세 조직재편의 사법상 요건

- 조직재편이 비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방소득세법 상 요건 외에도 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비과세 조직재편의 요건에 관한 연방소득세법의 규정은 실정법 상 요건(statutory requirements)으로 형식기준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형식기준만으로는 개별적인 조직재편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비과세 조직재편이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조직재편이 비과세되기 위한 추가적인 사법상 요건(judicial requirements)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소유지분의 연속성 요건
    -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사업목적 요건
    - 단계거래 원칙 요건
  - 이는 형식보다는 실질(substance over form)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유지분의 연속성(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 소유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조직재편으로 주주가 투자를 정리했다 기보다는 그 형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이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
- 이는 조직재편 이전 해당 법인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주지분의 연속성으로 판단함<sup>180)</sup>.

- 연방 소득세법에서는 조직재편시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범위에

---

180) Reg. Sec. 1.368-1(b)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예규 목적상 목표법인(양도법인)의 기존 주주가 전체 대가 중 50% 이상을 양수법인의 주식으로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50% 비율은 단지 사전예규 목적상 적용되는 것이고, 법원은 더 낮은 비율을 허용한 적도 있음<sup>181)</sup>.
  - 즉, 동 50% 비율은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저한도에 해당함.

- 한편, 국세청은 최근에 지분의 연속성이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E형 조직재편 및 F형 조직재편에서 적용되지 않음을 Reg. Sec. 1.368-1(b)의 수정을 통해 밝힌 바 있음.

## 2)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의 사실 및 정황에 따라 판단함.
  - 과거에는 양수법인이 목표법인의 중대한 사업라인 중 하나 이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음.
  - 하지만 현행 규정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그 사업에서 목표법인이 과거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자산의 상당 부분은 목표법인이 과거 사업에서 이용하던 자산의 상대적 중요성에 기초하여 판단함.

- 한편, 양수법인은 목표법인의 사업자산을 직접 소유할 필요는 없음.

---

181) V.L. LeTulle v. Scofield, 23 AFTR 789, 40-1 USTC ¶9150(USSC, 1940)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17

- 계열그룹에서 지분율이 80% 이상인 양수법인의 자회사가 해당 자산(사업활동)을 소유(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양수법인이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나 LLC 또는 그 자회사 중 하나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함.

#### 3) 사업목적 요건(business purpose requirement)

- 조직재편이 비과세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그 실제 성격을 감추기 위해 위장하거나 사업 목적 없이 별도로 의도한 계획(예를 들어, 조세회피)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재편의 경우 비과세 조직재편에 해당하지 않음<sup>182)</sup>.

#### 4) 단계거래 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

- 단계거래 원칙이라 함은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는 것임.
- 즉, 단계들이 상호의존적이어서 한 단계의 달성이 연속된 단계의 완성 없이는 무의미할 때 그 거래는 한 단계의 거래로 보게 됨.
  - 국세청은 단계거래 원칙에 따라 다단계로 이루어진 조직재편을 하나의 과세거래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납세자가 독립된 거래로 처리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비과세 조직재편 거래로 간주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거래를 재구성하여 단일 거래로는 이용할 수 없는 세무상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이 가능함.

---

182) Reg. Sec. 1.368-1(c)

## 라. 당사자별 과세효과

- 앞서 설명한 7가지 유형의 비과세 조직재편(tax-free reorganization) 이 목표법인, 양수법인 및 목표법인의 주주에게 미치는 과세효과를 요약하면 <표 III-2>와 같음.

&lt;표 III-2&gt; 비과세 조직재편의 세무상 효과(미국)

구분	세무상 효과
목표법인 (양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이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단, 현금 및 주식 이외 비현금성 대가 자산을 수취하고 이를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이득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실현된 이득, 양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현금+기타 대가자산의 공정시장가치)</li> </ul> </li> <li>- 양수법인이 목표법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역시 이득을 인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분할형 D형 조직재편의 경우 초과부채액에 대해서는 과세</li> </ul> </li> </ul> </li> <li>○ 주주에게 배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법인은 적격자산(예를 들어, 주식 및 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이외 비현금성 대가 자산 또는 보유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li> </ul> </li> </ul> </li> </ul>
양수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이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법인은 주식 및 채권과 교환하여 목표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목표법인 및 그 주주에게 주식 이외에 비현금성 대가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해야 함.</li> </ul> </li> <li>- 목표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자산의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법인의 장부가액에 목표법인이 자산 이전시 인식한 이득을 가산</li> </ul> </li> <li>- 목표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자산의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법인의 보유기간 역시 합산하여 계산</li> </ul> </li> </ul> </li> </ul>

<표 III-2>의 계속

구분	세무상 효과
<p>목표법인의 주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에게 배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법인의 주식만을 수취한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현금, 초과 유가증권, 또는 기타 대가 자산을 수취하는 경우 이득(손실 제외)을 인식해야 함</li> </ul> </li> <li>- 인식해야 할 이득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실현된 이득, 수취한 현금+주식 이외 기타 대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li> </ul> </li> <li>- 이득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법인에 Sec. 302(b) 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해당 소득은 목표법인의 E&amp;P에 대한 해당주주의 지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수취한 양수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의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된 목표법인 주식 및 증권의 장부가액 + 주주가 교환으로 인식한 이득 - (수취한 현금+주식 이외 기타 대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li> </ul> </li> <li>- 수취한 양수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의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된 목표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li> <li>· 수취한 주식 이외 대가 자산의 보유기간은 교환일 다음날부터 기산</li> </ul> </li> </ul> </li> </ul>

1) 목표법인(양도법인)

자산이전시 손익의 인식

- 목표법인이 비과세 조직재편의 일환으로 자산을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조직재편 상대방 법인인 양수법인의 주식만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sup>183)</sup>.
- 또한 목표법인이 그 자산을 이전하며 양수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 이외 비현금성 대가 자산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목표법인

183) Sec. 361(a)

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했다면 역시 이득을 인식하지 않음<sup>184)</sup>.

- 왜냐하면 관련 이득은 주주 및 채권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임.
- 단, 수취한 현금 및 주식 이외 비현금성 대가 자산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이득으로 인식해야 함.
  - Min(실현된 이득, 양수법인에게서 수취한 현금+기타 대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재편에서 목표법인은 청산하고 양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자산을 모두 목표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이외에 수취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목표법인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따라서 목표법인이 인식해야 할 손익은 없음.
    - 단, 평가증된 자산(appreciated property)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목표법인이 이득을 인식해야 함.

#### □ 감가상각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 자산이전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환수 가능성<sup>185)</sup>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향후 해당 자산을 과세거래에서 매각 및 교환하는 경우 적용함.

#### □ 부채의 인수(Assumption of liabilities)

- 양수법인이 목표법인의 부채를 인수하거나 부채가 담보된 목표법인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자산이전시 이득을 인식하지 않음.
  - 단, 분할형 D형 조직재편에서 양수법인이 인수한 부채 총액이 인수한 자산의 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목표법인은 이득을 인식해야 함.

---

184) Sec. 361(b)

185) Sec. 1245 및 Sec. 1250의 감가상각 환수 규칙

□ 주식 및 유가증권의 배분시 손익의 인식

- 목표법인은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그 주주에게 (1) 목표법인의 주식, 주식에 대한 권리 및 채무 또는 (2) 조직재편 상대방 법인의 주식, 주식에 대한 권리 및 채무를 배분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단,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주식 이외에 비현금성 대가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목표법인이 해당 자산을 공정시장가치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득(손실 제외)을 인식해야 함.

2) 양수법인

□ 양수법인은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주식과 교환하여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수취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sup>186)</sup>.

- 단, 양수법인이 목표법인 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이외에 비현금성 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손익을 인식해야 함.

□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

-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취득한 자산은 목표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계상함.
  - 단, 자산이전시 목표법인이 이득을 인식했다면 그 금액만큼 가산하게 됨.
    - 하지만 목표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산이전시 이득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의 상향조정은 대체로 발생하지 않음.

□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 비과세 조직재편시 양수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목표법인의 보유기간 역시 포함됨.

---

186) Sec. 1032

### 3) 목표법인(양도법인)의 주주

- 조직재편 당사자 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이 조직재편 계획에 따라 동일한 법인 내의 주식 및 유가증권과 교환되거나 또는 조직재편 상대방 법인의 주식 및 유가증권과 교환되는 경우 해당 주주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sup>187)</sup>.
  - 한편, 주식 및 유가증권 외에 자산(비적격 자산)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과세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다음의 금액을 이득으로 인식하게 됨.
    - Min(실현된 이득, 수취한 현금+기타 대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즉, 주주는 지분의 연속성을 침해하는 비적격 자산을 수취한 범위 내에서 이득을 인식해야 함.
    - 이 때 비전통적 우선주(예를 들어, 상환우선주)는 주식 이외에 대가 자산으로 간주되며, 유가증권의 경우 이전하는 유가증권의 원금이 수취하는 유가증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공정시장가치는 현금 이외의 대가를 구성하게 됨.
  
- 주식 이외 대가 자산의 수취가 배당분배의 효과를 갖는 경우 인식해야 할 이득금액 중 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해당 주주지분의 범위액까지는 배당으로 간주하며, 그 초과액은 자본이득으로 봄.
  - 관련 교환거래가 배당분배의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Sec. 302(b)의 주식상환 규칙(stock redemption rules)을 이용함.
    - 일반적으로 비과세 조직재편에서는 목표회사 주주의 주식을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며, 대법원의 Donald E. Clark 판결에 의하면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목표법인의 주주는 목표회사의 주식을 양수법인의 주식과 교환한 것으로 간주함.

---

187) Sec. 354(a)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23

- 이 때 목표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며, 그 대가로 양수법인 주식 뿐만 아니라 주식 이외의 대가를 수취한 경우 가정상 상환(hypothetical redemption)이 발생
  - 동 가정상 상환이 교환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이득을 자본이득으로 처리
    - 동 규칙은 조직재편시 증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 때 주식 이외의 대가는 증권소지인이 수취한 초과 원리금의 공정시장가치임
- 조직재편으로 수취한 주식 이외의 대가를 자본이득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목표법인과 양수법인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음
- 양수법인이 목표법인보다 큰 경우 Sec. 302(b)(2) (실질적 불균등 상환) 또는 Sec. 302(b)(1) (본질적으로 배당과 다름) 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으로 처리
  - 한편, 양수법인이 목표법인보다 작은 경우 목표법인의 주주는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예를 들어, 수취한 주식 이외의 대가가 목표법인 E&P에 대한 해당 주주지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을 수취한 것으로 처리<sup>188)</sup>

---

188) 2003년 이전 개인주주는 이득을 배당소득보다 자본이득으로 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했음.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20%의 세율이 일반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았기 때문임. 하지만 2003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감면법(JGTRRA of 2003)이 도입되며, 2003년 5월 6일부터 자본이득세율이 15%로 인하되었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에 개인주주가 수취한 적격 배당이 추가되었음. 따라서 이득이 자본이득 또는 배당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자본이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한데, 왜냐하면 자본이득의 경우 당기에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실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계하고 남은 자본손실은 이월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누릴 수 없는 혜택임.

한편,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음. 왜냐하면 수취 배당액의 70%, 8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공제를

□ 수취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장부가액

- 목표법인의 주주 및 유가증권 보유자가 수취한 주식 및 유가증권 (미인식 자산, nonrecognition property)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음.

교환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장부가액

(+) 교환시 인식한 이득

(-) 교환으로 수취한 현금 + 교환으로 수취한 현금 이외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수취한 자산의 장부가액

- 주주 또는 유가증권 보유자가 주식 이외에 대가자산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이전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같음.
  - 하지만 조직재편시 이득을 인식하게 되면 수취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해당 이득금액만큼 증가하게 됨.
- 조직재편시 현금 및 기타 대가 자산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과 기타 대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를 이전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취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결정해야 함.
  - 이 때 주식 이외에 기타 대가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공정시장가치로 계상함.
- 목표법인의 주주가 한 종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직재편의 결과 여러 종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총장부가액은 주식 및 유가증권의 사이에 각각의 종류별로 그 공정시장가치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함.

---

받아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자본이득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래에서 인식한 자본손실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리고 관련 이득을 배당으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조직재편에 참가한 법인 또는 개인주주는 이득의 인식을 이연하기 위해 회계상 할부법을 이용할 수도 있음.

□ 보유기간

- 주식 및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은 조직재편시 이전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함.
- 그리고 주식 이외의 대가 자산의 보유기간은 교환일 다음날부터 계산함.

마. 조세속성의 승계

1) 개요

□ 비과세 조직재편의 경우 양수법인은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의 조세속성(예를 들어,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유보 이익잉여금 등)을 승계해야 함<sup>189)</sup>.

- A형, C형, 취득형 D형, F형 및 취득형 G형 조직재편에서 양수법인은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의 자산과 함께 그 조세속성을 모두 취득함.
- B형 및 E형 조직재편의 경우 법인 간에 자산이전이 없으므로 조세속성이 승계되지 않음.
- 분할형 D형 및 G형 조직재편의 경우에는 분할법인(또는 양도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또는 자회사) 간 자산의 분배가 있으나 조세속성 중 분할법인(또는 양도법인)의 E&P만이 승계됨.

□ 승계되는 조세속성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sup>190)</sup>.

-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carryovers)
- 이익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

189) Sec. 381(a)

190) Sec. 381(c)

- 자본손실이월액(Capital loss carryovers)
- 일반 사업 공제(General business credits)
- 회계방법(Method of accounting)

□ 하지만 결손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특정 조세속성(예를 들어, 이월결손금)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제한이 있음<sup>191</sup>).

## 2) 이월결손금

### 가) 이월결손금 승계

- 양수법인은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의 자산을 인수하며 이월결손금 역시 승계받게 됨.
  -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과세소득 중 자산인수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함.
    - 따라서 조직재편 후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전체 과세사업연도 일수 중 조직재편일 이후의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할 계산한 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곱하여 계산함.
  - 1년을 초과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것부터 사용함.
-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공제한도
  - 승계요건
    - 비과세 조직재편

---

191) Sec. 269, Sec. 382, Sec. 383, Sec. 384

○ 공제한도

-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과세소득 중 자산인수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사례

- i) 목표법인이 양수법인에 합병되며 2006년 6월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함. 두 법인의 과세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2006년 초 목표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200,000의 이월결손금이 있음. 목표법인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 세무신고를 하며, 이월결손금 차감 전 과세소득으로 \$60,000을 계상함. 따라서 양수법인은 목표법인의 이월결손금 \$140,000을 승계함.
- ii) 그리고 양수법인은 2006 사업연도 동안 \$146,000의 과세소득이 과세기간 중 균일하게 발생하였음. 따라서 양수법인이 2006년 목표법인을 취득한 이후 기간인 2006. 7. 1 ~ 2006. 12. 31의 184일 동안 창출한 소득은 \$73,600( $184/365 \times \$146,000$ )이며, 동 소득에서 목표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음. 그리고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 \$66,400( $\$140,000 - \$73,600$ )은 다음 과세 사업연도로 이월됨.

- 한편, 납세자는 조세속성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결손법인의 자산 및 주식을 매입할 수 없음<sup>192)</sup>.

- 그리고 결손법인은 그 결손액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익이 난 법인의 자산 및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나) 이월결손금 사용 제한<sup>193)</sup>: 결손법인의 주식소유권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결손법인의 주식 소유권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매입거래 및 비과세 조직재편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사용에 제한이 있음.

192) Sec. 382, Sec. 269

193) Sec. 382

- 이 때 주식 소유권에 상당한 변화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함

※ 이월결손금 사용제한 요건 : 소유권 변화 요건

- i) 소유자 변동 : 지분을 5% 이상의 주식 소유권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비과세 조직재편(분할형 D형, G형 및 F형 조직재편을 제외)이 발생
- 5% 지분 테스트는 결손법인의 주식가치에 기초하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계산에서 제외
  - 소유권 변동은 지분을 5% 이상인 개인의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 전후로 측정
  - 5%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결손법인 주식을 5% 미만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는 하나의 주주로 간주
- ii) 지분구조의 변동 : 지분을 5%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신규 결손법인의 지분율이 과거 3년간 기존 결손법인에서 보유했던 가장 낮았던 지분율보다 50%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기존 결손법인이라 함은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 중 운영손실이 있는 법인으로 i)의 지분 변동이 있어야 함.
  - 한편, 신규 결손법인이라 함은 지분변동 이후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법인임.

- 한편, 분할형 D형, G형 및 F형 조직재편의 경우 해당 조직재편으로 분할법인(양도법인)의 주식 소유권이 50%포인트 이상 변동하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함.

□ 공제한도

- 주식소유권 변동 후 종료하는 과세 사업연도에 대한 기존 손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소유권 변동 직전 기존 손실법인의 주식가치에 장기 비과세율을 곱한 것과 같음.
- 장기 비과세율(long-term tax-exempt federal rate)은 국세청이 정하며 주식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 달이 끝나는 3개월의 기간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29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함.

- 신규 결손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청하여 기존 결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이월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공제한도를 증가시킴.
  -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은 20년임.

#### ※사례

##### i) 상황

X사는 Y사를 2007년 1월 1일 합병함. Y사의 주주들은 50% 이상의 소유권 변동은 경험함. 이 때 Y사는 \$500,000의 이월결손금이 있음. Y사의 주식가치는 \$1,000,000이고, 장기 비과세율은 10%임.

##### ii)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2007 과세기간:  $\$100,000(\$1,000,000 \times 10\%)$ 
  - 동 기간 동안 X사의 이월결손금 공제 전 과세소득이 \$70,000이면, \$100,000의 공제한도 중 \$70,000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30,000은 이월되어 2008년 공제한도를 \$30,000만큼 증가시킴.
- 2008 과세기간:  $\$130,000(\$1,000,000 \times 10\% + \$30,000)$

#### □ 사후관리

- 주식소유권 변동 이후 2년 동안 신규 결손법인이 기존 결손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기존 결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없음.

#### 3) 세액공제 및 자본손실 이월액의 사용 제한<sup>194)</sup>

- 연방소득세법에 의하면 세액공제 및 자본손실 이월액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재편 역시 제한되고 있음<sup>195)</sup>.
- Sec. 382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주식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및 자본손실 이월액의 사용에도 제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194) Sec. 383

195) Sec. 383

-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에 적용되는 한도 규정이 사업공제(general business credit), 최소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 및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에도 적용됨.

#### 4) 미실현 자본이득 상계 제한<sup>196)</sup>

- 자본이득 계상액(built-in gains)을 상계하기 위해 기 취득한 손실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제한됨<sup>197)</sup>.
  - 양수법인 또는 목표법인(손실법인)이 기 취득한 손실의 경우 조직재편 후 5년의 기간 동안 다른 법인(이득 법인)이 인식한 미실현 자본이득(built-in gains)에서 차감할 수 없음.
    - 단, 동 미실현 자본이득은 이득 법인이 기 취득한 손실과는 상계 가능함.
  - 이와 같이 미실현 자본이득에서 손실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였고 그 중 한 법인이 이득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됨.

#### 5) 추가 제한<sup>198)</sup>

- Sec. 382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Sec. 269에서는 추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직재편 결과 목표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였는데, 취득의 주된 목적이 공제혜택을 통해 연방소득세를 포탈 및 회피하거나 동 거래가 없었더라면 적용할 수 없는 공제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인 경우 동 추가제한 규정을 적용함.
    - 이 때 지배력이라 함은 의결권의 50% 또는 발행주식 가치의

---

196) Sec. 384

197) Sec. 384

198) Sec. 269

50%를 말함.

- 국세청이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이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주된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임.

## 2. 영국<sup>199)</sup>

### 가. 조직변경

#### 1) 합병

#### 가) 개요

- M&A와 관련된 영국의 주요 세법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소득 및 법인세법 1988(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of 1988: 이하 “ICTA 1988”)
  - 자본이득세법 1992(the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이하 “TCGA 1992”)
  - ICTA 1988 및 TCGA 1992와 관련된 후속 재정법(the annual Finance Acts subsequent to the above consolidating acts)
  - 부가가치세법 1994와 이와 관련된 후속 재정법(the Value Added Tax Act of 1994 and subsequent Finance Acts)
  - 인지세법 1891과 이와 관련된 후속 재정법, 인지세와 관련된 기타 법률(the Stamp Act of 1891, subsequent Finance Acts and other acts referring to stamp duty)
  - 토지거래인지세에 관한 재정법 2003(the Finance Act 2003 relating to stamp duty land tax)

---

199) [www.ibfd.org](http://www.ibfd.org)

- 영국은 합병과 관련된 포괄적 조세감면규정을 갖고 있지 않음.
  - 다만, 합병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데 이용 가능한 다양한 조세특례규정이 존재함.

<표 III-3> 합병과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구분	관련 규정	과세특례 내용	과세특례 요건
직접세	기업집단 내 이전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17 <sup>1)2)</sup>	합병회사에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가액으로 자본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회사가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목적상 양수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sup>3)</sup>에 속해야 함</li> <li>○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50% 이상의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li> </ul>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139)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인수회사의 보통주 주주에게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발행하여야 하며, 채무의 인수 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야 함</li> <li>○ 사업목적테스트 통과4)</li> <li>○ 둘 중 하나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인수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기업재편 이후에 인수회사가 수행해야 함. 또는</li> <li>- 회사법 1985 §425, 북아일랜드 회사법 1966 §418 또는 이에 대응하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 또는 정리계획안에 해당할 것</li> </ul> </li> </ul>
피 합병 법인의 주주 <sup>5)</sup>	자본이득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126~§138)	신규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시점까지 자본이득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테스트 통과<sup>4)</sup></li> <li>○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A가 회사B의 주식이나 회사채와의 교환의 대가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회사가 B회사의 보통주를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교환의 결과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li> </ul> </li> </ul> </li> </ul>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33

<표 III-3>의 계속

구분	관련 규정	과세특례 내용	과세특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회사가 B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개매수의 결과, B회사 주식과의 교환의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 B회사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 간에 기업재편이나 합병을 위한 약정이 존재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에게 기존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주주에게 이루어지는 재산의 분배<sup>6)</sup></li> </ul>
부가가치세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자산을 양수자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li> <li>○ 양도자가 과세자라면 양수자가 이미 과세자이거나 사업 이전의 결과로 직후에 과세자가 되어야 함</li> </ul>
인지세	기업집단 내 이전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 (개정법 1930 §42, 개정법 2003 Part I, Sched. 7)	인지세 및 토지거래인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집단 기업 간에 자산의 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sup>7)</sup></li> </ul>
	기업재편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 (개정법 1986 §75, 개정법 2003 Part 2)	인지세 및 토지거래인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회사의 등록사무소가 영국 내에 소재해야 함</li> <li>○ 인수회사가 사업 인수의 대가로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인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피인수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인수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됨</li> </ul>

&lt;표 III-3&gt;의 계속

구분	관련 규정	과세특례 내용	과세특례 요건
간접세	피인수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재정법 1986 §77)	인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테스트 통과</li> <li>◦ 사업인수 후에 당사회사의 각각의 주주가 타방 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회사의 등록사무소가 영국 내에 소재하여야 함</li> <li>◦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약정의 일부로서 사업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li> <li>◦ 사업목적테스트 통과</li> <li>◦ 인수회사가 인수대가로 피인수회사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인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인수회사의 주식 이외에 다른 인수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됨</li> <li>◦ 취득 후, 취득 직전 피인수회사의 주주가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함</li> </ul>

- 1) 자본자산 이외에 매매용 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음.
- 2) 영국에서 합병을 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수회사와 양도회사가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목적상 동일 기업집단의 멤버가 되는 것임.
- 3) 이 목적상 기업집단은 모회사와 75% 자회사로 구성됨.
- 4) 기업재편이나 합병이 진실한 상업적 이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업재편 또는 합병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영국의 경우 사업목적테스트와 관련하여 사전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사전확인절차가 납세자의 선택사항 이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사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5)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문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완전히 별개의 조항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6) 파산법 제110조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회사법 제425조에 따라 기업재편 및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인수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에 피인수회사의 주주에게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7) 이 목적상 기업집단의 정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상 사용되는 기업집단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나) 직접세

(1)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가) 일반적인 경우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자산을 양도하고, 합병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합병법인에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라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상 시가로 자본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나) 과세특례

- 피합병법인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세특례규정을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문제를 회피할 수 있음.
  - 기업집단 내 이전(intergroup transfer)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제171조)
  -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제139조)
- 그러나 자본자산 외의 매매용 자산(trading asset; 예를 들면 매매용 주식)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매매용 자산을 이전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① 기업집단 내 이전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제171조)

## □ 과세특례내용

- 영국에서 합병을 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수회사와 양도회사가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목적상 동일 기업집단의 멤버가 되는 것임.
- 양수회사와 양도회사가 동일 기업집단의 멤버가 되면 양도회사의 사업과 자산의 이전이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목적상 「기업집단 내 이전(intergroup transfer)」 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양도회사에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액으로 자본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함<sup>200)</sup>.
- 또 다른 중요한 과세특례조항으로는 「기업집단 내 가상의 이전(notional transfer)」 을 들 수 있음.
  - 기업집단의 멤버가 아닌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3자에게 자산이 양도되기 전에 자산을 양도한 법인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법인에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액으로 자산의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다른 멤버가 가진 자본손실이나 기타의 공제와 상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 □ 과세특례요건

- 첫째, 양도회사가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목적상 양수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야 함.
  - 이 목적상 기업집단(group)은 모회사와 75% 자회사(자회사의

---

200) TCGA 제171조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37

75% 자회사 포함)로 구성됨<sup>201)</sup>.

- 타방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회사의 보통주 지분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는 타방 회사의 75% 자회사 (75% subsidiary)가 됨<sup>202)</sup>.
- 둘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50% 이상의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셋째, 하나의 회사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기업집단의 멤버가 될 수 없음<sup>203)</sup>.
  - 하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에는 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권에 기초하여 해당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결정하게 됨.

#### □ 적용대상

- 제171조는 TCGA 1992의 제127조 및 제135조에 해당하는 주식의 교환을 통해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171조는 자본자산에만 적용되는바, 매매용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2002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영업권 및 기타의 무형자산은 자본자산과 유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② 기업재편(reconstruction)과 관련된 합병 과세특례(TCGA 1992 제139조)

#### □ 과세특례내용

- 합병시에 발생하는 자본자산의 자본이득에 적용 가능한 또 다른

---

201) TCGA 제170조

202) ICTA 1988 제838조

203) TCGA 제170조

과세특례규정으로는 TCGA 제139조가 있음.

- 제1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CGA 1992의 제171조과 마찬가지로 양도회사에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액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함.

#### □ 과세특례요건

- 제139조는 영국 국내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영국 국내법인에 이전하고 채무의 인수 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기업재편(reconstruction)에도 적용됨.
- 제139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목적테스트(bona fide commercial purpose test)<sup>204</sup>를 통과해야 함.

#### □ 기업재편(reconstruction)의 개념(TCGA 1992 Sched. 5AA)

- 기업재편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분할 또는 기타의 기업재편을 말함.
  - 피인수회사(original company)의 보통주 주주에게 인수회사(successor company)의 보통주를 발행해야 함.
  - 기업재편과 관련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인수회사의 주주가 다른 보통주 주주와 동일하게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
- 이와 더불어 기업재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피인수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기업재편 이후에 인수회사가 수행해야 함.

204)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는 “조세회피방지규정” 참조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39

- 회사법 1985(Companies Act 1985)의 제425조, 북아일랜드 회사법 1966(Companies (Northern Ireland) Order 1966)의 제418조 또는 이에 대응하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compromise) 또는 정리계획안(arrangement)에 해당할 것

#### ※ 적용사례

##### ○ 두 번째 요건의 적용사례

- 회사 A가 한 가지 종류의 보통주를 가지고 있고, Alice와 Ben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각각의 주식은 회사 A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음.
- 회사의 사업 중 일부가 분할되어 신설회사 B가 회사 A의 보통주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함.
- 그러나 회사 B가 발행한 주식은 X와 Y,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X주식은 이익의 25%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Y주식은 이익의 75%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Ben은 X주식을 받았고, Alice는 Y주식을 받았다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됨.

##### ○ 네 번째 요건의 적용사례

- Old PLC는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법 1985의 제425조에 따른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승인을 얻음(네 번째 요건을 충족함).
- Old PLC의 기존 주식을 취소하고, Newholdco PLC의 주식을 발행함.
- Newholdco PLC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Old PLC의 보통주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함(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 충족).
- 네 번째 요건은 사업의 이전이 없어 세 번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업재편을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요건임.

(다) 세무상 감가상각비(tax depreciation allowances)의 승계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수회사가 자본공제 목적상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본공제가 이루어짐.

□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승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고, 관련 회사가 공통의 소유관계(common ownership)에 있어야 함.

- 아래의 두 시점에 모두 동일인이 사업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의 소유관계가 존재한다고 봄.

· 사업의 이전일로부터 직전 1년 내의 한 시점 그리고

· 사업의 이전일로부터 직후 2년 내의 한 시점

○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이어야 함.

(라) 세무상 결손금의 승계

□ 피인수회사가 사업결손금(trading losses)<sup>205)</sup>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함<sup>206)</sup>.

○ 그러나 피인수회사의 채무가 사업과 함께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제약이 있음<sup>207)</sup>.

- 인수회사에 이전되지 않은 부채총액이 인수회사에 이전되지 않은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승계대상 사업결손금에서 차감함.

△ 이는 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피인수회사에 남겨둔 자회사에 세무상 손실과 함께 사업을 이전한 후, 자회사를

205) 영국의 경우 회사의 결손금을 사업결손금과 자본손실, 투자회사의 초과 관리비용, 업무무관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별로 결손금 공제에 제한을 두고 있음.

206) ICTA 1988의 제343조

207) ICTA 1988의 제343조 (4)~(12)

양도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합병에 따른 사업결손금의 승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고,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공통의 소유관계(common ownership)에 있어야 함.
  -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이어야 함.
  -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즉, 인수회사가 합병 이후에도 피인수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야 함.
  
- 피합병법인의 사업결손금은 피인수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이 계속되는 한 사업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에는 제한이 없음<sup>208)</sup>.
  - 다만, 3년 내에 소유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결손금의 승계에 제한이 있음.
    - 3년 내에 회사의 소유권이 변경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행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된 날에 사업결손금이 완전히 소멸됨<sup>209)</sup>.

(2)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가) 일반적인 경우

-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과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음.
  - 합병거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

---

208) ICTA 1988의 제393조

209) ICTA 1988의 제768조

나 회사채의 처분·이전·교환은 세무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본이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상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라면 자본이득 과세 목적상 해당 주식의 시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함.
  - 단,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영국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매매용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제외)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문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완전히 별개의 조항임.

-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나) 과세특례

① 자본이득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제126조 내지 제138조)

□ 과세특례 내용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재편 및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시점까지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sup>210)</sup>.
  - 즉, 기존 주식의 양도 또는 신규 주식(또는 회사채)의 취득이 있

210) TCGA 1992 제127조~제130조

는 것으로 보지 않음.

- 이 경우에는 신규 주식이나 회사채가 기존 주식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되었다고 간주함.
  - 한편 피인수회사의 주주가 주식이나 회사채 이외에 기타의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기존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가 이루어짐.
- 자본이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재편 및 합병(company reconstructions and amalgamations)의 유형
- 회사A가 회사B의 주식(shares)이나 회사채(debentures)와의 교환의 대가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sup>211)</sup>
    - A회사가 B회사의 보통주를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교환의 결과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 A회사가 B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개매수(general offer)의 결과, B회사 주식과의 교환의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B회사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 간에 기업재편이나 합병을 위한 약정이 존재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에게 기존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sup>212)</sup>
    - B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가 취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B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과세 목적상 B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가 취소되고, 새로운 주식이나 회사채로 대체된 것으로 봄.

---

211) TCGA 1992 제135조

212) TCGA 1992 제136조

### □ 적용요건

- 상기의 과세특례는 중요한 사업목적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됨<sup>213)</sup>.
  - 단,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가 피인수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5%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목적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음.
-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을 적격회사채(qualifying corporate bonds)<sup>214)</sup>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적격회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바, 과세대상 유가증권을 적격회사채와 교환한 후 적격회사채를 양도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②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특례(ICTA 1988 제209(1)조)

- 회사의 청산(liquidation 또는 winding-up) 과정에서 주주에게 이루어지는 재산의 분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sup>215)</sup>(ICTA 1988의 제209(1)조).
  - 따라서 파산법 제110조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13)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는 “조세회피방지규정” 참조

214) 적격회사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함

- ① 1984년 3월 14일 이후에 발행되는 채권
- ② 1984년 3월 14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1984년 3월 14일 이후에 취득해야 함
  -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래의 결과 취득한 것이어야 함

215) ICTA 1988의 제209(1)조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45

- 그러나 회사법 제425조에 따라 기업재편 및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인수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에 피인수회사의 주주에게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3) 조세회피방지규정

##### (가) 사업목적테스트(business purpose test)

#### □ 사업목적테스트의 개념

- 기업재편(reconstruction) 또는 합병(amalgamation)이 진실한 상업적 이유(bona fide commercial reasons)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인세·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의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scheme)이나 약정(arrangement)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업재편 또는 합병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사업목적테스트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무감독국(tax commission)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 세무감독국의 판단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 □ 영국 국세청은 사업목적테스트와 관련하여 사전확인절차를 운영 중에 있음.

- 사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내리거나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국세청이 추가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국세청이 납세자의 사전확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세무

- 감독국(special tax commission)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세청이 사업목적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거나 30일 내에 답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세무감독국(special tax commission)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사전확인절차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사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나) 기업집단에서 탈퇴하는 회사(TCGA 1992 제179조)

- TCGA 제171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이전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사업목적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지만, 기업집단 내 이전을 통해 자산을 양수한 기업이 기업집단을 탈퇴하는 때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존재함<sup>216)</sup>.
- 동 규정은 탈퇴시점을 기준으로 6년 내에 이루어진 자산의 취득에만 적용됨.
-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탈퇴회사가 취득당시 시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즉시 재취득한 것으로 봄.
  - 탈퇴회사가 자산을 양수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업집단 내 이전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사라지는 결과 발생
- 그러나 조세의 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진실한 상업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합병<sup>217)</sup>거래의 일부로서 회사가 기업집단의 멤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sup>218)</sup>.

(다) 증권의 거래(ICTA 제703조)

- ICTA 1988 제703조는 합병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216) TCGA 1992 제179조

217) 이 목적상 합병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218) TCGA 1992 제181조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47

조세회피방지규정임.

- 동 규정은 증권거래의 결과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혜택을 얻은 경우로서 ICTA 1988의 제70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섯 가지 상황에 적용됨.
-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세금의 부과, 세금 환급권의 박탈, 과세소득 재계산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 혜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 다) 간접세

##### (1) 일반적인 경우

#### □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일반적인 경우에는 15%(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17.5%)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나,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5%의 경감세율 또는 영세율이 적용됨.

#### □ 인지세(stamp duty), 증권거래인지세(stamp duty reserve tax), 토지거래인지세(stamp duty land tax)의 과세문제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주식 또는 영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이전에 대하여 인지세·증권거래인지세 또는 토지거래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주식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0.5%의 세율로, 토지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의한 세율로 인지세 또는 토지거래인지세가 과세됨.

&lt;표 III-4&gt; 토지에 대한 인지세율

거래가액(£)	세율(%)
150,000 이하	-
150,001~250,000	1
250,001~500,000	3
500,000 초과	4

주: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 125,000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됨.

## (2) 과세특례

(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목적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봄.
    - 당해 자산을 양수자가 동일한 종류의 사업(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이든, 기존 사업의 일부이든 관계없음)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양도자가 과세자라면 양수자가 이미 과세자이거나 사업 이전의 결과로 직후에 과세자가 되어야 함.
  - 별도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나) 인지세와 관련된 과세특례

- 합병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한 인지세 과세특례로는 다음과 같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49

은 세 가지가 있음.

- 기업집단 내 이전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재정법 1930 제42조 및 재정법 2003의 Part I, Sched. 7)
- 기업재편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재정법 1986의 제75조, 재정법 2003의 Part 2)
- 피인수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재정법 1986 제77조)

① 기업집단 내 이전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재정법 1930 제42조 및 재정법 2003의 Part I, Sched. 7)

□ 기업집단 내 두 개의 기업 간에 자산의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및 토지거래인지세가 면제됨<sup>219)</sup>.

○ 이 목적상 기업집단(group)의 정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상 사용되는 기업집단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 기업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 중 하나가 직간접적으로 타방 회사의 보통주 지분을 75% 이상 보유하거나 제3의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5% 이상을 보유해야 함.

- 또한 모회사가 75% 이상의 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권을 보유해야 함.

② 기업재편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재정법 1986의 제75조, 재정법 2003의 Part 2)

□ 인수회사가 기업재편 계획에 따라 피인수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

219) 그러나 재정법 1967의 제27조 또는 재정법 2003의 Paras. 3과 4, Sched.7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 내 이전에 관한 인지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및 토지거래인지세가 면제됨.
- 인지세 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인수회사의 등록사무소가 영국 내에 소재해야 함.
      - 피인수회사의 소재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인수회사가 사업 인수의 대가로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인수회사의 주식(상환주식 제외)을 발행하여야 하며, 피인수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인수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됨.
    - 진실한 상업적 목적에서 사업의 인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세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여서는 안 됨.
      - 사업목적 테스트와 관련된 사전확인절차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사업인수 후에 당사회사의 각각의 주주가 타방 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함.

③ 피인수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재정법 1986 제77조)

- 인수회사가 주식교환을 통해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 인수회사의 등록사무소가 영국 내에 소재하여야 함.
  -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약정의 일부로서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진실한 상업적 이유에서 주식의 인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안 됨.
  - 인수회사가 인수대가로 피인수회사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인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인수회사의 주식 이외에

다른 인수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됨.

- 취득 후, 취득 직전 피인수회사의 주주가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함.

## 2) 분할

### 가) 개요

-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회사법에는 분할(division)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사실상 분할(division)이라는 용어는 영국 회사법상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영국에서는 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영국의 회사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분할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배하는 것임.
  -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분할의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음.
    - 그러나 자회사 주식 또는 사업을 하부 지주회사(sub-holding company)로 이전한 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하부 지주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경우 사실상 분할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 그러나 이와 같은 분할방식은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분리(demerger)와 관련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함.
    - 또한 분할대상 자회사 주식이나 사업의 가치가 분할회사의 배당 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이 존재함.
- 합병뿐 아니라 분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파산법 1986의 제 110조 및 회사법 1985의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이용할 수 있음.
  - 파산법 1986의 제110조에 따른 분할은 기업분리(demerger)와 관

런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특히 중요성을 가짐.  
 -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산법 1986의 제110조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야지만 의제배  
 당과 관련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특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분할의 경우 합병과 동일한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 특히, 기존회사가 청산되지 않거나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III-5> 분할과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구분	관련 규정	과세특례 내용	과세특례 요건
직접세	분할법인 기업재편과 관 련된 과세특례 (TCGA 1992 §139) <sup>1)</sup>	분할법인에 자본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가 액으로 자본자산 의 이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인수회사의 보통주 주주 에게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발행하여야 하며, 채무의 인수 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야 함</li> <li>° 사업목적테스트 통과<sup>2)</sup></li> <li>° 둘 중 하나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인수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기업재편 이후에 인수회사가 수행해야 함. 또는</li> <li>- 회사법 1985 §425, 북아 일랜드 회사법 1966 §418 또는 이에 대응하 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 또는 정리계획안에 해당할 것</li> </ul> </li> </ul>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53

<표 III-5>의 계속

구분	관련 규정	과세특례 내용	과세특례 요건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 (TCGA 1992 §136)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이득 과세: 신규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시점까지 자본이득 과세이연</li> <li>◦ 의제배당 과세: 분할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테스트 통과<sup>2)</sup></li> <li>◦ B회사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 간에 기업재편이나 합병을 위한 약정이 존재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에게 기존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ul>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ICTA 1988 §213~§218) <sup>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이득 과세: &lt;유형 1&gt;에 해당하는 기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분배는 양도로 보지 않음</li> <li>◦ 의제배당 과세: 기업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분배는 배당으로 보지 않음</li> </ul>	<p>[공통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회사가 분할 당시 영국의 거주자여야 함</li> <li>◦ 분할회사가 분할 당시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멤버여야 함</li> <li>◦ 분할회사가 분할 이후에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여야 함</li> <li>◦ 사업목적 테스트 통과<sup>6)</sup></li> <li>◦ 분할회사가 다른 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 부여</li> </ul> <p>[개별요건]</p> <p>- 유형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 자회사가 분할 당시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여야 함</li> <li>· 분할회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자회사 보통주와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이전해야 함</li> </ul>

&lt;표 III-5&gt;의 계속

구분	관련 규정	과세특례 내용	과세특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회사가 이전된 사업에 대하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소수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li> <li>· 분할 이후에 양수회사의 유일한 또는 주된 활동이 이전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어야 함</li> <li>· 양수회사가 사업이전의 대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양수회사 주식이 양수회사의 보통주 지분과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90% 이상을 구성해야 함</li> </ul> </li> <li>- 유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 자회사가 분할 당시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여야 함</li> <li>· 분할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보통주와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90% 이상을 양수회사에 이전해야 함</li> <li>· 분할 이후에 회사의 유일한 또는 주된 활동이 이전받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어야 함</li> </ul> </li> </ul>

<표 III-5>의 계속

구분	관련 규정	과세특례 내용	과세특례 요건
			· 양수회사가 주식이전의 대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양수회사 주식이 양수회사의 보통주 지분과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90% 이상을 구성해야 함
간접세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가 주어짐		

- 1) 자본자산 이외에 매매용 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음.
- 2) 기업재편이 진실한 상업적 이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영국의 경우 사업목적테스트와 관련하여 사전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3)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법인의 청산이 필요한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가 도입됨.
- 4) 영국의 기업분리는 일반적인 분할과는 그 개념이 다소 다름. 기업분리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음.
  - 유형 1: 분할회사가 75% 자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 유형 2: 분할회사가 양수법인에 사업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수법인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양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유형 3: 분할회사가 양수법인에 75% 자회사 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수법인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양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 5)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는 상업회사 및 상업그룹의 기업분리에만 적용되며, <유형 2>와 <유형 3>에 해당하는 기업분리에는 자본이득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음. 이와 같은 실무상 적용의 한계 때문에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와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6) 분할의 주된 목적이 상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분할이 조세회피, 과세대상지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안 됨. 영국의 경우 특례기업분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에서 분할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요한 과세 특례로는 ‘기업재편(reconstruction)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의 제136조 및 제139조)’와 ‘기업분리(demerger)와 관련된 과세특례(ICTA 1988의 제213조 내지 제218조)’,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기업분리(demerger)와 관련된 과세특례는 재정법 1980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ICTA 1988의 제213조 내지 제218조에 규정되어 있음.
    -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분할이 이루어짐.
  -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가 갖고 있는 실무상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두 가지 과세특례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나) 직접세

### (1) 분할당사법인의 과세문제

#### (가) 일반적인 과세원칙

- 특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병과 동일한 과세문제가 발생함.

#### (나) 과세특례

- 기업재편과 관련된 자본이득 과세특례(TCGA 1992의 제139조)
  - 분할이 기업재편(reconstruction)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됨.
    - 이 경우에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액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합병에서 설명한 과세특례요건, 사업목적테스트와 사전확인절차

등이 분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 세무상 결손금의 승계

- 분할에 있어 세무상 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특례는 존재하지 않음.
  - 다만, ICTA 1988의 제343조<sup>220)</sup>에 따라 양도회사의 사업결손금을 양수회사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함.
  - 하지만 분할의 경우에는 75% 지분의 연속성 요건<sup>221)</sup>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세무상 결손금의 승계가 불가능함.

(2) 분할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가) 일반적인 경우

- 특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병과 동일한 과세문제가 발생함.
  - 자본이득과 관련된 과세문제
  -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

(나) 과세특례

①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TCGA 1992 제136조)

- TCGA 1992의 제13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주의 양도 또는 신주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느바, 주주가 분할로 취득한 신주

---

220) ICTA 1988의 제343조에 따르면 양도회사가 사업결손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이전이 가능함.

221) 아래의 두 시점에 모두 동일인이 7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5%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사업의 이전일로부터 직전 1년 내의 한 시점 그리고  
- 사업의 이전일로부터 직후 2년 내의 한 시점

를 양도하는 시점까지 자본이득 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음.

- TCGA 1992의 제136조에 의한 과세특례는 사업목적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TCGA 1992 제136조의 적용요건

- B회사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 간에 기업재편이나 합병을 위한 약정이 존재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에게 기존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B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가 취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실무상 갖고 있는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법인의 청산이 필요함.
  - 이는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분할법인의 세무상 공제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분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이나 자회사 지분을 하나의 회사로 재편하거나 분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TCGA 1992의 제179조<sup>222)</sup>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두 가지 불이익 때문에 재정법 1980(現在, ICTA 1988)의 제213조 내지 제218조)에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규정이 도입됨.

---

222) 기업집단 간의 이전으로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나중에 기업집단을 탈퇴하는 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 제179조는 기업집단의 멤버에서 탈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년 내에 이루어진 취득에만 적용됨.

② 기업분리(demerger)와 관련된 과세특례(ICTA 1988 제213조~ 제218조)

□ 과세특례대상 기업분리(demerger)

- 유형 1: 분할회사(distributing company)가 75% 자회사(75% subsidiaries)<sup>223)</sup>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sup>224)</sup>
- 유형 2: 분할회사가 양수법인(transferee company)에게 사업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수법인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양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sup>225)</sup>
- 유형 3: 분할회사가 75% 자회사 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수법인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양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sup>226)</sup>

□ 과세특례요건

-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과세특례내용

- 자본이득과 관련된 과세특례
  - <유형 1>에 해당하는 기업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분배는 양도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유형 2>와 <유형 3>의 기업분리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이득과 관련된 별도의 과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 봐야 함.

---

223) 이 목적상 자회사의 적의는 ICTA 1988의 제8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회사의 정의를 준용하되, 분할회사의 간접적 지분은 분할회사가 매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24) Sec. 213(3)(a) ICTA 1988

225) Sec. 213(3)(b)(i) ICTA 1988

226) Sec. 213(3)(b)(ii) ICTA 1988

## &lt;표 III-6&gt; 기업분리의 과세특례요건

구분	과세특례요건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의 관련 회사가 분할 당시 영국의 거주자여야 함.</li> <li>• 분할회사가 분할 당시 상업회사<sup>1)</sup> 또는 상업그룹의 멤버여야 함.</li> <li>• 분할회사가 분할 이후에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sup>2)</sup>여야 함.</li> <li>• 분할의 주된 목적이 상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함.</li> <li>• 분할이 다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회피</li> <li>- 과세대상지급(chargeable payment)<sup>3)</sup></li> <li>- 분할회사의 주주 이외의 자가 분할회사, 양수회사, 분할대상 75% 자회사 또는 이들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li> <li>- 분할 이후 사업의 중단이나 매각</li> </ul> </li> <li>• 분할회사가 다른 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회사가 분할 당시 속한 기업집단이 상업그룹이어야 함.</li> <li>- 분할 이후에 &lt;유형 1&gt; 또는 &lt;유형 3&gt;에 속하는 기업분리가 뒤따라야 하며, 그 결과 분할 당시 분할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의 주주가 다음 중 하나의 주주가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회사가 사업을 이전한 양수회사 또는</li> <li>· 분할된 자회사 또는</li> <li>· 이상의 회사를 75% 자회사로 둔 회사(지주회사 제외)</li> </ul> </li> </ul> </li> </ul>
개별요건	<p>유형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 자회사가 분할 당시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여야 함.</li> <li>• 주주가 분배받는 자회사 주식이 상환 불가능한 주식이어야 함.</li> <li>• 분할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보통주와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약 90% 이상)을 이전해야 함.</li> </ul>

<표 III-6>의 계속

구분	과세특례요건
유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회사가 이전된 사업에 대하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해야 함.</li> <li>• 분할 이후에 양수회사의 유일한 또는 주된 활동이 이전받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전받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어야 함.</li> <li>• 양수회사가 사업이전의 대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양수회사 주식(상환불가)이 양수회사의 보통주 지분과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약 90% 이상)을 구성해야 함.</li> </ul>
유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 자회사가 분할 당시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 회사여야 함.</li> <li>• 분할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보통주와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약 90% 이상)을 이 전해야 함.</li> <li>• 분할 이후에 양수회사의 유일한 또는 주된 활동이 이전받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전받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어야 함.</li> <li>• 양수회사가 주식이전의 대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양수회사 주식(상환불가)이 양수회사의 보통주 지분과 이와 관련된 의결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약 90% 이상)을 구성해야 함.</li> </ul>

- 주: 1) 사업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상업으로 이루어진 회사  
 2) 각 회사의 활동을 전부 합쳤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상업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에서 75% 자회사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것을 사업의 전부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3) 영국의 경우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가 조세회피약정의 일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지급과 관련된 조세회피방지조항이 존재함. 과세대상지급의 사례로는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회사에 자회사 지분을 분할하고, 5년 내에 자회사 지분을 재매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거래는 주주에게 현금을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바, 주주에게 자본이득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례기업분리로 인하여 자회사가 기업집단에서 탈퇴된 경우에는 TCGA 1992의 제179조<sup>227)</sup>가 적용되지 않음.

## ○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특례

- 기업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분배는 배당으로 보지 않으나,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에게 의제배당과 관련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가 실무상 갖고 있는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업회사(trading company) 및 상업그룹(trading group)의 기업분리에만 적용되며, 중요한 비상업활동(non-trading activities)의 기업분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분할회사가 양수법인(transferee company)에 사업 또는 75% 자회사 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수법인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양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즉, <유형 2>와 <유형 3>에 해당하는 기업분리)에는 자본이득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회사가 분할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사전확인절차

- 분할회사는 특례기업분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분할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30일 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함.
  - 그러나 결과에 대한 통지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할회사는 30일 내에 정보

---

227) 기업집단 간의 이전으로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나중에 기업집단을 탈퇴하는 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63

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확인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

- 분할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수령한 경우, 국세청은 추가적인 정보의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거나 좀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세청이 특례기업분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신한 경우에는 사전확인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모든 중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담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짐.
- 국세청이 특례기업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거나 30일 내에 답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세무감독국(special tax commission)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3) 조세회피방지규정

##### □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

-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병에서 설명한 사업목적테스트를 충족해야 함.

##### □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

- 기업분리와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할의 주된 목적이 상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분할이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안 됨.

#### 다) 간접세

##### (1) 일반적인 경우

- 특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병과 동일한 과세문제가 발생함.

(2) 과세특례

(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가 분할에도 존재함.
  - 즉,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나) 인지세와 관련된 과세특례

-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가 분할에도 존재함.
  - 즉, 기업집단 내 이전, 기업재편 및 피인수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현물출자

가) 직접세

(1) 일반적인 경우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 사업이나 기타의 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양수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목적상 양도 회사가 신주의 가액과 동등한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 회사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즉, 양도회사에 자본이득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2) 과세특례

- 영국 국내법인 간에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목적상 자산의 이전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65

없음.

○ 그러나 두 회사가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목적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다면 TCGA 1992의 제171조에 따라 기업집단 내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한편 자산의 이전이 외국법인과 관련된 경우로서 회사 중 하나가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EC Directive에 따라 특별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나) 간접세

##### (1) 일반적인 경우

□ 특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병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 (2) 과세특례

□ 합병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과세특례가 자산의 출자에도 그대로 적용됨.

<표 III-7> 현물출자와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구분	과세문제	과세특례
직접세	◦ 양도법인에 자본이득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 특별한 과세특례 규정 없음 ◦ 다만, 두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다면 기업집단 내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과세특례 적용 가능
간접세	◦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과세문제	◦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가 주어짐

-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기업집단 내 이전, 기업재편 및 피인수회사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 4) 주식인수 또는 주식교환

##### 가) 직접세

##### (1)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가)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 주식의 양도자가 주식을 자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법인에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함.
  - 그러나 “주요주주면제규정(substantial shareholding exemption)”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2002년 4월 1일 이후, 영국의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은 주요주주면제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타법인(국내 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관계없음)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주요주주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목적상 공제가 불가능함.
- 주요주주면제규정의 적용요건
  - 주요주주면제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요건을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67

충족해야 하는바, 주요 요건만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투자회사가 양도일로부터 직전 2년 내에 개시하는 연속적인 12개월 동안 피투자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해야 함. 이 목적상 상당한 지분이란 보통주 지분의 10% 이상을 의미하며, 10% 이상의 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권을 수익적으로 소유해야 함.
  - 투자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한 비상업활동을 가지지 않은 상업회사(trading company)여야 함. 투자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부라면 전체 기업집단 활동의 주된 부분이 중요한 비상업활동을 가지지 않은 상업 활동이어야 함.
  - 피투자회사의 활동(피투자회사가 기업집단 또는 하위기업집단의 모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집단 또는 하위기업집단의 활동)의 주된 부분이 중요한 비상업활동을 가지지 않은 상업 활동이어야 함.
- 이 목적상 기업집단의 정의는 TCGA 1992의 제170조와 유사함. (단, 75% 지분에 대한 요건이 50% 이상으로 바뀜)
  - i) 조세회피방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ii) 주식을 자본자산이 아닌 매매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매업자 또는 기타의 회사 등에 대해서는 주요주주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나) 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수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교부받은 경우

- 양도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바, TCGA 1992의 제126조 내지 제138조에 따라 신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자본이득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재편에 해당해야 함.
  - 회사A가 회사B의 주식(shares)이나 회사채(debentures)와의 교환의 대가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sup>228)</sup>
    - A회사가 B회사의 보통주를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교환의 결과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 A회사가 B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개매수(general offer)의 결과, B회사 주식과의 교환의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B회사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 간에 기업재편이나 합병을 위한 약정이 존재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에게 기존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sup>229)</sup>
- 중요한 사업목적 테스트를 충족하여야 함<sup>230)</sup>.
  - 단, 주주 또는 회사채보유자가 피인수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5%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목적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음.

## (2)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 개인이 주식의 양도에서 얻은 자본이득은 18%의 단일세율로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단, 사업공제(enterprise relief)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주식이나 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최초 £1백만(생애주기

228) TCGA 1992 제135조

229) TCGA 1992 제136조

230)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는 “조세회피방지규정” 참조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69

한도)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됨.

- 회사주식이나 증권의 양도에 대해 사업공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조건 A

(1) 피투자회사가 양도자의 인적회사(individual's personal company)여야 함. 이 때 인적회사란 개인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말함.

(2) 피투자회사가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지주회사여야 함.

(3) 양도자가 당해 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임직원이어야 함.

- 조건 B: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내에 피투자회사가 상업회사 또는 상업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직전 1년 동안 조건 A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나) 간접세

- 주식에 대한 인지세와 관련하여서는 합병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표 III-8> 주식교환 또는 주식인수와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구분	과세문제	과세특례
직접세	주식 양도자의 자본이득 과세문제	(1)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주요주주 면제규정 - 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수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교부받은 경우: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 (2)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사업공제 - 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수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교부받은 경우: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
간접세	주식과 관련된 인지세 과세문제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가 주어짐

5) 사업인수

가) 직접세

-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로는 세무상 감가상각공제에 대한 환수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음.
- 사업의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특례 규정은 없음.

나) 간접세

-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사업의 인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앞서 설명한 합병과 동일함.
- 인지세 과세문제
  - 사업의 인수와 관련된 인지세 및 토지거래인지세 과세문제는 앞서 설명한 합병과 동일함.

<표 III-9> 사업인수와 관련된 영국의 과세특례

구분	과세문제	과세특례
직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자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문제</li> <li>◦ 감가상각공제 환수</li> </ul>	사업의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특례 규정 없음
간접세	사업의 이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토지거래인지세 과세문제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가 주어짐

나. 기업재무구조개선

1) 채무자의 과세문제

-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채무의 면제 또는 포기는 채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71

무액에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각후원가법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채무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채무면제이익과 관련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법에 의한 파산약정(statutory insolvency arrangement)’의 일부를 구성하는 채무면제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채무자가 공식적인 파산절차(formal insolvency process) 중에 있는 경우
  - 채무를 면제하는 대신 채무자 회사의 보통주 또는 보통주에 대한 권리를 대가로 받은 경우

#### 공식적인 파산절차(formal insolvency process)

- 공식적인 파산절차에는 관리명령(administration), 청산, 가청산 및 수탁관리제도(administrative receiver), 이와 유사한 외국제도가 모두 포함됨.

#### 2) 채무자의 과세문제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의 면제 또는 포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 공제가 불가능함.

### 3. 일본

- 일본의 구조조정세계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계의 현황에서 검토한 조직변경, 사업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금융기관 구조조정,

구조조정전문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함.

### 가. 조직변경

- 일본의 조직재편은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주식교환, 주식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0년의 세제개정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현물분배, 주식교환, 주식이전이 대상이 됨.
  - 2010년 4월의 세제개정에서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인 세제가 도입됨.
  -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인세제는 그룹 내 기업 간 자산 양도, 현물분배 등에 대한 양도익과세의 이연을 가능하게 하는 세제임.
    - 이전까지 비적격합병, 비적격주식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이 불가능했던 자산에 대해서도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인세제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하게 됨.
  -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인세제의 도입에 따르면 회사설립 후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인 적격사후설립은 의미가 없어져서 폐지됨.
- 그러나, 2010년의 개정규정은 대부분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함.
- 일반사항
  - 일본은 1997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고 1999년 5월 상법개정으로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활히 함.
  - 2001년 세법개정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을 포함하여 조직재편성 세제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sup>231)</sup>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73

-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자산에 대한 지배가 계속되는 경우, 주주에 대해서는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과세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임.
- 법형식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과세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할형 흡수분할과 합병, 분사형 신설분할과 현물출자를 법형식이 다르지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예로 제시
- 2006년 세법개정으로 기존의 조직재편세제에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포함
- 2010년 세법개정으로 기존의 조직재편세제에서 사후설립이 폐지되고, 현물분배가 포함되었으며, 그룹법인세제 중 자산양도 등에 대한 규정이 관련되었음.

#### □ 과세의 기본구조

<표 III-10> 적격조직재편의 과세구조(일본)

		원칙	특례	
법인	이연자산의 양도손익	계상(과세)	계상(과세)이연	적격조직재편성
주주	구주의 양도손익	계상(과세)	계상(과세)이연	특례
	의제배당	발생(과세)	발생하지 않음 (과세없음)	적격조직재편성

#### □ 각종 충당금 등의 승계

- 적격조직재편성인 경우에는 과세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전했던 자산은 계속 이전되기 전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각종 충당금 등은 원칙적으로 이전 승계됨.

231) <http://www.cao.go.jp/zeicho/siryou/pdf/ho012a.pdf#search='組織再編成, 税制'>

- 적격조직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법인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므로 각종 충당금 등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함.

□ 조세회피방지규정

- 조직재편성의 형태나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이 필요
  - 이월결손금·포함손실의 사용제한
  - 포괄적 조세회피방지조치
- 이월결손금·포함손실의 사용제한
  - 이월결손금이나 포함손실이 많은 법인을 흑자법인과 합병시켜서 법인세액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두고 있음.
- 포괄적 조세회피방지조치

1) 비과세 조직재편 유형 및 요건<sup>232)</sup>

<표 III-11> 조직재편성 유형별 적격요건<sup>1)23)</sup>

		기업그룹 내 합병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합병
합병	전제	• 피합병주주에게 합병법인주식·합병모회사주식 이외에는 교부하지 않음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지분요건(동일인에 의한 지배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초과지분요건(동일인에 의한 지배 포함)</li> <li>• 종업원의 80% 이상 중사</li> <li>• 중요사업의 계속영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요건 없음.</li> <li>• 종업원의 80% 이상 중사</li> <li>• 중요사업의 계속영위</li> <li>• 사업의 상호관련성</li> <li>• 규모 혹은 임원요건</li> <li>• 합병 전 주식보유예상요건(80%)</li> </ul>

232) 적격사후설립은 2010년 3월말 세계개정에서 조직재편세계에서 제외되었으나, 적용시기가 2010년 10월 이후이므로 본 보고서에는 포함

Ⅲ.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75

<표 III-11>의 계속

		기업그룹 내 분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분할
분할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형분할인 경우 분할대가로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분할승계법인의 주식이나 분할승계모법인의 주식 이외에는 교부되지 않고, 분할승계법인이나 분할승계모법인의 주식 중 하나의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가지고 있는 분할법인 주식수비에 상응하여 교부될 것</li> <li>분사형분할인 경우 분할대가로 분할법인에 분할승계법인의 주식이나 분할승계모법인의 주식 이외에는 교부되지 않음.</li> </ul>	
	조건	합병과 동일조건	합병과 동일조건(분할 전 주식보유 예상요건(100%) + • 중요 자산·부채의 이전
		기업그룹 내 현물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현물출자
현물출자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물출자법인에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 이외에는 교부하지 않음</li> </ul>	
	조건	합병과 동일조건	합병과 동일조건 + • 중요 자산·부채의 이전 • 현물출자 전 주식보유 예상요건(100%)
사후설립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보유사전요건 : 사후설립법인이 설립에서 자산이전까지 피사후설립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계속 보유</li> <li>주식보유사후요건 : 사후설립 후 피사후설립법인의 주식 100%를 계속 보유</li> <li>자산이전이 피사후설립법인 설립시에 예정되고 피사후설립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사후설립이 행해질 것</li> <li>자산이전에 대한 양도대가가 피사후설립법인의 설립을 위한 금액과 거의 동일할 것</li> </ul>	
		기업그룹 내의 주식교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교환
주식교환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완전모회사나 주식교환지배모회사의 주식 이외에는 교부하지 않음</li> </ul>	
	조건	합병과 동일 + • 주식보유 사전요건 • 주식보유 사후요건	합병과 동일 • 주식교환 전 주식보유 예상요건(80%) • 주식교환 후 주식의 계속 보유가 예상될 것

주식 이전		기업그룹 내의 주식이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이전
	전제	•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완전모회사의 주식 이 외에는 교부하지 않음		
	조건	합병과 동일	합병과 동일	합병과 동일 • 주식이전 전 주식보유 예상요건(80%) • 주식이전 후 주식의 계속 보유가 예상될 것

- 주: 1) 비적격조직재편에 대한 정의는 없고 조직재편 중 적격조직재편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비적격조직재편으로 함.  
 2) 적격조직재편은 사후설립을 제외하고는 기업그룹 내의 조직재편(완전지배, 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재편으로 구분되고 완전지배와 주요지배는 지분요건이 있지만,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재편은 지분요건이 없음. 단, 지분요건 이외의 두 실체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요건이 보다 많음.  
 3) 합병 이외의 조직재편은 합병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서술하였음.

가) 합병의 적격요건

- 회사의 합병은 법률상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계약에 근거하여 상법, 유한회사법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실행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함.
- 합병의 형태는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가 해산하고 다른 하나가 존속하는 경우인 ‘흡수합병’과 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음.
- 일본의 경우 흡수합병이 약 95%, 신설합병이 약 5%로 흡수합병이 압도적으로 많음<sup>233)</sup>.

233) 中野 百々造, 合併・分割の稅務—その法務と稅務、株式會社 稅務經理協會、2004. 11. 10, p. 4

□ 적격의 공통요건

- 기업그룹 내의 합병(완전지배, 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합병 중 하나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주식이나 합병모회사주식<sup>234)</sup> 중 어느 하나의 주식 또는 출자로만 대가를 지불

□ 개별요건

- 기업그룹 내의 합병(완전지배)
  - 지분요건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른 피합병법인) 간에 발행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병 후에 동일인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기업그룹 내의 합병(주요지배)<sup>235)</sup>
  - 지분요건 :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른 피합병법인) 간에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출자를 포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이거나 동일인이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 종업원승계요건 :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합병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

234) 합병모회사주식은 합병 직전에 합병에 관계되는 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이외의 법인 간에 합병법인 이외의 법인에 의한 직접완전지배관계(두 법인 간에 한쪽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를 일컫음)가 있고 합병 후에도 합병법인과 합병모법인 간에 합병모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의 계속이 예상되는 경우에 모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235) 法人稅法 施行令 4의2③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합병

- 종업원승계요건 :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합병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사업관련성요건 :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합병 후에 영위하는 사업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요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요건으로 나누어짐<sup>236)</sup>.
- 규모요건 혹은 임원승계요건 :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업(피합병법인의 피합병사업과 합병법인의 합병사업)이 매출금액, 종업원의 수, 자본금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비율이 약 5배를 초과하지 않거나 합병 전의 피합병법인의 특정임원 중 일부나 합병법인의 특정임원 중 일부가 합병 후에 합병법인의 특정임원이 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는 요건
- 주식계속보유요건 :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계속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비율이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나) 분할의 적격요건

- 분할은 회사가 영업(순재산)을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나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적인 행위임.
- 분할의 형태는 승계회사가 기존회사인가 신설회사인가에 따라 ‘흡수분할’과 ‘신설분할’로 나눌 수 있고, 승계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236) 法人稅法 施行規則 3①

대상이 영업(순재산)을 제공하는 분할회사인가 그 분할회사의 주주인가에 따라 ‘분사형분할(물적분할)’과 ‘분할형분할(인적분할)’로 나눌 수 있음<sup>237)</sup>.

- 신주의 일부를 분할회사에 발행하고 다른 일부를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중간형분할’이라고 함.
- 분할형분할은 다시 주주에게 평등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안분형분할’과 ‘비안분형분할’로 나뉨.

□ 적격의 공통요건

- 기업그룹 내의 분할(완전지배,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분할 중 하나
-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승계법인주식이나 승계모회사주식 중 어느 하나의 주식 또는 출자로만 대가를 지불
- 분할형분할인 경우에는 안분형분할이어야 함.

□ 개별요건

- 기업그룹 내의 분할(완전지배)
  - 지분요건 : 분할법인과 승계법인 간에 발행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에 있고, 분할 후에 분할법인과 분할승계법인 간의 완전지배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기업그룹 내의 분할(주요지배)
  - 지분요건 :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분할은 분할법인과 승계법인 사이에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출자를 포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동일인이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를 포함)이면서 분할 후에도 지배관계가 계속되

---

237) 中野 百々造, 合併・分割の稅務—その法務と稅務、株式會社 稅務經理協會、2004.11.10, p. 184

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 종업원승계요건 : 분할 직전 분할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승계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분할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독립사업요건 : 분할에 따라 분할사업에 대한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분할승계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분할<sup>238)</sup>
- 종업원승계요건 : 분할 직전 분할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승계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분할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사업관련성요건 : 분할법인의 분할사업과 승계법인의 승계사업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함
  - 규모요건 혹은 임원승계요건 :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업(분할법인의 분할사업과 분할승계법인의 분할승계사업)이 매출금액, 종업원의 수, 자본금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비율이 약 5배를 초과하지 않거나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승계법인의 특정임원이 될 것이 예상
  - 독립사업요건 : 분할에 따라 분할사업에 대한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분할승계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 주식계속보유요건 : 승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계속 보유(100%)할 것으로 예상

다) 현물출자의 적격요건

-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자산인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

238) 法人稅法 施行令 4의2條⑧

재산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는 것을 말함.

- 분사형 신설분할<sup>239)</sup>과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설립<sup>240)</sup>은 경제적 실태는 동일하지만, 회사법상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감사역의 조사 등 법적 규제가 많음.

□ 적격의 공통요건

- 기업그룹 내의 현물출자(완전지배,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현물출자 중 하나
- 현물출자의 대가로 현물출자법인에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만으로 대가가 지불

□ 개별요건

- 기업그룹 내의 현물출자(완전지배)
  - 지분요건 : 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 사이에 발행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에 있고, 현물출자 후에도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 간의 완전지배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기업그룹 내의 현물출자(주요지배)
  - 지분요건 :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현물출자는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 사이에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출자를 포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동일인이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를 포함)이면서 현물출자 후에도 지배관계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

239) 기존회사에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의 대가를 새로운 회사의 주식으로 기존회사에 주는 형태

240) 기존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현물출자를 하면 현물출자의 대가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형태

- 종업원승계요건 : 현물출자 직전 현물출자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피현물출자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현물출자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피현물출자법인이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독립사업요건 : 현물출자에 따라 현물출자사업에 대한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피현물출자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현물출자<sup>241)</sup>
  - 종업원승계요건 : 현물출자 직전 현물출자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피현물출자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현물출자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피현물출자법인이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독립사업요건 : 현물출자에 따라 현물출자사업에 대한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피현물출자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 규모요건 혹은 임원승계요건 : 현물출자법인의 현물출자사업에 대한 피현물출자법인의 피현물출자사업이 매출액, 종업원의 수, 자본금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비율로 약 5배를 초과하지 않거나 현물출자 전 현물출자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피현물출자법인의 특정임원이 될 것이 예상
  - 독립사업요건 : 현물출자에 따라 현물출자사업에 대한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피현물출자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 주식계속보유요건 : 피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계속 보유(100%)할 것으로 예상

#### 라) 사후설립의 적격요건

- 사후설립은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성립부터 존재하던 재산을 사업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장부가액이 회사 순자산액

241) 法人稅法 施行令 4의2⑫

### Ⅲ.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83

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재산을 대가로 지급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 등의 이전을 하는 것임.

- 세법상으로 사후설립은 회사법 등의 법률상의 사후설립을 전제로 하고 사후설립에 의한 자산 등의 이전은 통상 매매거래로 보지만, 사후설립이 경제적 실질로 보아 현물출자를 대신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적격사후설립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함.

#### □ 개별요건

- 지분요건 : 사후설립법인이 사후설립법인의 설립부터 사후설립에 의한 자산 등의 이전까지 피사후설립법인의 지분 100%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사후설립 후에도 지분 100%를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예상
- 사후설립예정 및 기간요건 : 자산 등의 이전이 피사후설립법인의 설립시에 예정되고, 자산 등의 이전이 피사후설립법인의 설립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함.
- 양도대가 : 자산 등의 이전에 의한 양도대가가 피사후설립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과 거의 동일할 것

#### 마) 주식교환의 적격요건

- 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되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취득시켜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조직법상의 행위
  - 주식교환을 통하여 자회사의 주주는 개별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잃고 모회사의 주주가 됨.
  - 주식교환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므로 자회사의 임원을 선택적으로 해임하거나 자회사의 잉여

금 배당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됨.

□ 적격의 공통요건

- 기업그룹 내의 주식교환(완전지배, 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교환 중 하나
- 주식교환의 대가로 주식교환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완전모회사나 주식교환지배모회사의 주식만을 교부하는 경우

□ 개별요건

- 기업그룹 내의 주식교환(완전지배)
  - 지분요건 : 주식교환 전에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에 있고 주식교환 후에도 주식교환 후에도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동일인에 의한 완전지배를 포함)
- 기업그룹 내의 주식교환(주요지배)
  - 지분요건 : 주식교환 전에 주식교환완전자회사와 주식교환완전모회사 간에 어느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중 50%를 초과하고 100% 미만인 주식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가 있고 주식교환 후에도 주식교환완전자회사와 주식교환완전모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동일인에 의한 주요지배를 포함)
  - 종업원승계요건 :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주식교환 직전의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주식교환 전에 영위하는 주요한 사업을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Ⅲ.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85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교환<sup>242)</sup>
  - 종업원승계요건 :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교환 직전의 종업원 중에서 약 80% 이상에 상당하는 자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자회사사업이 주식교환완전자회사에 승계되어 영업될 것이 예상
  - 사업관련성요건 :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자회사사업이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사업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함.
  - 규모요건 혹은 임원승계요건 : 주식교환완전자회사에 대하여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매출금액, 종업원의 수, 이에 준하는 규모의 비율이 약 5배를 넘지 않거나 주식교환 전의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특정임원 중의 일부가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특정임원이 될 것이 예상
  - 주식계속보유요건 1 : 주식교환 전에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의 전부를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 수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의 80% 이상이어야 함
  - 주식계속보유요건 2 : 주식교환 후에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

#### 바) 주식이전의 적격요건

- 주식이전은 자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주식 전체를 새롭게 설립되는 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시키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제도

---

242) 法人稅法 施行令 4의2 (17)

- 개별적으로 각각 주주가 되는 행위와는 달리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조직법상의 행위

□ 적격의 공통요건

- 기업그룹 내의 주식이전(완전지배, 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위한 주식이전에 해당하는 주식이전
- 주식이전의 대가로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완전모회사의 주식만 교부되는 경우

□ 개별요건

- 기업그룹 내의 주식이전(완전지배)
  - 지분요건 : 주식이전 전에 주식교환완전모회사와 주식교환완전자회사 간에 동일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있고 주식이전 후에 주식이전완전모회사와 주식이전완전자회사 및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 간에 동일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
- 기업그룹 내의 주식이전(주요지배)
  - 지분요건 : 주식이전 전에 주식이전완전모회사와 주식이전완전자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있고 주식이전 후에 지배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동일인에 의한 자회사 및 모회사의 지배관계를 포함)
  - 종업원승계요건 : 주식이전완전모회사의 주식교환 직전의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주식이전완전자회사가 주식이전 전에 영위하는 주요한 사업을 주식이전완전모회사가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이전<sup>243)</sup>
  - 종업원승계요건 : 주식이전완전자회사와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식이전 직전 종업원 중에서 약 80% 이상에 상당하는 자가 주식이전완전자회사나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자회사사업이나 다른 자회사사업(상호관련성있는 사업에 한정)이 주식이전완전자회사나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 의해 승계되어 영업될 것이 예상
  - 사업관련성요건 : 자회사사업이나 다른 자회사사업(상호관련성있는 사업에 한정)이 주식이전완전자회사나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 의해 승계되어 영업될 것이 예상
  - 규모요건 혹은 임원승계요건 : 주식이전완전자회사와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 간에 매출액, 종업원의 수, 이에 준하는 규모의 비율 등이 약 5배를 넘지 않거나 주식이전 전의 주식이전완전자회사와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특정임원 중의 어떤 임원이 주식이전에 따라 퇴임하지 않아야 함
  - 주식계속보유요건 1 : 주식이전의 직전 주식이전에 따라 교부받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이전완전자회사나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의 80% 이상
  - 주식계속보유요건 2 : 주식이전 후에 해당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가 해당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 및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등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

---

243) 法人稅法 施行令 4의2 (21)

## 2) 당사자별 과세효과

## □ 조직재편 유형별/당사자별 과세효과

&lt;표 III-12&gt; 조직재편 유형별/당사자별 과세효과

조직재편유형 \ 과세		자산이전 법인과세	주주과세	
			의제배당	주식양도익과세
합병 분할형분할	적격	이연	없음	이연
	비적격	교부금×	있음	이연
		교부금○	있음	있음
분사형분할 현물출자	적격	이연	N/A	N/A
	비적격	있음	N/A	N/A
주식교환 주식이전	적격	없음	N/A	이연
	비적격	교부금×	있음	이연
		교부금○	있음	N/A

주: 분사형분할이나 현물출자는 분할법인이나 현물출자법인의 주주에게 자산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과세는 발생하지 아니함.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www.chusho.meti.go.jp)의 자료와 M&Aにおけるストラクチャーの選擇と稅務(橋本純·甲田義典)의 자료를 재구성

## 가) 합병·분할·현물출자

□ 분할의 형태에 따른 주체별 행위<sup>244)</sup>

- 분사형분할(현물출자, 사후설립)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입장에서는 승계법인에 자산의 전부(혹은 일부)를 이전하면서 자산양도익과세가 발생되지만 분할대가가 분할법인에게만 지불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불되지 아니하여 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제거래가 존재하지 않아서 분할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주식양도익과세는 발생하지 아니함.

244) 中野 百々造, 合併・分割の稅務—その法務と稅務、株式會社 稅務經理協會, 2004.11.10, p185

<표 III-13> 분할의 형태에 따른 주체별 행위

	분할형분할(인적분할)	분사형분할(물적분할)
신설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법인 : 영업의 양도, 감자</li> <li>• 분할법인의 주주 : 구주의 일부 양도</li> <li>• 승계법인 :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법인 : 영업의 양도, 신주취득</li> <li>• 분할법인의 주주 : 재산이 전 없음</li> <li>• 승계법인 : 설립</li> </ul>
흡수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법인 : 영업의 양도, 감자</li> <li>• 분할법인의 주주 : 구주의 일부 양도</li> <li>• 승계법인 : 증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법인 : 영업의 양도, 신주취득</li> <li>• 분할법인의 주주 : 재산이 전 없음</li> <li>• 승계법인 : 증자</li> </ul>

- 분할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승계법인에 자산의 전부(혹은 일부)를 이전하면서 자산양도익과세가 발생되고 분할법인은 승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할법인의 주식 일부를 승계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승계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므로 주식양도익과세가 발생함.

나) 주식교환 · 주식이전

- 주식교환은 완전모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식이전은 지주회사를 창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모두 조직법상의 행위를 통하여 회사재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므로, 세제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과세제도 설계
-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피합병법인 등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양도 손익을 계상하므로 비적격주식교환 등의 경우에 주식교환완전자

회사나 주식이전완전자회사가 가진 자산에 대하여 시가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

- 시가평가자산은 고정자산, 토지 등, 유가증권, 금전채권 및 이연 자산으로 시가평가손익이 1,000만엔(자본금 등의 금액이 2,00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금 등의 금액에 1/2) 미만인 자산은 제외<sup>245)</sup>
- 주식교환자회사나 주식이전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주식을 이전한 대가로 모회사주식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가 행해지고 이에 따라 양도손익의 계상이 이연되지만, 모회사주식 이외의 자산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식양도손익이 계상됨<sup>246)</sup>.
- 주식교환 등이 적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자회사에서 주주에게 자산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병 등의 경우와는 달리 의제배당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음<sup>247)</sup>.

### 3) 조세속성(tax attributes)의 승계

- 이 부분은 조직재편시 자산·부채의 승계, 이월결손금의 승계, 자본의 승계,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설명

#### 가) 자산·부채 및 자본의 승계

##### 감가상각자산

- 비적격조직재편의 경우에는 양도가 있었다고 보고 자산이전시의 시가로 승계하고 적격조직재편의 경우에는 상각초과액을 포함하

245) 法人稅法62の9、法人稅施行令123の11

246) 小山眞輝、配当に關する稅制の在り方—自己株式のみなし配当に對する取扱いを中心として—、稅大論叢 58号、2008. 6. 20、p. 76

247) 小山眞輝、配当に關する稅制の在り方—自己株式のみなし配当に對する取扱いを中心として—、稅大論叢 58号、2008. 6. 20、p. 76

는 세무상 장부가로 승계

○ 합병법인의 감가상각한도액을 계산

- 내용연수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했던 법정내용연수, 피합병법인이 중고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이용했던 경우 해당 추정내용연수,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중고자산으로 보아 산정한 추정내용연수 중 하나의 내용연수를 이용 가능
- 상각한도액은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월수에서 적격조직재편일부터 기말까지의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정액법 계산시의 취득가액, 정률법 계산시의 장부가액은 각각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상 취득가액,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

□ 총당금·준비금

- 조직재편으로 이전하는 자산이나 사업과 개별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총당금·준비금은 적격조직재편인 경우에 자산과 같이 이전하여 승계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총당금·준비금으로는 개별평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반품조정총당금, 개별상각준비금 등이 있음.
- 조직재편으로 이전하는 자산이나 사업과 개별적인 대응관계가 없는 총당금·준비금은 적격합병·적격분할형분할인 경우에만 승계시킬 수 있고, 비적격조직재편,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 적격사후설립에 의한 이전의 경우에는 승계시킬 수 없음.
  - 이러한 총당금·준비금으로는 일괄평가채권에 대한 총당금 등
- 조직재편에 의하여 이전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총당금은 사용인이 조직재편시 이전하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을 받는 법인으로 승계됨.
  - 이전법인이 이전받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용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이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규정에 이전받은 사용인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이전법인의 근무기간과 이전받은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을 정해둘 것
- 조직재편에 의하여 이전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용인 중 약 80% 이상이 계속하여 이전받는 법인의 사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될 것

#### □ 비적격합병 등의 경우에 영업권의 계상

- 비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부채의 시가순자산액과 합병 등에 의해 교부한 합병대가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이나 부채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자산조정계정은 5년간 균등상각하고 부채조정계정은 그 내용에 따라 익금산입

#### □ 자본금 및 이익적립금

- 자본금 등에 대한 취급은 적격인 경우와 비적격인 경우에 차이가 발생
- 합병·분할형분할
  -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의 자본금 등의 액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나 분할승계법인으로의 인계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채택하지 않음.
  -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형분할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의 이전자산 등이 장부가액에 의해 합병법인이나 분할승계법인에 인계되어 피합병법인의 이익적립금액의 전부나 분할법인의 이익적립금액의 일부가 합병법인이나 분할승계법인에 인계
- 분사형분할·현물출자
  - 분사형분할이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이나 현물출자법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93

인이 자산 등의 이전을 행하고 해당 대가로서 분할승계법인이나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분할법인이나 현물출자법인의 순자산부의 금액은 변동되지 않지만, 분할승계법인이나 피현물출자법인은 자산 등의 이전을 받으면서 순자산부의 금액이 변동

- 분할승계법인이나 피현물출자법인은 순자산부 금액의 변동액 중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전액을 자본금 등의 변동으로 함.

#### ○ 사후설립

- 사후설립의 경우에는 사후설립법인과 피사후설립법인 간에 자산 등의 이전이 통상 매매거래로 행해지기 때문에 사후설립법인과 피사후설립법인 중 어느 쪽이든 자산 등의 이전 자체에 따라 순자산의 부(-)의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음
- 적격사후설립의 경우에 사후설립법인이 이전을 받은 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면 사후설립법인에 대한 장부가액수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자본금 등의 액을 증가시키거나 장부가액수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자본금 등의 액을 감소시켜 장부가액으로 조정

#### 나) 이월결손금

- 적격조직재편성 중에서 적격합병 및 합병과 유사한 적격분할형분할에 대해서는 결손금 승계가 가능<sup>248)</sup>
- 합병과 유사한 적격분할형분할은 적격분할형분할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함.
  -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영위하던 주요한 사업을 분할승계법인이 분할 후에도 계속되어 영위할 것이 예상

248) 法人稅法 57 ①,②

-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및 부채의 전부를 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할 것
- 분할법인을 분할 후에 즉시 해산할 것이 분할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결정될 것

□ 공제대상결손금<sup>249)</sup>

-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은 7년(2001년 4월 1일 이전 개시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
- 청색신고서로 확정신고한 청색결손금 중 기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결손금 승계의 제한

- 조세회피를 위하여 청색결손금이나 손실을 가진 법인이 합병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일정기간 안에 자본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법인이 조직재편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등이 가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
  - 기업그룹 내의 조직재편성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재편성과 비교하여 조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가진 그룹 외의 법인을 일단 그룹 내로 편입한 후 그룹 내의 다른 법인과 조직재편성을 하여 이월결손금을 이용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두고 있는 것임.
-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합병법인의 합병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개시일 이전 5년 내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 특정자본관계(50%를 초과하는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①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

249) 法人稅法 57 ②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195

전의 피합병법인의 청색결손금은 전액, ②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 후의 피합병법인의 청색결손금 중 특정자본양도 등 손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지 못함<sup>250)</sup>.

- 둘째, 첫째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역합병에 의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방지하고자 특정자본관계(50%를 초과하는 지분관계)가 합병법인의 합병사업 개시일 이전 5년 내에 생긴 경우에는 합병법인 자체의 결손금 중 ①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 전의 합병법인의 청색결손금은 전액, ② 특정자본관계 사업연도 후의 합병법인의 청색결손금 중 특정자본양도 등 손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지 못함<sup>251)</sup>.
- 셋째, 결손금을 대신하는 포함손실이 있는 자산의 승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룹 내의 재편(적격합병, 적격분할형분할, 적격분사형분할, 적격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이전으로 5년 내에 그룹화된 경우로 의제공동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과 그룹화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날 중 빠른 날 까지는 기간에 발생하는 특정자산양도 등 손실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sup>252)</sup>.

#### 4) 조직재편성에 따른 조세회피행위

□ 조직재편성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의 예

- 이월결손금이나 포함손실이 있는 회사를 매수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나 포함손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직재편성을 이용

250) 法人稅法 57 ③

251) 法人稅法 57 ⑤

252) 法人稅法 62의7

- 복수의 조직재편성을 단계적으로 행하여 과세를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양도나 주주의 주식양도를 행함.
- 상대방 법인의 세액공제한도나 각종 실적률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직재편성을 이용
- 주식의 양도손실을 계상하거나 주식의 평가를 낮추기 위하여 분할을 이용

#### □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 이월결손금이나 포함손실을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방지규정<sup>253)</sup>을 두고 있지만, 조직재편성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위의 예에 머무르지 않고 그 행위의 형태나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조직재편성에 관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이 필요
- 법인세법상 포괄 조세회피방지규정<sup>254)</sup>
  - 세무서장은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주식교환, 주식이전을 했던 일방의 법인이나 타방의 법인 혹은 이러한 법인의 주주 등으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 등에 의해 이전하는 자산 및 부채의 양도에 관한 이익의 감소나 손실의 증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증가, 해당 일방법인이나 타방법인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이익의 감소나 손실의 증가, 의제배당액의 감소 기타 사유에 의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따라 해당 법인에 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결손금액 혹은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

253) 法人稅法 57 ③・⑤, 法人稅法 62의7

254) 法人稅法 132의2

- 상속세법상 포괄 조세회피방지규정<sup>255)</sup>
  - 조직재편성을 이용해서 소득세나 상속세 혹은 증여세에 대한 조세회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의 경우와 동일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음.

## 나. 재무구조개선

### 1) 일반현황

- 2005년 세계개정에 대해 기업 재생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의 준비를 도모
  - 2005년 세계개정 이전에 기업재생을 위하여 적용되던 것이 평상시에 인정받지 못한 평가손실이나 기한경과 결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원칙으로서 법적 수속(회사 갱생 수속, 민사 재생 수속 등)을 취했을 경우에만 인정되었음.
    - 그렇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아무리 재생 수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의 도산”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신용도 현저히 훼손되기 때문에 사적 정리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신속한 기업 재생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민사재생법 등의 법적 정리절차와 더불어 이것에 준하는 일정한 요건<sup>256)</sup>을 갖춘 사적

---

255) 所得稅法 157 ③, 相續稅法 64 ③

256)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공포된 채무 처리를 행하기 위한 수속에 대한 준칙에 따라서 채무처리 계획이 책정되고 있는 것
- 절차가 공정하고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채무자의 자산 평정에 관해 공정한 가액에 의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
  - 채무처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3명 이상의 팀이 확인을 하는 것
- 자산 평정에 근거해 대차대조표가 작성되는 것
- 상기의 대차대조표나 사업 계획에 근거해 면제액이 정해져 있는 것

정리 수속에 대해서도 채무면제를 했을 때의 평가손실의 손금 산입 및 기한경과 결손금의 우선 이용을 인정

- 사업재생 및 기업재생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부수적인 조직개편 및 사업재생 관련법의 일부 개정이 행해짐.

<표 III-14> 사업재생 및 기업재생 관련법의 연혁

연도	도산법	독점금지법	상법	세법	기타
1966년	도산법 개정개시				
1997년		지주회사·합병법개정			
1999년	민사채생법제정		주식이전·교환제도		
2000년	민사채생법시행		회사분할제도		
2001년		은행법5%를 예외조치	신주예약권창설 및 종류주식개정		사적정리가이드라인제정
2002년	회사갱생법개정			연결납세제도	금융재생프로그램
2003년	파산법 개정	기업결합심사가속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개정
					relationship banking기능강화 프로그램
					산업재생기구법제정
2005년			상법의 현대화법안결정	법인세법·기업재생지원세제개정	
2006년			신회사법시행		신탁법개정

- 2이상의 금융기관에 의해서 채무면제를 하는 것(정리회수기구는 단독 방폐에서도 가능)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199

- 기업 및 사업의 재생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정리한 관련법이 전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조치가 포함된 법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과 세법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정리

#### 2) 세계현황

##### □ 개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상법상의 예외조치는 주주 총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편조직재편’의 범위를 확대(총 자산의 5%에서 20%로 확대)하거나 감자절차를 간소화(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행하여 회사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재산평가조사의 적용제외(인정계획에 따른 현물출자 등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검사역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 합병대가의 유연화(금전을 대가로 하는 합병, 삼각합병 등에 대하여 신회사법에 제정됨)가 있음
- 세계조치로서 등록면허세의 경감과 결손금의 이월기간연장
  - 세계조치의 대상을 ‘공동사업재편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으로 확대
  - 결손금의 대상범위를 종점의 설비투자액에 덧붙여서 설비제거비용 및 할증퇴직금 등으로 확대
  -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국내공동화에 대한 대응)에 따라 대폭적인 특별상각률(초년도 24%가 기본형이지만,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따르면 30%, ‘공동사업재편계획’과 같이 행하는 경우에는 40%)이 신설

##### □ 채무포기시의 세계조치

- 채권을 포기한 채권자에게는 해당 포기채권액이 채무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는가가 중요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을 과세하는가가 중요함.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채무면제이익과세를 이월조치하는 것이 특례에 해당
  - 2005년 세제개정에 의하여 재건계획의 책정 및 합의과정에 일종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개시,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에 의한 법적 정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사적정리가이드라인, 사업재생기구, 정리회수기구,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지원한 계획에 의한 사적 정리)에는 일정기간, 실질적인 채무면제이익과세의 이연조치 등의 적용
    - ①채무면제이익 과세의 이연<sup>257)</sup>, ②법적 정리(회사갱생법 등)와 사적 정리(사적정리가이드라인 등)의 세무상 취급차이를 제거, ③채권의 대손손실, 평가손 등을 인정하여 채권자 측의 손금 산입을 확대
- 일정한 요건과 관련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기본통달 9-4-1에 따르면 자회사 등을 정리하는 경우의 무이자대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기본통달 9-4-2에 의하면 자회사 등의 도산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이자로 한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재생 및 기업재생을 위한 조치에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필요성

---

257)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기간 거치하였다가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을 기한경과된 이월결손금 및 평가손실에 산입하는 형태임.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201

첫째, 사업관련성이 있는 자회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통달상의 자회사는 해당법인과 자본관계를 가진 자, 거래관계, 인적관계, 자본관계 등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기관의 거래처도 포함된다고 해석

둘째, 자회사 등이 경영위기에 처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통달 9-4-2에 ‘자회사 등’은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자력으로 재생이 곤란한 상황에 있고 자금상황 개선이 희박하여 즉시 지원이 없으면 도산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회사를 의미

셋째, 지원자가 손실부담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대해서 채권포기를 행한 합리적 이유는 지원에 따라 장래에 큰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지 또는 재건에 따라 남은 채권의 변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로 도산과 비교하여 손실이 경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합리성

첫째, 손실부담액(지원액)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회사 등의 지구노력(자산매각·경비감소·증감자 등)을 고려하여 경영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최저금액이라는 사실

둘째, 재건관리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포기를 실시한 후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시에 계획의 실행사항을 관리·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며(모니터기능), ‘계획→실시→실시상황의 파악→계획의 수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기적인 보고나 임원의 파견도 중요

셋째, 지원자(채권포기자)의 범위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 채권자가 채권포기를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자의적인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됨.

넷째, 부담비율의 합리성 문제는 주로 주거래은행과 준거래은행 간에 발생하는 일로서 법적 정리가 아니라면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기 쉬운데, 채권자 간에 반드시 동일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

고 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

#### □ 결손금

- 종래 청색 결손금과 기한 경과 결손금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청색 결손금부터 먼저 이용하도록 강제되어 있었고, 기한 경과 결손금은 채무면제익과 임원 등으로부터의 증여이익에 대응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용도의 제한
  - 그래서 기업들은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청색 결손금을 보존하고자 함.
- 2005년 세계개정에 의해서 기한 경과 결손금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 사적 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관련 세제조치

- 2001년 9월 19일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
- 국세청은 이 가이드라인 에 의한 재건계획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기본통달 9-4-2에 의한 요건인 재건계획의 합리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를 인정
  - 채무자는 채권포기 이전의 이월결손금과 채무면제이익을 상쇄하여 과세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4호, 법인세 기본통칙 12-3에서 과거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외의 이월결손금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4. 호주

### 가. 조직변경

- 주요 조직변경 방법으로는 합병, 분할 등이 있음.
  - 합병(merger)은 두 회사가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한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래임.
    - 호주의 회사법에서는 합병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회사법 Part 5.1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분할(division)은 한 회사가 그 회사의 모든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회사에 완전히 이전하는 거래임.
    - 호주의 회사법에서는 분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회사법 sec. 411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
    - 분할은 합병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분할에 관한 세무상 문제는 합병(merger)과 동일함.
  - 호주는 분할과 유사한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기업분리(demerger)가 있음.
    - 기업분리는 그룹의 모회사(head entity)가 구조조정 목적에서, 종속회사(subsidiary)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모회사(head entity)의 주주에게 이전시키는 거래임.

#### 1) 합병(Merger)

- 호주 회사법은 한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정확한 규정이 없음<sup>258)</sup>.

---

258) "Mergers and Aquisitions", IBFD, 2008

- 이런 이유로, 합병대상 회사는 완전히 소멸하게 됨.
- 따라서 호주의 합병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 피합병회사(first company)는 합병회사(new company)에 자산을 이전함.
  - 피합병회사의 주식은 취소되며, 그 대가로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회사의 주식을 받음.
  - 피합병회사의 채무는 합병회사에 의해 인수됨.
  - 피합병회사는 청산(liquidation)됨.

#### 가) 일반사항

-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 관련 조세
  -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보유 중인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취소하고 합병(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음. 따라서 주식의 처분이익이 발생하며, 자본이득세를 부담함.
- 합병회사(new company) 관련 조세
  -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cost)를 계산함.
    - 연결대상 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 취득한 자산은 동일한 실체로부터 구입한 것과 같이 처리됨.
  - 취득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 재고자산 :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함. 기말에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가감함. 다만, 취득과정에서는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 감가상각 자산 : 일반적인 자본충당금 규정(uniform capital allowance regime)에 따라 자본충당금 전입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205

- 비상각 자산 : 자본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자본충당금 전입금액이 없음.
- 영업권(goodwill) : 회계처리보다 더 엄격히 자산성을 인정하며, 내용연수(20년 한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상각함. GAAP의 경우는 상각을 인정하지 않음.
- 매출채권 :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의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함.
- 부실채권 : 부실채권을 취득한 후 대손상각을 할 경우에는 손금이 인정되지 않음. 왜냐하면, 합병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응되는 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취득계약에서 이를 제외하여 취득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함.
- 선급비용 : 관련된 기간 동안 과세소득에서 공제됨.
- 종업원 관련 충당금 :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될 경우,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

#### □ 피합병회사(first company) 관련 조세

-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에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함.
- 처분 자산·부채의 세무
  - 재고자산 : 처분한 시점에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됨.
  - 감가상각 자산 : 일반적인 자본충당금 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시점에 사용중단손익 조정(balancing adjustment)<sup>259)</sup>을 함. 즉, 조정금액이 0보다 클 경우, 과세소득에 가산하며, 조정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과세소득에서 차감함. 과세소득은 법인소득세에 포함되며, 자본이득세(CGT)에 해당되지 않음<sup>260)</sup>.

259) 조정금액 = 합병시 취득가액 - (세무상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260) 다만, 감가상각 자산이 비주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CGT가 과세됨.

- 영업권 : 처분될 경우, 영업권을 처분한 자는 자본이득세를 부담함.
- 매출채권 : 합병회사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
- 다만, group의 계열사로 처분되는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과세이연됨.
-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피합병회사에 존속함.

## 나) 조세특례

### (1) 주주의 과세특례

- 주식교환 과세특례(Scrip for Scrip roll-over) : 근거법령 ITAA 97 Subdivision 124-M
  - 특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주식의 교환의 경우,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과세를 이연함.
  -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의 경우 주식교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합병절차 중 합병회사가 합병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세에 대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인수절차 중 유상증자 후 발행한 주식을 피인수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세에 대하여 피인수회사의 주주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주식교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sup>261)</sup>.
  - 교환되는 주식에 관한 요건 (ITAA97 Sect 124.780 (1))

261) ITAA97 Sect 124.780 (1)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207

- 계약 요건 (ITAA97 Sect 124.780 (2))
- 과세이연 요건 (ITAA97 Sect 124.780 (3))
- 추가 요건 (ITAA97 Sect 124.780 (4))

□ 교환되는 주식에 관한 요건 : 합병(인수)회사(original entity, original interest holder)가 다음을 교환하는 경우

- 합병회사의 주식을 피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
- 합병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권한이 부여된, 합병회사가 발행한 옵션, 권리 등을 피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

□ 계약 요건 :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계약이어야 함.

- 체결되는 계약은 단일계약이어야 함.
  - ITAA97 Sect 124.780 subsection (2)를 충족하는 단일계약의 경우, subdivision 124-M, paragraph 124-780(1)(b)에 따라, 주식교환은 과세이연됨.
  - subsection 124-780(2)에서 제시한 single arrangement의 정의 : section 995-1에서 정의한 계약(arrangement)은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법적 강제성이 있거나 없는 것과 상관 없는 계약(arrangement), 합의(agreement), 이해(understanding), 약정(promise), 또는 인수(undertaking)
  - 예를 들어, 최초 62%를 취득한 계약의 경우, 80%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roll-over할 수 없음.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85%의 지분율을 확보하여도, 최초에 체결한 단일계약(single arrangement)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roll-over할 수 없음.
  - 단주(odd-lot)의 지정매도약정(nominee sale arrangement)에 의하여 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비율이 달리 결정됨. 하지만, 이는 모든 주주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계약으로 인해 취득할 지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함.
    - group에 소속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 피합병(피인수)회사 의결권의 80% 이상이 보유하여야 함.
    - group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 피합병(피인수)회사의 의결권을 증가시켜서, 합병(인수)회사나 group 계열사가 피합병회사 의결권의 8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의결권을 가진 모든 피합병(피인수)회사의 소유자가 참여하는 계약이어야 함.
  - 피합병(피인수)회사의 특정한 지분에 대한 소유주에 대해서 참여(participation)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substantially the same terms)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어야 함.
    -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 중 여러 거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의도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사실(fact)과 상황(circumstance)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거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단일계약(single arrangement)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Class Ruling을 받을 필요가 있음.
    - Class ruling은 개별 거래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과세이연 요건 :
- 피합병(피인수)회사 주주는 피합병(피인수)회사의 주식을 1985년 9월 20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함.
  - 과세이연이 없을 경우, 피합병(피인수)회사 주식에 관한 자본이득세 거래에 해당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해야 함.
  - 대체되는 지분은 합병(인수)회사(replacement entity)의 것으로 다음과 같아야 함.
    - ITAA 97 Sect 124.780 subparagraph (2)(a)(i)에서 언급된 회사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209

- group에서의 최후의 지주회사
  - 피합병(피인수)회사의 주주는 과세이연을 선택하여야 함.
  -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피합병(피인수)회사 주주는 서면으로 합병(인수)회사(replacement entity)에 피합병(피인수)회사의 지분가액을 통보함.
- 추가요건 :
- 추가요건 적용 대상
    - 피합병회사 주주와 합병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 피합병회사나 합병회사(replacement entity)는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최소한 300명의 회원(member)을 보유하지 않거나, 피합병회사의 주주,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acquiring entity)는 모두 동일한 관련 group의 회원사인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피합병(인수)회사 주주가 교환의 대가로 받은 자본가액의 공정가치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피합병(인수)법인의 시장가치와 동일하여야 하고
    - ② 대체된 지분은 피합병회사의 지분에 부여된 것과 같은 동일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여야 함.
- 주식교환 과세이연특례의 조세효과
- 주식교환 과세이연이 적용될 경우, 피합병(피인수)회사 주식에 관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이연됨.
  - 교환 전 주식의 원가로 교환된 주식의 원가를 결정함.
  - 교환 후 주식의 처분시 자본이득이 계산되어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교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결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 지분의 대가로 대체되는 주식

의 시장가치로 평가함.

- 취득가액이월 규정(Cost base transfer rule) : 원래의 주주가 다 음의 경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교환 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함.
  - significant stake test : 원래 주주가 특수관계자(associates)의 지분을 포함하여 계약 전 피합병(피인수)회사 지분과 합병 후 합병(인수)회사 지분의 최소 30%를 보유한 경우
  - common stake test : 원래 주주가 특수관계자(associates)의 지분을 포함하여 피합병(피인수)회사와 합병(인수)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 (2)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과세특례

- 자본이득 과세이연(roll-over)<sup>262)</sup>
  - 피합병회사의 CGT 자산<sup>263)</sup>이 합병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그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이연됨.
  - 다만, 이 규정은 wholly-owned group<sup>264)</sup> 간의 자산이전시에만 적용됨.
- 사용중단손익 공제(Balancing adjustment relief)
  - 감가상각자산의 사용중단손익<sup>265)</sup> : 감가상각자산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중단 직전의 장부가액(terminal value)이 세무상 장부가액(adjustable value)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가산하며, 미달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차감함.
  - 중단손익공제 : wholly-owned group에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해,

262) ITAA 1997. sec. 126-B

263)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

264)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100% 자회사인 경우.

265) ITAA 1997. sec. 40.285-295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211

사용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용중단손익은 이연됨.

#### □ 가치이전규정(value shifting rule)

-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가치가 당사자의 일방에게 이전됨. 이를 가치이전이라고 함.
- 이전된 가치는 자산의 원가(cost base)에 반영하여 조정함.
- 다만, 이 규정은 wholly-owned group 간의 자산이전시에만 적용됨.

#### 2) 분할(Division)

□ 분할은 한 회사가 모든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회사나 새로운 회사에 완전히 이전하여 여러 회사로 나눔. 분할은 합병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합병은 두 개의 실체가 하나의 실체로 합쳐지는 반면, 분할은 하나의 실체가 두 개 이상의 실체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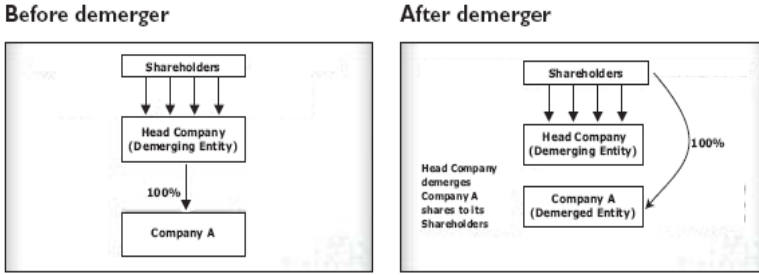
- 따라서 분할의 절차는 합병의 절차와 유사함.
- 분할에 필요한 절차는 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에 관한 거래와 지분의 교환에 관한 거래로 나눌 수 있음.
- 세무상 문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달리 적용됨.

□ 호주는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기업분리(Demerger)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기업분리란, 분할과 유사한 형태로, 기업분리란 모회사의 주주가 이전에 간접적으로 소유했던 회사를 분리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지분을 분리하는 구조조정의 한 형태임.
- 즉, 법적인 실체가 나뉘어지는 합병과는 달리, 경제적 실체가 분리되는 구조조정의 형태임.

○ [그림 III-11]은 기업분리로 인한 구조조정을 보여줌.

[그림 III-11] 기업분리



자료 : ATO

- 기업분리의 형태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 분리실체(demerged entity, 분리된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이 분할회사(head company)의 주주에게 매도되는 형태
  - 분리실체에 대한 소유지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어 모회사(head company)의 주주에게 발행되는 형태
  - 분리실체가 새로운 주식을 모회사(head company)의 주주에게 발행한 후 유효한 이전(effective transfer)을 일으키는 형태
  
-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호주 세법에서 규정한 기업분리(demerger)의 경우 주주와 당사회사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함.
  - 기업분리 관련 규정은 ITAA97 Division 125와 ITAA 1936 Sec 44.에 기술됨.
  - 세법에서 규정한 기업분리 이외의 기업분리는 일반적인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의무를 부담함.
  -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조세부담은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따름.

가) 일반사항

- 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과 지분의 교환으로 인한 세무상 문제는 합병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함.
  - 이는, 분할이 합병의 반대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 합병과는 동일하기 때문
  
- 분할관련 세무 문제
  - 주주 : 분할로 인해 교환되는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자본이득세 과세됨.
  - 분할신설회사 :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부채는 분할회사의 자산·부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결정함.
  - 분할회사 : 분할회사의 CGT 자산 이전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자본이득세 과세됨.

나) 과세특례

(1) 분할 관련 특례

- 분할의 절차는 합병의 절차와 일치하므로, 관련된 과세특례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음은 분할과 관련한 주요한 과세특례임.
  - 주식교환 과세특례(scrip for scrip roll-over)
  - CGT 자산 과세이연 : wholly owned group 간의 CGT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자본이득세는 자본이득세 과세이연
  - 사용중단손익 공제(Balancing adjustment relief) : wholly-owned group에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해, 사용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용중단손익은 이연됨.
  - 가치이전규정(value shifting rule) : wholly-owned group 간의 자산이전시,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가치가 당사자의 일방에게 이전됨. 이전된 가치는 자산의 원가(cost base)에 반영하여 조정함.

## (2) 기업분리(Demerger) 관련 특례

### □ 기업분리 거래의 확인

- 기업분리 관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나 합병과 같은 다른 기업구조조정으로부터 확실히 구분되어야 함.

### □ ITAA97의 Division 125, ITAA 1936 Sec 44.에 따라 기업분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음의 특례가 적용됨<sup>266)</sup>.

- 분리 group의 계열사
  - 자본이득세 이연과세
  - 계열사 제외로 인한 자본이득세의 면제
  - 분리로 인한 자산의 취득원가 조정
- 모회사(head company)의 주주
  - 자본이득세 이연과세 선택
  - 배당공제 등
- 세법상 인정되는 기업분리의 요건 : ITAA 1936의 subsection 6(1), ITAA 97의 sec. 125-70에서 규정된 기업분리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조건 : 기업분리는 분리 group에서 발생하여야 함.
    - 즉, 분리회사는 분리 group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어야 함.
  - 구조조정 결과로, 모회사(head company)의 지분소유자는
    - 첫째, 분리회사에 대한 group 소유지분을 최소 80% 이상 취득

266) "Demergers in brief, Group demergers : CGT and Divident tax relief", 2003, ATO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215

하여야 함.

- 둘째, 다른 것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즉, 주식만을 취득해야 하며, 현금 등을 대가로 취득해서는 아니 됨.
- 셋째, 분리 전·후에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함.
- 넷째, 모회사(head company)의 지분 중 50% 이상은 호주의 거주자에 의해 보유되어야 함.

#### □ 분리 group 계열사의 조세특례<sup>267)</sup>

- 분리 group이 소유하고 있는 분리회사(demerged entity) 지분에서 다음의 거래로 인해 자본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주식의 양도(disposal, CGT event 1)
  - 취소(cancelation, CGT event 2)
  - 주식매입선택권(CGT event 3)
  - 과세이연된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CGT event K6)
- wholly owned group의 계열사에서 제외되어(CGT event J1)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경우 자본이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 분리로 인해 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자본손실이나 group에서 보유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소시켜야 함.
  - 분리 규정에 의한 취득원가 조정을 제외한 다른 원가 조정은 없음.

#### □ 분리회사 주주를 위한 조세특례

- 자본이득세 과세이연 선택(optional CGT rollover) : 분리회사(head company)의 주주는 분할과정 중에 주주지분의 교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세 부담을 이연할 수 있음.
  - 자본이득세 과세이연은 거주자에게 해당됨. 비거주자의 경우,

---

267) "Demergers in brief, Group demergers : CGT and Divident tax relief", 2003, ATO

분리회사(demerged entity)의 주식이 호주와 관련(connection)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 분리회사의 주주가 과세이연을 포기하는 경우,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은 당해 순자본손익의 계산에 포함시킴.
  - 과세이연된 주식의 보유기간은 분할로 인한 교환 전 주식의 보유기간과 합산함.
- 배당공제(dividend relief) : 분할실체(demerged entity)나 그것의 자회사(subsidiaries)가 소유하는 CGT 자산의 50% 이상(시가 기준)이 분리실체나 그것의 자회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기업분리 배당금(demerger dividend)은 과세되지 않음.
- 기업분리 배당금 : ITAA36 sec.44(1)에 의한 배당금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기업분리 대가(demerger allocation)의 일부
  - 기업분리 대가 : 모회사의 주주가 기업분리로 인해 취득하는 분리회사 지분의 시장가치
  - 다만,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업분리 배당금(demerger dividend)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 취득원가조정(cost base adjustment) : 기업분리로 인해, 분할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해야 함. 이를 취득원가조정(cost base adjustment)이라고 하며, 자본이득 과세이연의 선택과 무관함.
- 취득원가조정 : 분리회사(demerged entity)의 신주를 취득한 후, 분리회사의 주주는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실체의 신주에 대해서 모두 취득원가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 취득원가는 분할로 인해 받은 분리회사의 신주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할회사 주식의 시장가치 비율대로 원래 주식의 취득원가를 배분함.

3) 지분의 인수·교환

- 호주는 지분의 인수나 교환과 같은 지분의 이전거래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특례를 두고 있음.
  - 따라서 합병이나 분할처럼 자산과 지분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조정の場合에도 합병·분할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지분의 이전거래에 관한 규정은 지분이전의 일반규정과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됨.
  - 또한, 지분의 이전과 동일하게, 합병이나 분할처럼 자산과 지분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합병·분할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에 관한 규정도 자산이전의 일반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됨.

가) 일반원칙

- 지분을 취득한 회사(receiving company)
  -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부담하는 조세는 없음.
  - 주식취득원가 조정 : 주식의 취득에 지급한 대가를 취득원가(cost base)로 계상함.
  - 인수회사의 결손금공제 및 대손금공제의 원칙 : 인수회사는 피인수회사의 결손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지분을 양도한 회사(transferring company)
  - 회사가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지분연속성 테스트(COT) :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항상, 손실을 공제받기로 청구한 연도,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에 손실회사의 지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배적 지분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함. COT는 회사의 의결권, 50% 이상을 통제할 수 있거나, 배당액, 또는 자본배분액 중 50%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충족됨.

- 동일사업 테스트(SBT) : 결손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경우, 결손회사는 전기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SBT를 충족해야 함. SBT는 결손금 청구연도에 사업연속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수행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임.

□ 지분을 양도한 회사의 주주

- 지분의 양도는 CGT event이므로 CGT를 부담함.
- 다만, pre-CGT(1985년 9월 20일 이전)에는 매도자가 취득한 주식의 경우, 매도자를 위한 주식양도시 어떠한 CGT 부담도 없음.

나) 과세특례

□ 지분을 취득한 회사 (receiving company)

- 인수자의 주식취득원가 조정
  - 일반원칙 : 주식의 취득에 지급한 대가를 취득원가(cost base)로 계상함.
  - 주식취득원가의 특례 : 다음의 경우, 취득원가가 이전됨.
    - 인수자가 script for script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group 소속 회사 간의 거래의 경우
- 인수회사의 결손금공제 및 대손금공제
  - 인수회사는 피인수회사의 결손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결손금 공제요건 :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에 피인수회사(target company)가 동일한 사업(same business)을 영위하여야 함.
- 연결 group에 대한 조세문제
  - 연결 group이 한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는 회사(joining entity)의 주식의 원가는 유보(retained) 및 조정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219

(reset) 원가자산 규정에 따라 피인수회사(acquired entity)의 자산에 할당(allocated)됨.

- 지분연속성 테스트(continuity of ownership test, COT)와 동일 사업 테스트(same business test)를 만족하면, 연결회사(joining entity)의 손실은 연결 group의 연결회사(head company)로 이전됨.

#### □ 지분을 양도한 회사 (transferring company)

##### ○ 세무상 결손금의 이전

-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다른 회사에 결손금을 이전할 수 있음. 다만, 결손금이전이 가능한 회사는 모두 동일한 wholly owned group 내의 회사이어야 함.
  - 인수회사는 결손이 이전되는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함.
  - 공동소유 테스트(common-ownership test)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항상, 손실을 공제받기로 청구한 연도,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에 충족되어야 함.
  - 결손금은 이전되는 결손금액을 규정하는 계약을 사용하여 이전하여야 함.
- 자본손실 : 위의 요건이 충족하면 이전됨.
- 결손금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취득원가조정(cost base adjustment)
  - 결손금의 이전이 있는 경우, 결손회사의 group 회사에 의해서 보유된 post-CGT 지분의 취득원가와 감소된 취득원가의 조정이 발생함.
- 취득원가 조정방법
  - 결손회사의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감소된 취득원가를 감소시킴.
  - 이익회사의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감소된 취득원가를 증가시킴.
- 따라서 결손회사가 이전에 group의 다른 회사에 결손금을 이전하였다면, 결손회사로부터 이전된 결손금으로 인해, 결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이전된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

- 기업분리 요건에 충족될 경우 demerger relief 적용 가능
  - 기업분리의 요건
    - 기업분리는 분리 group에서 발생하여야 함.
    - 분리회사에 대한 group 소유지분을 최소 80% 이상 취득하여야 함.
    - 다른 것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즉 주식만을 취득해야 하며, 현금 등을 대가로 취득해서는 아니 됨.
    - 분리 전·후에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함.
    - 모회사(head company)의 지분 중 50% 이상은 호주의 거주자에 의해 보유되어야 함.
  - 조세특례
    - 자본이득세 과세이연 선택(elective CGT rollover) : 분리회사의 주주는 분리과정 중에 주주지분의 교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세 부담을 이연할 수 있음.
    - 배당공제(dividend relief) : 분리회사나 그것의 자회사(subsidiaries)가 소유하는 CGT 자산의 50% 이상(시가기준)이 분리실체나 그것의 자회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기업분리 배당금(demerger dividend)은 과세되지 않음.
- 지분을 양도한 회사의 주주
  - 지분양도차익 과세이연(CGT script-for-script rollover)
    - script-for-script rule에 의할 경우,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CGT는 이연시킬 수 있음.
    - 주식교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sup>268</sup>. 상세한 내용은 합병시 주주의 과세특례를 참조.

268) ITAA97 Sect 124.780 (1)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 221

- 교환되는 주식에 관한 요건(ITAA97 Sect 124.780 (1))
- 계약 요건(ITAA97 Sect 124.780 (2))
- 과세이연 요건(ITAA97 Sect 124.780 (3))
- 추가 요건(ITAA97 Sect 124.780 (4))
- 원래 지분소유자의 CGT 부담 : 피인수회사의 주주가 rollover를 선택하는 경우, CGT 부담내역은 다음과 같음.
  - 원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무시됨. 즉, 대체된 지분이 처분되기 전까지 어떤 CGT도 부담되지 않음.
  - 대체지분은 피인수회사의 원래지분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됨.

#### 4) 자산양수도 (Acquisitions/sales of assets)

##### 가) 일반원칙

###### 자산양수도의 일반원칙

- 자산을 취득한 회사
  -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임.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수행하거나, CGT를 계산함.
- 자산을 처분한 회사
  - CGT 자산의 처분은 CGT event에 해당하므로, CGT를 부담함.

##### 나) 과세특례

- wholly-owned group 간의 자산양수도의 경우, 다음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 자본이득 과세이연(roll-over) : CGT 자산이 group 내의 다른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그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이연됨.

- 가치이전규정(value shifting rule) :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정상가격으로 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액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산의 원가(cost base)에 반영하여 조정함.
- 사용중단손익 공제(Balancing adjustment relief) : 감가상각자산의 사용을 중단하여 발생한 중단손익은 이연됨.

## 5) 현물출자

### 가) 일반원칙

- 현물출자는 자산의 이전과 지분의 취득 거래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산의 이전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는 합병 시 자산이전에 관한 것과 일치함.
  - 지분의 취득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는 지분의 인수에 적용되는 것과 일치함.
  - 따라서 자산이전과 지분인수에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나) 과세특례

- Wholly-owned group 간의 자산이전에 대하여, 다음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자본이득 과세이연(roll-over) : group 내의 한 회사가 CGT 자산을 group 내의 다른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그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이연됨.
  - 가치이전규정(value shifting rule) :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가치가 당사자의 일방에게 이전됨. 이를 가치이전이라고 함.
    - 이전된 가치는 자산의 원가(cost base)에 반영하여 조정함.

나. 재무구조개선<sup>269)</sup>

- 재무구조개선작업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 작업(워크아웃)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작업(법정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호주 세법은 앞에서 기술한 작업 분류에 따른 세무처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취하는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세무처리를 함.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연체이자의 공제 및 상각
  - 채무의 기간 및 상환조건의 변경
  - 채무의 차환
  - 채무의 면제
  - 채무의 지분전환
  - 법정관리
  - 파산
  
- 1) 연체이자의 공제 및 상각(Inability to service debt)
  
- 채무자(Debtor)
  - 이자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반공제규정(general deduction rule)에 의하여 공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공제됨.
  - 일반공제규정 : 다음의 손실이나 지출에 해당할 경우, 그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sup>270)</sup>.

---

269) Tax consequence of restructuring, pp.95-118, cahier, IFA

270) ITAA 1997. sec. 8.1

- 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이 필요한 비용이나 지출
- 과세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지출
- 채무자가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공제가가능함.

#### □ 채권자 (creditor)

-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소득을 정확히 결정한 납세자는 그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의무를 부담함<sup>271)</sup>.
- 채권자의 채권이 부실한 상태가 될 경우, 대손상각할 수 있음. 대손상각은 대손상각공제규정과 일반공제규정에 따라야 함. 대손상각공제규정<sup>272)</sup>은 아래와 같음.
  - 채권은 전기 혹은 당기에 채권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어야 함. 또는 대출업을 영위하는 과정 중에 대출한 채권이어야 함.
  - 채권이 대손상각되는 시점에 부실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함.
  - 채권이 대손상각되어야 함.
- 채권자는 대손상각공제규정과 일반공제규정을 충족할 경우를 제외하면,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다만, 금융기관이 발생이자를 수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판단이 건전한 상업적 고려를 통해 과세소득을 계산해서 내려질 때, 발생이자는 이를 취득하기 전까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sup>273)</sup>.

271) Henderson v. F C of T (1970) 119 CLR 612, Barratt v. FC of T 92 ATC 4275, FC of T v. Australian Gas Light Co & Anor 83 ATC 4800;

272) ITAA 1997. sec. 25-35

273) Taxation Ruling TR 94/32 para. 5.

2) 채무의 기간 및 상환조건의 변경(Amendment of terms and conditions)

□ 채무자(Debtor)

- 세무상 부채와 자본의 구분이 변경될 수 있음. 부채요건은 다음과 같음.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본으로 분류함.
  - 금융약정이 필요함.
  -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금융기관에 적어도 제공된 경제적 효익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익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비우발적 의무(non-contingent obligation)를 부담하여야 함.
- 부채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채권자(Creditor)

- 채권요건(채무자에게는 부채요건)에 따라 세무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 채권요건은 채무자의 경우와 동일함.
- 따라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이자도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3) 채무의 차환(Refinancing old debt with new debt)

□ 채무자

- 차환방식에는 ① 구부채를 이행한 후 신부채를 차입하는 방식, ② 새로운 금융기관에 현행 채무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구부채 이행, 신부채 차입하는 방식 : 구부채가 신부채로 차환되는 경우, 신부채는 구부채와 동일하게 세무처리됨.

- 따라서 구부채의 이자비용이 공제되는 경우, 신부채의 이자비용도 공제가능함.
- 새로운 채권자(financier)에 이전하는 방식 : 신부채는 구부채와 동일하게 세무처리됨.
  - 따라서 구부채의 이자비용이 공제되는 경우, 신부채의 이자비용도 공제가능함.
  - 다만, 부채가 채무자와 관련 있는 자 등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규정(commercial debt forgiveness rules)이 적용될 수 있음.
- 채무면제규정(commercial debt forgiveness rules)
  - 채무(commercial debt) :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영업채무라고 함.
  - 채무면제 금액 = 총면제금액 - (면제를 위해 채무자에게 제공된 대가 + 면제로 인해 증가된 채무자의 과세소득)
  - 채무면제이익(순액)의 세무상 처리 : 다음 항목을 아래의 순서대로 채무면제이익만큼 감소시킴.
    - ① 통상소득의 이월결손금
    - ② 이월된 자본손실
    - ③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 ④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cost base)
-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 등의 보전에 사용할 수 없음.
  - 파산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인해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 순수한 애정과 호의로 인해서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 □ 채권자

- 구채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의 공제
  - 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분류에 따라 통상소득에서 공제될 수도

있으며,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도 있음.

- 신채권의 세무상 취득가액
  -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금액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 채무자에게 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액면가액보다 더 낮게 세무상 취득가액이 결정될 수 있음.

#### 4) 채무의 지분전환(Conversion of debt into equity)

##### □ 채무자(Debtor)

- 채무의 지분전환은 채무의 면제로 간주됨<sup>274)</sup>. 따라서 채무면제 규정이 적용됨.
  - 다만, 채무면제이익(순액)은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차감된 잔액임.

##### □ 채권자(Creditor)

- 채권의 전환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통상소득이나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음.
- 지분의 취득시기를 제외한, 채무의 세무상 특성들은 모두 전환된 지분으로 이전됨(roll-over).
  - 채권의 처분이나 상환이 발생한 시점에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 전환된 지분의 취득가액 : 처분시점의 채권의 취득가액 + 교환을 위해 지급한 금액
- 채권과 교환으로 취득된 지분의 가치가 채권의 명목가치보다 낮은 경우, 채권에서 지분가치를 차감한 잔액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274) ITAA 19367. sec. 245-35

## 5) 채무의 면제(Waiver of debt)

## □ 채무자(Debtor)

- 채무면제란 채무자의 채무지급의무가 소멸하거나, 채무가 무효화, 소멸되는 경우에 발생함.
- 채무계약 무효화(defeasance)를 통한 채무의 포기(waiver)
  - 채무계약 무효화(defeasance) 계약 :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채무를 이전하고, 제삼자가 채무의 만기시 채무를 이행하는 계약.
  - 채무계약 무효화 계약은 채무자에게는 강제적인 계약상 권리로, 자본이득세(CGT) 과세대상 자산임. 따라서 채무자는 제삼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때마다 강제적인 계약상 권리에 관한 자본이득세(CGT)를 부담함.
  - 채무자는 그 채무계약 무효화 계약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이행된 채무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간주됨.
  - 이때, 채무계약 무효화 계약의 취득원가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제삼자에게 지급한 대가임.
- 채권포기(Debt waiver)
  - 배당가능 금액을 보유한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가 개인 주주나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포기가 이익의 배당에 상응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됨.

## □ 채권자

- 포기된 채권은 대손상각공제규정에 따라 통상소득에서의 공제 여부를 결정함. 즉,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채권은 전기 혹은 당기에 채권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어야 함. 또는 대출업을 영위하는 과정 중에 대출한 채권이어야 함.
  - 채권이 상각되는 시점에 부실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함.

### III. 주요국의 구조조정세계 229

- 채권이 상각되어야 함.
- 채권자가 자본계정(capital account)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인해 자본손실이 발생함.
- 채권포기가 공정한 거래가 아닌 경우, 자본손실은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함.

#### 6) 법정관리(administration)

- 회사가 법정관리에 처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가 제한됨.
  - 즉,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으로 인한 자본손실은 발생될 수 없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산 전에 그 회사의 주식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sup>275)</sup>.
    - 법정관리인이 서면으로 회사의 해산 중에 추가적인 분배금이 없을 가능성이 없음을 선언하는 경우.
- 법정관리인이 추가적인 분배금이 없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자본손실(capital loss)을 인식할 수 있음.
  - 주식의 취득원가는 청산인이나 법정관리인의 선언 후, 즉시 전액을 감액함<sup>276)</sup>.
-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sup>277)</sup>가 그 회사의 주주나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비상장회사에 진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받은 주주는 그 면제된 금액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봄<sup>278)</sup>.

275) ITAA 97 subsection 104-145(1)

276)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doc=/content/25180.htm>

277) 상장기업(public company)이 아닌 기업.

278)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40660.htm>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된 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지 않음.
  - 비상장회사가 다른 회사가 그 비상장회사가 진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 파산법(Bankruptcy Act 1966)에 의하거나 실제로 파산하여서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결과적으로 채무(loan)가 배당금으로 처리되어서 채무면제되는 경우
  - 국세청장이 면제된 채무를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무면제로 인한 배당금은 이중과세조정이 되지 않고, 과세소득에 포함됨(not frankable).

## 7) 파산(Bankruptcy)

### □ 채무자(Debtor)

- 채무자의 지급불능(insolvency)이나 파산(bankruptcy) 관련 법령
  -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률 : 파산법(Bankruptcy Act 1966)
  - 법인의 지급불능에 관한 법률 : 회사법(Corporation Act 2001)
- 파산법에 의할 경우, 채무는 채권자와의 계약이나 파산법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음.
  - 파산한 개인 채무자는 의제배당규정<sup>279)</sup>, 채무면제규정<sup>280)</sup>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회사법에 의할 경우, 파산한 법인 채무자는 더 이상 계속기업이 아니므로, 개인과는 달리 조세특례 조치가 없음.
  - 다만, 관리절차(insolvency administration process)에서 생존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법인은 채무면제규정의 적

---

&page=1&H1

279) ITAA 1936. sec. 109G

280) ITAA 1936. sec. 245-40

용을 받음.

□ 채권자 (Creditor)

-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지불유예(suspension of payment)는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 지급불능 채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 채무자의 파산에 포함된 채무는, 부채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부실채권으로 대손상각할 수 있음.
  - 파산에 의하거나 관리절차(insolvent administration process)에 의한 채권의 소멸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대손상각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대손상각공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공제규정(general deduction rule)에 의해서 공제될 수도 있음.
- 채권이 채권자의 자본계정(capital account)상 사업용자산(asset of the business)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자본손실을 자본이득에서 공제함.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 1. 구조조정세제의 국제비교

#### 가. 구조조정 특례제도의 존재 형식

-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는, 합병 및 분할 등 조직변경의 대표적인 형태와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법에서 다루고 있고,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다루고 있음.
  - 합병, 분할 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
  - 또한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채무의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액의 익금불산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는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비과세 조직재편(tax-free reorganization)'의 유형을 연방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조직재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 모두에서 과세가 발생하지 않음.
    - 7가지 유형이라 함은 합병(A형 조직재편), 주식교환(B형 조직재편), 자산인수(C형 조직재편), 분할(D형 조직재편), 자본재구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33

성(E형 조직재편), 조직변경(F형 조직재편), 기업개선작업(G형 조직재편)임.

- 비과세라 함은 목표법인(또는 양도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관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양수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것을 의미함.
  - 7가지 유형 중 E형이 조직재편을, 6가지 유형이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 형태이고, E형은 기존 법인의 틀을 유지하며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에 해당함.
  - 조직재편의 요건에 대해 연방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직재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모두 상시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조치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지원세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조세지원체계는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6개의 비과세 조직재편의 유형을 설정하고 적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과세가 발생하지 않음.
  - 6가지의 비과세 조직재편의 유형에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주식교환, 주식이전이 있음.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으로 채권포기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월 조치가 있으며, 이 역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합병 및 분할 등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과세특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감면 규정은 없음.
- 대표적인 조직변경 유형으로서 합병, 분할, 주식교환, 현물출자 형태를 들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포괄적인 감면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거래별로 관련되는 각 세법에서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과세특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과세특례 내용은 소득 및 법인세법 1988(ICTA 1988), 자본이득세법 1992(TCGA 1992), 부가가치세법 1994와 이와 관련된 후속개정법, 인지세법 1981과 이와 관련된 후속 개정법 등, 토지거래인지세에 관한 개정법 2003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원은 각 세법에서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이므로 상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는 구조조정세제가 조직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 조직변경 유형은 합병, 분할, 지분의 인수·교환, 자산양수도, 현물출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과세특례의 근거법령은 ITAA97(Income Tax Assessment Act)이며 상시규정으로 판단됨.
-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세법 원칙에 따라 처리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은 기업의 구조조정세제를 모두 상시조치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합병 및 분할을 제외한 기타 조직변경 및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조세지원이 한시조치로 되어 있음.

<표 IV-1> 구조조정세제의 유형별 근거법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유형	근거법	유형	근거법	유형	근거법	유형	근거법	유형	근거법
조직 변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자산양도 주식교환·이전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조특법 조특법 조특법	합병 분할 주식교환 자산인수 조직변경 기업개신작업	연방소 특세법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주식교환 주식이전	법인세법	합병 분할 주식교환 현물출자	ICTA1988 TCGA1992 등 <sup>1)</sup>	합병 분할 주식교환 자산양수도 현물출자	ITAA97 <sup>2)</sup>
채무 구조 개선	채권채무조정 자산양도	조특법 조특법	자본재구성	연방소 특세법	채무면제	법인세법	- <sup>3)</sup>	- <sup>3)</sup>	- <sup>3)</sup>	- <sup>3)</sup>

주: 1)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of 1988,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2)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3) 특례규정 없음.

## 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직변경의 유형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은 주로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임.
  - 즉,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합병,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다른 조직변경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됨.
  - 즉, 주식이전과 자산이전 등을 통한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은 상시법인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한시법인 조특법의 적용을 받음.
  -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경우,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은 모두 일반 법인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음.
  
- 미국, 일본의 경우, 조직변경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조직변경 당사에 관한 조세문제를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함.
  - 미국은 조직변경의 유형을 ‘A형 조직재편’부터 ‘G형 조직재편’까지 유형화함.
  - 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합병, 분할, 주식이전(교환), 현물출자 등을 유형화하여 조세특례를 정리함.
  - 한국의 경우, 합병과 분할의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규정으로 분류되나, 당사자별 조세문제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음.
  
-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주식이전·주식교환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유형화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 완전한 모자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실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합병 등의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 한국의 경우, 지주회사설립을 위하거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는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37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식의 현물출자·이전·교환 등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일본, 영국 등의 경우,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한 조직변경에 대한 특례가 있음.
  -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변경의 경우, 실질상 내부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 따라서 기업집단 내에서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기업집단 외부로 이전하기 전까지 과세를 이연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 내의 자산양도의 경우, 별도의 특례가 없음.
    - 이는 최근까지 연결회계와 연결법인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합병 등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직변경에 관해서 법인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즉, 합병·분할,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데 반해, 자산의 포괄적 양도, 지분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조특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기업집단에 대한 특례가 없음.
    - 즉, 자산의 일부 양도시에 연결납세제도와의 연관성이 없음.
  
-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주요한 조직변경 유형별 조세제도는 다음과 같음.

&lt;표 IV-2&gt; 조직변경 유형별 과세특례

국가	유형	과세특례 적용시		상시(○) 임시(×)
		자산양도차익	지분양도차익 (의제배당)	
한국	합병	과세이연	과세이연	○
	분할	과세이연	과세이연	○
	주식이전(교환) <sup>1)</sup>	n/a	과세이연	×
	자산양도 <sup>2)</sup>	과세이연	n/a	×
미국	합병	과세이연	과세이연	○
	분할	과세이연	과세이연	○
	주식교환 <sup>3)</sup>	n/a	과세이연	○
	자산인수 <sup>4)</sup>	과세이연	과세이연	○
	조직변경 <sup>5)</sup>	과세이연	과세이연	○
영국	합병	과세이연	과세이연	○
	분할	과세이연	과세이연	○
	주식인수(교환)	n/a	기업재편 특례적용	○
	사업인수	조세특례 없음	n/a	n/a
일본	합병	과세이연	과세이연	○
	분할	과세이연	과세이연 <sup>6)</sup>	○
	현물출자	과세이연	n/a	○
	주식이전(교환)	n/a	과세이연	○
호주	합병	과세이연	과세이연	○
	분할	과세이연	과세이연	○
	주식인수(교환)	n/a	과세이연	○
	자산이전	과세이연	n/a	○

주 : 1) 조특법 제38조(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주식의현물출자또는교환·이전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2(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3(물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등

2) 조특법 제37조(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조특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등

3) B형 조직재편

4) C형 조직재편

5) F형 조직재편

6) 분사형 분할은 해당사항이 없음.

다. 조직변경과 관련된 과세특례 요건

- 구조조정은 조직변경과 재무구조개선의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조직변경과 관련된 각국의 세제 중 조직변경 특례요건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하고자 함.
- 합병·분할에 대해서는 영국과 호주를 포함하는 검토대상 주요국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분석하였으나, 주식교환·자산인수는 영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비교분석하였음.
  - 영국과 호주는 조직재편과 관련된 세제를 조직재편의 유형별로 동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특례의 범위에서 차이감으로 비교가능성의 측면에서 제외한 것임.
- 구조조정의 유형 중 조직재편에 대한 유형으로 미국의 경우 A형(합병), B형(주식교환), C형(자산인수), D형(분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현물출자, 사후설립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주요국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미국의 B형(주식교환)과 비교되는 제도로 일본의 주식교환, 주식이전을 다루었으며, 미국의 C형(자산인수)과 비교되는 제도로 일본의 현물출자를 다루었음.
- 우리나라의 조직재편세제는 합병·분할·내국법인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그 규정을 두어 해당 유형으로 조직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의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를 일반적·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 비하여 주식교환·이전, 자산양도에 대한 특례는 일몰규정에 영향을 받아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주식교환 중 관련 당사자의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는 주

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sup>281)</sup>,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교환<sup>282)</sup>,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sup>283)</sup>이 있음.

- 자산인수 중 관련 당사자의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sup>284)</sup>,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sup>285)</sup>, 개인이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sup>286)</sup>,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과세특례<sup>287)</sup>,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sup>288)</sup>가 있음.
- 자산인수 중 내국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26일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규정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상시화함.

□ <표 IV-3>과 <표 IV-4>로 나누어 <표 IV-3>에서는 합병·분할의 과세특례요건을 다루고 <표 IV-4>에서 주식교환·자산인수의 과세특례요건을 다루었음.

- <표 IV-3>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다른 과세요건 특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관련 당사자의 모든 과세요건을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국, 호주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주식교환·자산인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면요건은 특정대상별로 달리 규정하여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표 IV-5>에서 정리함.

---

28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28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2

28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284)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286)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87)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2

288)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3

1) 합병·분할의 과세특례요건에 대한 국제비교

□ 당사자 모두 동일규정을 적용하는 나라 vs. 당사자별 규정을 적용하는 나라

- 특례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모든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상대법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요건을 규정한 나라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요건을 규정한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미국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비하여 일본과 영국, 호주는 관계를 고려하여 요건을 달리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당사법인이 동일 그룹에 속해 있는지, 당사법인의 지분관계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특례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음.
  - 동일 그룹에 속하며 지분관계가 100%인 경우에는 지분의 계속성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두지 않았으며, 동일 그룹에 속하며 100% 지분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두고 있음.
  - 한편, 지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그룹에 속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요건을 제시하는 하지만,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조직재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운 조직재편이 가능하도록 함.
  - 조세회피목적 등으로 조직재편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이 낮거나 지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음.
- 영국 및 호주의 경우에도 기업집단 내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특례요건이 존재함.
  - 영국의 경우에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자산이전인지, 기업집단 외부로의 자산이전인지에 따라 특례요건을 달리 두고 있으며, 기

업집단 내부에서의 자산이전인 경우에는 좀 더 완화된 요건을 두고 있음.

-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사업목적의 유무라는 특례요건별 각국의 국제비교
  -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호주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비교
  -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의 대가를 일정비율 이상 합병법인의 지분으로 수취할 것을 요구하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주요국 모두 가지고 있는 요건임
  - 일정비율은 우리나라가 80%, 미국이 50%, 영국과 일본이 100%임.
  
-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비교
  -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주요국 모두 가지고 있는 요건임.
  - 우리나라는 합병등기일의 사업연도 말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한다는 형식요건과 이 후 3년간의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비하여 미국은 개별 상황의 사실 및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상 요건에 의하면 과거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것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영국은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계속 영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앞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관계 등에 따라 완전지배, 주요지배, 공동사업영위로 구분하여 요건을 달리 두고 있는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동일 그룹이면서 100%의 지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43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요지배와 공동사업영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가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요건을 두어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사업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주요국은 형식적인 기간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다만, 미국의 경우에 사법상의 요건을 통하여 과거 자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할 것 등의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지표를 두고 있고, 일본도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요건 외에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80% 이상 인수하는 요건 및 사업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요건을 두고 있음.

#### □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비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인수한 것이 조세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가져야 한다는 요건은 주요국 모두 가지고 있는 요건임.
- 우리나라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충족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 영국은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두어 조세회피목적 등에 대응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지분관계가 낮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영위’의 경우에만 사업의 상호관련성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있었는지를 파악하므로 합병법인-피합병법인, 분할상대법인-분할법인의 관계를 통하여 1차적으로 사업목적에 달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영위’의 경우에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조세회피 등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분할에서는 합병과 차이 나는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함.

## ○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비교

- 분할법인에 대한 분할의 대가를 일정비율 이상 분할상대법인의 지분으로 수취할 것을 요구하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주요국 모두 가지고 있는 요건임.
- 일정비율은 우리나라, 영국, 일본, 호주는 모두 100%, 미국은 80%임.
- 합병에서 일정비율을 100%로 하였던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분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두고 있음.
-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미국과 호주는 분할 전·후로 동일한 지분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음.
- 특히 호주는 분할상대법인의 주식에 대한 소유지분을 최소 8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분의 연속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의 계속성,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음.

## ○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비교

- 분할상대법인이 분할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호주를 제외한 주요국이 가지고 있는 요건임.
- 주요국 모두 합병과 동일하거나 보다 엄격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가지고 있음.

## ○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비교

- 분할상대법인이 분할법인을 인수한 것이 조세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가져야 한다는 요건은 호주를 제외한 주요국 모두 가지고 있는 요건임.
-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기간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일정기간요건’ 이외에도 별도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임.

<표IV-3> 합병·분할의 과세특례요건

요건	한국	미국	영국 <sup>3)</sup>	일본	호주
지분의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대가 총 액 중 주식이 8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가의 50% 이상을 상대 회사의 주식으로 수취<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인수회사의 보통 주 주주에게 인수회사의 보통주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가를 상대회사의 주식으로만 수취</li> <li>조직재편 전 주식보유 예상(공동사업영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가를 상대회사의 주식으로만 수취</li> <li>조직재편 전 주식보유 예상(공동사업영위단)</li> </ul>
사업의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등기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영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상황의 사실 및 정황에 따라 판단 : 과거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것 등<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 계속영위<sup>4)</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업원 80% 이상 종사 (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단)</li> <li>중요 사업의 계속영위 (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업원 80% 이상 종사 (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단)</li> <li>중요 사업의 계속영위 (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단)</li> </ul>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장한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질 것: 위장, 조세회피 목적 등 제외<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목적테스트 충족<sup>5)</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상호관련성(공동사업영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상호관련성(공동사업영위단)</li> </ul>
기타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법상 합병에 해당하며, 주법상 요건을 충족할 것</li> </ul>	N/A	N/A	N/A

합 병

〈표 IV-3〉의 계속

요건	한국	미국	영국 <sup>3)</sup>	일본	호주
지분의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대가 중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일 것<sup>2)</sup></li> <li>지분의 계속적 유지<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 전·후 동일한 지분을 유지</li> <li>분할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함.</li> <li>분할신설회사의 소유지분을 최 소한 80% 이상 소유 요구</li> </ul>
사업의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등기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영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li>중요 자산·부채의 이전(주요지배만/공동사업영위만)</li> </ul>	N/A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li>분할 전 최소 5년 동안 거래 및 사업을 유지했을 것<sup>2)</sup></li> <li>분할 목적이 E&amp;P를 배분하는 것이 아닐 것<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의 경우와 동일함</li> </ul>	N/A

분  
할

<표 IV-3>의 계속

요건	한국	미국	영국 <sup>3)</sup>	일본	호주
기타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그 주주에게 배분할 것<sup>2)</sup></li> </ul>	N/A	N/A	N/A
특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과세조직제편 요건으로 연방소득세법상 요건 외에 법원은 이를 형식기준이라 보고 1)지분의 연속성 2)사업의 계속성 3)사업목적 4)단계거래원칙 요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별로 과세특례요건이 완전히 다름</li> <li>합병의 경우 '기업집단 내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이용 가능</li> <li>사업목적테스트 및 특례기업분리요건과 관련하여 사전확인 제도 운영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법인 간의 관계를 완전지배, 주요지배, 공동사업영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요건의 정도를 달리 함</li> </ul>	

주: 1) 사업상요건(judicial requirements)에 해당함

2) 연방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함

3) 영국의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과세특례 요건이 각기 다름. 여기에서는 피합병법인과 분할법인의 자본이득 과세특례요건을 정리함. 특히, 합병의 경우 '기업집단 내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과세특례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바, 여기에서는 기업재편과 관련된 과세특례요건만 정리함.

4)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법 1985의 제425조, 부어일랜드 회사법 1986의 제418조 또는 이에 대응하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 또는 정리계획안에 따른 것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5) 기업재편 또는 합병이 진실한 상업적 이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인세·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의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나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병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이상에서 설명한 합병·분할의 과세특례요건에 대한 국제비교는 <표 IV-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조직재편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직의 변경이 있었지만, 변경조직이 계속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직변경의 시점을 과세시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임.
  -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세특례요건이 되며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사업목적, 기타로 나누어 주요국의 세제와 비교함.

## 2) 주식교환·자산인수의 과세특례요건에 대한 국제비교

- 미국과 일본은 합병과 분할 이외에도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법적 형식이 바뀌었지만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유형에 대하여 합병·분할과 같은 과세특례를 부여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일반화하지 않고 특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주식교환에 대하여 합병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모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합병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져오는 조직변경의 경우 합병 등과 유사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도록 세법이 개정됨<sup>289)</sup>.
    - 다만, 벤처기업<sup>290)</sup>과 같이 특정한 적용대상에 한정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검토해 보면 미국과 일본이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특례대상을 부여하기 위해 합병·분할세제의 요건인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사업목적의 유무라는

289)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90)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2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49

- 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특성에 따라 요건을 가감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 모두 그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비과세 요건의 틀은 합병·분할과 다르지 않음.
    - 주식교환의 유형의 특성이 상대법인의 주식을 가져오고 그 대가로 자신의 주식을 내어주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통하여 실체의 계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병과 같이 동일실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도 모자관계의 실체가 되고 상호지배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경우만을 특례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가는 대부분 주식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하여 자회사가 되어야 하며 모회사 지분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80%)의 소유도 가능해야 하는 형태만 특례의 대상이 됨.
    - 두 국가 모두 합병과 동일한 수준의 사업의 계속성, 사업목적의 유무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특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2010년 1월 1일)로 인하여 지분의 계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양도거래는 실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혜택을 부여함.
    - 다만,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주식교환·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하더라도 동일 실체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와는 다른 목적이라고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식교환과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중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통합을 위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내국법인 신설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규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특법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2010년 1월 1일)로 인하여 지분의 계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양도거래는 실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혜택을 부여함.
  - 또한, ‘중소기업통합을 위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는 통합법인의 주주이면서 소멸법인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클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가의 대부분을 지분으로 취득하게 되어 지분의 연속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그 요건 이외에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나 사업목적 유무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규정은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크도록 하여 교부되는 대가가 소멸사업장의 주주에게 주식의 형태로 가게 됨을 우회적으로 규정
  - 따라서 지분의 계속성 요건은 이를 통하여 달성가능함.
  - 한편, 사업의 계속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산을 양도하는 자를 양수법인의 발기인이 되도록 하여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발기인은 회사가 완전히 설립되고 나면 회사의 기관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 지분에 연속성에 대한 규정은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이 그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달성 가능한 요건이나 사업의 계속성이나 사업목적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은 없음.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51

- 내국법인 신설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지분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규정은 현물출자의 특성상 그 대가를 지분으로만 수취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건으로 함.
  -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해서는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일부 요건을 갖추고 있음.
  
- <표 IV-4>에서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포괄적 주식교환·자산인수 과세특례요건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으며, <표 IV-5>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식교환·자산인수에 관한 과세특례요건을 제시함.
  - 포괄적인 주식교환·자산인수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은 조직재편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큰 틀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조세특례가 시행되어 조직재편의 큰 틀에서 이를 파악하게 됨.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된 조세법에 따라 특정한 주식교환·자산인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정법인·특정당사자를 한정하여 조세특례가 계속적으로 제공됨.
  - <표IV-4>에서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일반적인 주식교환·자산인수의 과세특례요건이 합병·분할과 동일한 형태로 정리되었으며, <표IV-5>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식교환·자산인수 관련 기타특례규정이 정리됨.
    - 주식교환·자산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도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했던 목적에 비추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사업목적이 될 수 있음.

&lt;표 IV-4&gt; 주식교환·자산인수 과세특례요건

요건	한국 <sup>3)</sup>	미국	일본
지분의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의 대가(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는 주식으로만 교부 가능</li> <li>• 교환을 통하여 자회사가 됨(100% 주식을 줌)</li> <li>• 수취한 대가가 모회사주식의 80%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의 대가(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는 주식으로만 교부 가능</li> <li>• 주식교환 전 주식보유 예상(완전지배 100%, 공동사업영위 80%)<sup>2)</sup></li> <li>• 주식교환 후 주식 계속 보유될 것(완전지배/공동사업영위만)<sup>2)</sup></li> </ul>
주식교환 사업의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상황의 사실 및 정황에 따라 판단 : 과거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것 등<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 80% 이상 종사(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만)</li> <li>• 중요사업의 계속영위(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만)</li> </ul>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질 것: 위장, 조세회피 목적 등 제외<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상호관련성(공동사업영위만)</li> </ul>
기타	N/A	N/A	N/A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53

<표 IV-4>의 계속

요건	한국 <sup>3)</sup>	미국	일본	
자산인수	지분의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인수의 대가는 주식으로만 교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인수의 대가는 주식으로만 교부 가능</li> <li>• 자산인수 전 주식 100% 보유예상 요건 (공동사업영위)</li> </ul>	
	사업의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상황의 사실 및 정황에 따라 판단 : 과거 사업에서 사용 하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것 등<sup>1)</sup></li> <li>•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취득 (총자산 공정시장가치의 70% 순자산 공정시장가치의 90% 이상인 자산의 취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자산·부채의 이전(주요지배만/공동사업영위만)</li> <li>• 종업원 80% 이상 종사(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만)</li> <li>• 중요사업의 계속영위(주요지배/공동사업영위만)</li> </ul>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질 것: 위장, 조세회피 목적 등 제외<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상호관련성 (공동사업영위만)</li> </ul>
	기타	N/A	N/A	N/A

&lt;표 IV-4&gt;의 계속

요건	한국 <sup>3)</sup>	미국	일본
특징	N/A	N/A	• 두 법인 간의 관계를 완전지배, 주요지배, 공동사업영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요건의 정도를 달리 함

- 주: 1) 사법상요건(judicial requirements)에 해당함  
 2) 주식교환에 포함하여 설명한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지배시 과세특례요건 중 주식보유 사전요건과 주식보유 사후요건에 대한 기준은 없음  
 3)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교환은 조특법 제38조(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제한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산인수는 조특법 제37조(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함

&lt;표 IV-5&gt; 우리나라의 주식교환·자산인수 과세특례요건

규정	과세특례요건
주 식 교 환	<p>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교환이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li> </ul> <p>&lt;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의 법인주주(10%↑)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나 주식회사의 법인주주(10%↑)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li> <li>• 전략적 제휴계획의 존재</li> <li>• 주주와 벤처기업의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li> <li>• 취득주식을 1년 이상 의무 보유</li> </ul>
	<p>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교환이나 현물출자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li> </ul> <p>&lt;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지주회사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해당하는 자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으로 교환</li> <li>• 전환지주회사가 된 지 2년 이내에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입</li> <li>• 자기주식교환의 경우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모든 주주는 그 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공시 필요</li> </ul>

IV. 주요국 구조조정체제의 비교 및 시사점 255

<표 IV-5>의 계속

규정	과세특례요건
자산인수	<p>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통합을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li> </ul> <p>&lt;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법인은 통합법인의 주주이어야 함</li> <li>• 소멸법인 취득 주식가액 &gt; 소멸법인 순자산가액</li> </ul>
	<p>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거주자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li> </ul> <p>&lt;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함</li> <li>• 신설법인의 자본금 &gt;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li> </ul>
	<p>내국법인 신설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상당액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li> </ul> <p>&lt;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일 것</li> <li>• 주식 또는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할 것</li> <li>•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li> <li>•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li> </ul>
	<p>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li> </ul> <p>&lt;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일 것</li> <li>• 외국자회사는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임</li> </ul>

## 라. 합병·분할 과세특례의 범위

-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및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조직 재편 당사자인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피합병법인(분할법인),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과세특례 범위상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음.

### 1)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과세문제

- 주요국의 경우 합병시점에 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합병의 경우,
    - 합병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양도로 처리하여 합병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관련 자본이득은 피합병법인 단계에 과세되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므로 합병법인 단계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 합병시점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관련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시점에 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합병시점에 발생한 자본이득 부분은 향후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실현되어 과세될 것임.
  - 한편, 영국과 호주의 경우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매매용 자산을 제외한 자본자산에 한해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지나 다음과 같이 합병시점에 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함.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57

- 매매용 자산의 경우 합병시 발생한 자본이득은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됨.
- 매매용 자산을 제외한 자본자산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시 발생한 자본이득은 추후 이를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되므로 합병시점에 합병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문제는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6조의2, 제46조의3의 신설로 인하여 합병시점에 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됨.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로 인한 순자산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를 함.
  - 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로 인한 순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과세이연함.

#### 2)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과세문제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시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영국과 호주의 경우 일부 과세문제가 발생함.
- 하지만 영국 및 호주의 경우 요건 충족시 자본자산에 한해 관련 자본이득을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매매용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므로 일부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즉, 합병시점에서 과세되지 않은 자본자산의 자본이득 부분은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법인이 추후 이를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에 법인세법 제80조, 제81조의 폐지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일부 과세문제가 발생함.
  - 청산소득은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전액 과세이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도록 함으로써 관련 과세를 완화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 전에는 주식 교부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개정으로 분할·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규정이 폐지됨.

### 3) 피합병법인(분할법인) 주주의 과세문제

-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국가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주요국의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자본이득 부분은 해당 주주가 추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됨.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59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6월 8일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설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취득한 주식을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2010년 6월 8일의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토록 하여 관련 과세를 완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계산함.

#### 4) 요약표

-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및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조직 재편 당사자인 피합병법인(분할법인),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과세특례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IV-6>과 같음.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시가로 승계함.
    - 따라서 합병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문제는 자산의 평가문제만 있음.

&lt;표 IV-6&gt; 합병·분할의 당사자별 과세특례범위

구분	과세 소득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합병	피합병 법인	양도 손익 전액 비과세 <sup>3)</sup>	전액 비과세	일부 비과세 <sup>5)</sup>	전액 비과세	일부 비과세 <sup>5)</sup>
	피합병 법인의 주주	의제 배당 전액 비과세 <sup>4)</sup>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sup>6)</sup>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분할	분할 법인	양도 손익 전액 비과세 <sup>3)</sup>	전액 비과세	일부 비과세 <sup>5)</sup>	전액 비과세	일부 비과세 <sup>5)</sup>
	분할법인의 주주	의제 배당 전액 비과세 <sup>4)</sup>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sup>6)</sup>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주 : 1)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분할과 관련하여 합병·분할시점에 당사자별 관련 과세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지 일부 비과세하는지에 대한 것임. 이 때 비과세라 함은 합병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엄밀히 말하면 과세이연에 해당함.

2)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분할대가) 중 교부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청산소득(분할소득)에 대한 과세완화

4)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교부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완화

5) 자본자산의 이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이연

6) 자본이득 관련 과세특례요건과 의제배당 관련 과세특례요건이 다르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주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마. 재무구조개선

재무구조개선에 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과세특례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1) 조세지원의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기타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업이 채무구조개선을 위해 자산이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준다거나 채무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임.
- 그러나 주요국의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 이외의 채무구조개선 노력에 대해 별도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2) 운영형태(상시규정 vs. 한시규정)

-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과세특례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는 법인세법에 상시규정으로,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규정으로 존재함.
- 그 형태 또한 법률인 경우도 있고, 통칙이나 유권해석인 경우도 있음.
- 이에 반해 미국, 일본, 영국은 상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3) 과세특례 규정의 일원화 여부

-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과세특례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의 유형별로 각기 다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 채권·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i) 이자율 또는 만기 등의 계약조건변경, ii) 원리금 감면, iii)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이전을 통한 채무의 변제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돼 사용될 수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의 유형별로 과세특례요건이나 과세특례의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
- 이에 반해 미국, 일본, 영국은 채권·채무조정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 예를 들어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우리나라는 채무조정  
의 유형(이자율 또는 만기 등의 변경/원리금 감면/출자전환 등)  
및 업종(금융기관/기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특례가 적용  
되나, 일본은 채무조정 유형이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단일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

<표 IV-7> 우리나라의 채권채무조정 세무처리

유형	과세원칙	과세특례	
(1) 이자율 또는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채권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 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 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 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 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sup>1)</sup>	
	채무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 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 조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조정이익은 익금에 산입하 지 않음 <sup>2)</sup>	
	채권자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 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sup>3)</sup>	○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 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 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 가 불확실한 어음·수표 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 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 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 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sup>3)</sup>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63

<표 IV-7>의 계속

유형	과세원칙	과세특례
		<p>○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입합<sup>4)</sup></p>
(2) 원리금 감면	<p>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sup>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li> <li>-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세무상 결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li> <l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li> </ul> </li> </ul>	<p>○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sup>6)</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li> </ul>

&lt;표 IV-7&gt;의 계속

유형	과세원칙	과세특례
	<p>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 회가 의결한 결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li> <li>-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li> <li>-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li> <li>-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ul>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65

<표 IV-7>의 계속

유형	과세원칙	과세특례	
(2) 출자전환	채권자	‘원리금 감면’과 동일함	‘원리금 감면’과 동일함 <sup>7)</sup>
	채무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sup>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sup>9)</sup></li> <l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li> <l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li> <li>-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li> </ul>

- 주: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  
 2)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9  
 3)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4)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  
 5)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6)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7) 재법인 46012-248, 2003.04.18.  
 8)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9)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 4) 과세특례의 구체적 내용

- 채무면제이익과 관련된 과세특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기한경과 결손금 등과 채무면제이익을 상제한 후 잔액만을 과세하는 형태이며, 세 번째는 과세이연 형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번째 형태와 세 번째 형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첫 번째 형태, 미국의 경우에는 세 번째 형태, 일본의 경우에는 두 번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5) 요약표

- 재무구조개선, 그 중에서도 특히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과세특례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IV-8> 채무면제익과 관련된 과세특례(주요국 비교)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1. 과세특례 규정의 일원화 여부	× (채무조정의 유형별로 각기 다른 과세특례 규정 적용)	○	○	○
2. 상시규정 여부	△ (일부 상시, 일부 한시)	○(전부 상시)	○(전부 상시)	○(전부 상시)
3. 과세특례 내용	① 조건변경 • 과세이연(유효이지출법에 따라 수익인식) ② 원리금 감면: • 기한경과 결손금과 상계 허용 •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환입) ③ 출자전환 • 기한경과 결손금과 상계 허용 • 과세이연(이후 사업연도 결손금의 보전에 총당 가능)	○(전부 상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월세액공제 또는 이월결손금 등과 상계가 가능하며, 상계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세액공제 등에서 상계 가능	○(전부 상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제외	○(전부 상시)  정상시에 인정받지 못한 자산평가손실 또는 기한경과 결손금과 상계 허용

## 2. 시사점

### 가. 구조조정세제의 상시화

-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조정세제의 도입 초기인 1990년대 말에는 모든 구조조정세제가 한시적인 조치로서 마련되었음.
  - 2001년부터 한시적 구조조정시스템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상시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일부가 법인세법으로 이관되었음.
  - 따라서 현재는 합병 및 분할, 현물출자에 관한 세제 등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의 구조조정 관련 세제들이 한시적인 조치인 조특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조특법에 의한 제도들은 일몰규정이 적용되고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이는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또 다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되는 구조조정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구조조정세제도 상시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원제도 중 상시제도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과 계속해서 한시적인 조치로 운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근거규정에 대한 국제비교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의 감면 규모를 통하여 상시조치로 전환하여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IV. 주요국 구조조정체제의 비교 및 시사점 269

- 현재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조직변경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어느 정도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조직만 변경되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에 과세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활발한 조직변경 활동에 장애가 됨.
  - 따라서 조직변경과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원방법은 조세감면 형태가 아닌 과세이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국가들에서도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지원방식은 조세감면보다는 과세이연을 함으로써 조직변경 시점에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임.
  
-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 조특법에서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정비라고 할 수 있음.
  -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 대상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에 관한 지원이 많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이 조특법에 명시되어 있고,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특정 업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전문기구에 대한 조세지원 등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음.
  -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특법상의 조치 중 일부는 해당 세법으로 이관하고 또 일부는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점차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 중 조세감면이 발생하는 제도의 각 지원별 감면 규모는 <표 IV-9>와 같음.
  - 구조조정 지원체제가 대부분 과세시점을 이연하는 형태로 되어

-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감면이 발생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감면 규모는 매년 0.4억원 규모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인한 감면액이 그동안 거의 없었으나 2008년 241억원 규모로 크게 나타남.
  - 재무구조개선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는 2006년 23억원에서 2008년 14억원으로 점차 감소하였음.
  - 특이한 사항으로, 전략적 제류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면액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많은 구조조정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조특법상 구조조정세제의 활용도는 특정한 거래나 대상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2009년 12월말의 조특법 개정으로 포괄적인 주식이전(교환) 및 자산양도에 대해서 조세특례가 부여됨.
  - 위의 규정은 거래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몇 가지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일반규정으로, 낮은 조특법상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활용실적이 저조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경우, 조세지원의 계속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포괄적인 주식이전(교환) 및 자산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일반규정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71

<표 IV-9> 조특법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감면규모

(단위: 억원)

유형	조세지원 내용	근거규정	조세감면규모		
			2006	2007	2008 <sup>2)</sup>
현물 출자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0.36	0.4	0.4
사업 전환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33조의2	0	12	3
지주 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0	0	241
중소 기업의 구조 조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2	0	0	0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7조의3			
조직변경 계			0.36	12.4	244.4
채권 채무 조정	재무구조개선 등에 따른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4조	23	16	14
	채무의 인수·변제 대한 과세특례 <sup>1)</sup>	조특법 제39조 ①	N/A	N/A	N/A
자산 양도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sup>1)</sup>	조특법 제34조	N/A	N/A	N/A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법 제43조	1.7	3	3
주식 교환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sup>1)</sup>	조특법 제46조	N/A	N/A	N/A
	감자에 관한 과세특례 <sup>1)</sup>	조특법 제45조	N/A	N/A	N/A
재무구조개선 계			24.7	19	17

주: 조특법에 의한 조세지원 중 조세감면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제외함.

1) 2009. 5. 21. 신설규정임.

2) 잠정치

-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조직변경 및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모든 조세지원제도가 상시규정으로 되어 있음.
  -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조세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영국과 호주는 특례조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이 조직만 변경하여 사업이 계속 되는 형태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세계가 그러한 조직변경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세이연 등의 조세지원을 유지하되, 모든 조치는 상시조치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조특법에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는 그동안 감면실적이 없는 즉,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도입 초기보다는 조세지원제도가 많이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복잡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구조조정세계의 전체적인 틀을 고려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유형별 비과세 형식으로 갈 것인지 영국과 같이 거래별 과세특례를 둘 것인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세법으로 이관하여 상시조치로 운영하는 것이 상시구조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라 생각됨.

## 나. 조직변경 과세특례의 유형화

### 1) 조직변경의 유형화와 과세특례

-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의 경우, 그 사업과 지분의 영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73

속성이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효과는 동일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C형 조직재편'은 합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지만,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결과가 발생함.
- 따라서, 'C형 조직재편'에 해당될 경우, 당사자 간에는 합병과 동일한 조세특례가 적용됨.

□ 실질상 합병, 혹은 실질상 분할에 해당되는 조직변경은 상법상 합병이나 상법상 분할에 해당되는 조직변경과 그 조세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합병은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후 지분교환의 절차를 거침.
  - 현물출자 후 유상증자, 지분의 교환 후 자산의 이전 등은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전체 자산의 전부가 양수도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게 만드는 자산의 양수도는 합병거래의 효과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분할은 자산의 양수도의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산의 양수도 및 유상감자의 절차를 거침.
  - 현물출자, (불)균등유상감자 후 자산의 양도 등은 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조직변경의 거래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실질상 합병·분할 거래를 모두 인정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할 경우, 조세회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조직변경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실질상 합병과 실질상 분할 등에 해당되는 거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즉,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는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게 유형화되어 세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합병, 분할, 주식인수(교환), 자산인수 등으로 분류됨.
- 합병 : 주로 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합병임.
    - 자산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합병의 경우, 실질상 합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C형 조직재편'으로 별도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함.
  - 분할 : 주로 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합병임.
    - 실질상 분할에 해당되는 현물출자의 경우, 일본의 '현물출자'와 같이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함.
  - 주식인수(교환) : 주식의 인수나 교환 등으로 인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발생하게 하는 거래.
    - 미국의 경우, 'B형 조직재편'에 해당될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됨.
    - 일본의 경우, '주식교환', '주식이전'으로 별도로 유형화되며, 완전한 모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가 적용됨.
  - 자산인수 : 순자산의 이전이 합병이나 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하나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함.
  - 기타의 유형 :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유형을 추가함.
    - 미국의 경우, 기업개선작업이나 자본재구성의 경우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함.
    - 일본의 경우, 사후설립 등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함.
- 구조조정세제는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게 유형화되어 동일한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효율적임.
- 한국의 경우,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의 경우만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포괄적 주식이전(교환)과 포괄적 자산양도는 조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75

특별에 규정되어 있음.

- 일반적인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즉,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특례를 포괄적으로 적용받는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효율적임.
- 이미,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합병, 분할, 현물출자에 더해 포괄적 주식이전(교환), 포괄적 자산양도를 추가하여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인 조직변경에 대한 규정과 달리 위기상황하에 있는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추가적이며, 포괄적인 조세혜택이 필요함.
  - 일반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실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세혜택을 부여하지만,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의 경우에 대한 조세혜택이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규정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2) 기업집단 내의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 기업집단 내의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기업집단 내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일본의 경우, 기업집단 내의 조직변경의 경우, 지배강도에 따라 조직변경 조세특례의 조건을 달리 부여함.
  - 영국의 경우, 기업집단 내 이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가 별도로 적용됨.
  - 이러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이유는 기업집단 간의 주식이전은

사실상 내부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경쟁력 향상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업 간에는 조직변경이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배강도를 고려하여 조직변경의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업집단 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분요건뿐만 아니라 종업원승계요건, 사업계속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정비

##### 1) 재무구조개선 관련 과세특례 규정의 정비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첫 번째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과 그 채권자 간의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조세지원임.
    -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면제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채권자는 채권 포기금액을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두 번째는 채권·채무조정 이외에 기타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에 대한 조세지원임.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나 양도세 분할납부 혜택을 주는 것을 예<sup>291)</sup>로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에 대해

29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6조 등

모두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은 대체로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앞 장의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은 채권·채무조정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한 것이 특징임.

□ 부실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과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조세지원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사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현재는 그 필요성이 이전보다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현행의 조세지원제도는 영구적인 조세감면보다는 과세이연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기업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 채권·채무조정 관련 과세특례 규정의 일원화와 상시화

□ 우리나라는 채권·채무조정의 유형별로 과세특례요건이나 과세특례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규정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일부는 상시규정으로 일부는 한시규정으로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 또한 법률인 경우도 있고 통칙이나 유권해석인 경우도 있는 등 일관성이 부족함.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법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채권·채무조정 관련 과세특례 규정을 일원화하고, 상시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재무적 곤경(예를 들면 파산, work-out 등)에 처하면 채무조정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미국과 영국, 일본 모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무적 곤경상황에 대해서만 세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채무조정의 유형별로 과세특례요건이나 내용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한 과세이연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3) 채무조정 관련 과세특례의 범위 확대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채권자가 포기한 채권액 중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영국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영구적으로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세특례 조항이 과세이연 조항이지 영구적인 과세면제 조항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

#### IV. 주요국 구조조정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279

을 때 과세제외보다는 과세이연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역시 현재도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과세이연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는 일본처럼 기한 경과 결손금뿐만 아니라 자산평가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의 상계를 허용한다든지, 미국처럼 현재 및 장래의 이월결손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감면혜택과 채무면제이익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김진수·안종석,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에 따른 현행 구조조정지  
원세제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 김진수·이준규,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연  
구보고서 06-04,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백흥기·배성민, 『통합도산법 제정과 선진 외국의 사례』, 현대경제연  
구원, 2002.
- 이성우, 『현행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세종출판사, 2007.
- 장태평,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광고아카데미, 1998.
- 한만수, 「자본구조조정 및 채무조정의 과세효과에 관한 고찰」, 『조세  
법연구』 XIV-1, 2008.4.

Anderson et al.,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7-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 and Trusts, Pearson Education, 2007.

Anthony Davis·David Southern, 'The tax consequences of  
restructuring of indebtedness (debt work-outs)',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91a (IBFD, Amsterdam,  
2006), 619-641.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08-09, 2009.

\_\_\_\_\_, *Internal Revenue Code* 2009, 2009.

Eric G. Tomsett, "Mergers and Acquisitions in United Kingdom,"  
IBFD online publication.

[www.ato.gov.au](http://www.ato.gov.au)

[www.hmrc.gov.uk](http://www.hmrc.gov.uk)

[www.ibfd.com](http://www.ibfd.com)

[www.irs.gov](http://www.irs.gov)(미국국세청)

[www.samli.com](http://www.samli.com)

[www.westlaw.com](http://www.westlaw.com)



## <著者略歷>

### 김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구자은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회계학 석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 김태훈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 송은주

세종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상업교육학 석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미국공인회계사)

### 정희선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기은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

---

2010년 10월 25일 인쇄

2010년 10월 29일 발행

저 자 김진수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가락동 79-6)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 지 사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481-3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